

2019년 신입교육과정 소방법령 Ⅱ

제1편 소방기본법

제2편 소방기본법의 각론

제3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ontents | 목차

제1편

소방기본법

제1장 소방기본법의 의의	2
제1절 소방의 의의	2
제2절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소방기본법	3
제3절 소방기본법의 의의	4
제2장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5
제1절 서설	5
제2절 소방법의 변천과정	6
제3절 소방법의 분법	19
제3장 소방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2
제1절 소방기본법과 행정법	22
제2절 소방기본법의 적용범위	23
제3절 소방기본법의 해석방법	24
제4장 법률의 형식과 구성	27
제1절 법령의 형식	27
제2절 입법과정	31
제3절 법률의 구성과 문장	36



제2편

소방기본법의 각론

제1장 소방기본법의 제정	48
제1절 제정 배경	48
제2절 주요골자	49
제3절 소방기본법의 개정	49
제4절 소방기본법의 구성	65
제5절 소방법의 분법과 소방기본법의 규정체계	66
제2장 총칙	68
제1절 목 적	69
제2절 용어의 정의	72
제3절 소방기관의 설치 등	77
제4절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80
제5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84
제6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88
제7절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92
제3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96
제1절 소방력의 기준 등	97
제2절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110
제3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114
제4절 소방업무의 응원	121
제5절 소방력의 동원	123

Contents | 목차

제4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128
제1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	130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134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138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140
제5장 소방활동	147
제1절 소방활동	148
제2절 소방지원활동	149
제3절 생활안전활동	151
제4절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152
제5절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153
제6절 소송지원	153
제7절 소방교육·훈련	154
제8절 소방안전교육사	159
제9절 소방신호	167
제10절 화재 등의 통지	169
제11절 관계인의 소방활동	171
제12절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72
제13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176
제14절 소방대의 긴급통행	178
제15절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79
제16절 소방활동 종사명령	181
제17절 강제처분 등	183
제18절 피난명령	190
제19절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91
제20절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193



제6장 화재의 조사	198
제1절 의의	198
제2절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200
제3절 출입·조사 등	207
제4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209
제5절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210
제6절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211
제7장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213
제1절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213
제2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제정 운용	214
제8장 의용소방대	216
제1절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217
제2절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231
제9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235
제1절 국가의 책무	236
제2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236
제3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238
제4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240

Contents | 목차

제10장 한국소방안전원	242
제1절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242
제2절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244
제3절 안전원의 업무	245
제4절 회원의 관리	247
제5절 안전원의 정관	248
제6절 안전원의 운영경비	250
제7절 임원 구성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50
제11장 보칙	252
제1절 감 독	252
제2절 권한의 위임	254
제3절 손실보상	256
제12장 벌 칙	263
제13장 부 칙	278
제1절 시행일	278
제2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279
제3절 금지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79
제4절 다른 법률의 개정	280
부 록	281
1.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282
2.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지 1~10호서식	285



제3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소방시설법의 제정 및 구성	300
제1절	소방시설법의 제정	300
제2절	소방시설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304
제2장	총칙	338
제1절	목적	338
제2절	용어의 정의	341
제3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60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362
제3장	소방특별조사 등	365
제1절	소방특별조사	365
제2절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376
제3절	손실보상	384
제4절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 및 조사결과서 작성	388
제4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402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402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416
제3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31
제4절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434
제5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37
제6절	소방기술심의위원회	446

Contents | 목차

제7절 방염(防炎) 등	451
제8절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451
제9절 방염성능의 검사	456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460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460
제2절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90
제3절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491
제4절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493
제5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494
제6절 우수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501
제6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505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505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514
제7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527
제1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527
제2절 소방용품의 성능시험	531
제3절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532
제8장 보칙	536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536
제2절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545
제3절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546
제4절 청 문	547
제5절 권한의 위임·위탁	548



제6절 감 독	552
제7절 수수료	554
제8절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556
제9절 신고포상금의 지급	558
 제9장 벌 칙	 561
 제10장 부 칙	 575
<부 록 1>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581
<부 록 2>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594
<부 록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651

Contents | 목차

표 목차

[표 2-1] 소방기본법의 구성	56
[표 2-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68
[표 2-3] 분야별 소방체험관 체험실	68
[표 2-4] 구조대 별 기본 장비	89
[표 2-5]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	90
[표 2-6] 소방서 등급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101
[표 2-7] 현행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31
[표 2-8] 소방안전교육사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751
[표 2-9]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21
[표 2-10] 화재의 종류	9
[표 2-11]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	62
[표 2-12] 지역 의용소방대 조직 및 분장사무	62
[표 2-13] 전문의용소방대 조직 및 분장사무	72
[표 2-14] 전담의용소방대 조직 및 분장사무	72
[표 2-15] 과태료의 부과기준	9
[표 3-1] 소방시설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82
[표 3-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334
[표 3-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및 소방시설	834
[표 3-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사항	94
[표 3-5] 점검면적 별 가감계수	21
[표 3-6]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 및 시간	335
[표 3-7]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운영방법	55
[표 3-8]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835
[표 3-9]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835



그림 목차

[그림 2-1] 소방법의 분법과 소방기본법의 규정체계도	6 6
[그림 2-2] 과태료 부과 절차	9
[그림 3-1] 소방시설법의 구성내용	92
[그림 3-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등 관계도	792
[그림 3-3] 손실보상의 절차도	8
[그림 3-4]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의 관계도	904
[그림 3-5] 과태료부과 절차도	95



제1편 소방기본법

제1장 소방기본법의 의의

제2장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제3장 소방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제4장 법률의 형식과 구성

1

소방기본법의 의의

소방
기본법의
의의학습
목표

- 01 소방의 의의와 개념의 변화, 소방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의 의의와 소방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 이해한다.
- 02 화재로부터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바로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의 보호를 실현코자 함은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권자의 의도를 이해한다.

제1절 소방의 의의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소방의 개념 및 그 성립배경에 대해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소방의 개념은 어느 하나의 일률·확정의 개념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역사적 사료¹⁾를 보면 화재를 예방하고,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으나 조직화 되고 사회적으로 개념화가 되어 오늘날의 소방의 개념형태로 처음 형성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소방이란 용어로 불리지 않고 금화라는 용어로 불려 졌으며 이 당시 등장하는 “금화(禁火)”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소방이란 개념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 - 예컨대 야간순찰·범죄의 예방 등 - 이었음을 각종 사료²⁾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금화(禁火)”에 대한 개념의 등장배경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사회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 삼국사기, 고려사오행지, 고려사 등

2) 금화령(禁火令)-태종14년(1417), 금화조건(禁火條件)-세종5년(1423), 금화도감(禁火圖鑑)-세종8년(1426)



“금화(禁火)”의 개념은 조선 중기·후기로 접어들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조선후기 갑오개혁(1894)을 중심으로 “소방(消防)”이라는 용어³⁾가 처음 등장한다.

초창기 경찰업무의 일부분으로서의 “소방(消防)”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사회적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조직(의용소방조 등)의 발달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소방법이 제정된 때(1958)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설해까지 포함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라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었다. 오늘날은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국민생활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대 국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된 개념인 “소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현행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에 비추어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재난·재해 등 각종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구조·구급활동”을 소방의 개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제2절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소방기본법

화재로부터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바로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의 보호인 동시에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이며, 이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이라는 복지국가를 실현코자 함은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권자의 의도가 바로 소방기본법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은 화재라는 재난을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궁극에 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이는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3) 경무청세칙(1894.5) : 경무청의 업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 “수화(水火)소방(消防)은 난파선(難破船) 및 출화(出火), 홍수 등 구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음으로 “소방”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1

소방
기본법의
의의

제3절 소방기본법의 의의

소방기본법은 행정법 각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규제행정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라 하면, 소방기본법은 소방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소방행정의 작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방조직(소방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등)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은 소방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방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 할 수 있다.

Chapter 1

학습정리

- 01 소방의 의의 및 소방기본법의 의의와 소방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의 내용 정리
- 02 “금화(禁火)”와 “소방(消防)”이라는 용어 등장 배경

Chapter 1

학습평가

- 01 “소방(消防)”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언제인가?
- 02 조선시대 초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사회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용어는?

정답

(01) 1894년(갑오개혁) (02) 금화(禁火)

2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학습
목표**

- 01 소방법의 제정 배경과 연혁 개요 등을 이해한다.
- 02 소방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시대의 화재위험성에 맞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체 27회나 개정된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 03 단일 소방법을 4개의 법률(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로 분법한 배경과 취지를 파악한다.

**학습
키워드**

소방법의 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절 서설

소방관련 규정은 1948. 8. 15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0.3.24 내무부령 제10호)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근간을 두었으나 사회의 발달과 소방수요의 증가로 화재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 1950년부터 정부에서 소방법초안을 작성하여 1953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정할 시기가 이르다고 폐기되었다. 그 후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방법은 사회소방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 시대의 화재위험성에 맞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여러 번(전체 27회 개정) 변천하였다.

하지만 소방법이 제정된 이후로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정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성이 미흡하고 또한 소방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하나의 단행법인 소방법에 모두 규정함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4개의 법으로 분법하기에 이르렀고 그 시행일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두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제2절 소방법의 변천과정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1. 소방법 제정 [제정 1958.3.11 법률 제485호]

가. 제정이유

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를 예방·경계·진압 또는 방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방화시설의 지시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그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2) 학교·회사·공장·은행장 등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방화·소화시설을 갖추도록 함.
- 3)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4)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소화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함.
- 5) 서울특별시·시와 읍에는 소방이나 소화를 보조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을 두도록 함.

2. 제1차 개정 [일부개정 1963.5.31 법률 제1351호]

가.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등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소방법상의 규정을 삭제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각 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등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이 법 중 불필요한 보상관계규정은 이를 삭제함.
- 2) 의용소방대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제2차 개정 [전부개정 1967.4.14 법률 제1955호]

가. 개정이유

1967년 2. 28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풍·수·설해 업무를 소방업무에서 삭제, 재해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위험물취급주입제도를 두도록 함.
- 2)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는 때에는 재해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도록 함.
- 3)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4)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5)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있을 때에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한 손해를 조사하도록 함.

4. 제3차 개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9호]

가. 개정이유

1970년 8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에 관한 사무 중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 위험물취급주입의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며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관계 사무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함.
- 2) 도지사 등이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을 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게 함.
- 3)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조치에 수반하는 손실보상의 주체를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함.
 - 1972년 5월 31일 서울소방본부 발족
 - 1972년 6월 1일 부산소방본부 발족

5. 제4차 개정 [전부개정 1973.2.8 법률 제2503호]

가. 개정이유

- 1)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 호텔화재(163명 사망, 66명 부상)
- 2) 1972년 12월 12일 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화재(53명 사망, 78명 부상)등 도시건축물의 고층대형화 및 위험성 있는 물질 등의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대처하여 예방소방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



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3) 시장 또는 군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에 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나 공사의 정지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6. 제5차 개정 [전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2호]

가. 개정 이유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년 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업무를 시·군 자치업무와 국가사무인 민방위 업무로 전환

나. 주요내용

- 1)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경찰서장이 관장하던 소방업무를 시장·군수가 수행하도록 함.
- 2)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소방검사로 볼 수 있도록 함.
- 3)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굴뚝, 화로 기타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화재 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시·군의 조례에는 1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4) 위험물관매취급소에는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5) 소방용기구의 제조업·판매허가 및 검정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7. 제6차 개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7호]

가.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대민관계 업무를 개선하고 내무부장관이 행하고 있는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업무를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용기계·기구 등 판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함.
- 2)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행법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검정을 대행시킬 수 있게 함.

8. 제7차 개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29호]

가. 개정이유

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관비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관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장기훈련자의 과건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직권 휴직제도에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강화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일반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을 시·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준공동의시에 같이 검토하게 함.
- 2) 주택 난방용 위험물저장소와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 위험물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험물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 3)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제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 4) 내무부장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설비기사·위험물취급주임 및 위험물시설안전원에 대하여 년 1회 7일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9. 제8차 개정 [일부개정 1981.4.4 법률 제3413호]

가. 개정이유

건축물의 완공에 대한 확인의 동의에 있어서 위험물제조소등이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상 특별한 규제를 받는 고층건물 등 특수장소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과도하게 규제되었던 사항을 완화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여 민원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 2) 소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규제대상이 되는 고층건물의 범위를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하던 것을 30m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함.
- 3) 커튼 등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범위에서 학교·공동주택·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를 제외토록 함.
- 4)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10. 제9차 개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75호]

가.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그 판매업을 자유화하고, 소방설비공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소방기관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고층건축물 등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 2)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판매업을 신고제로 하던 것을 폐지하여 이를 자유화하도록 함.
- 3) 종전에 등록제로 하던 소방설비업을 소방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를 면허제로 하고 사업범위 등을 보완함.
- 4) 파산자·금치산자 등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5)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함.
- 6)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소방설비기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7)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청원소방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8)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11. 제10차 개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5호]

가. 개정이유

소방의 봉사기능을 확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위급한 상태에서 인명의 구출을 전담하는 구조대의 편성·운영을 명문화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구조대 편성·운영 등 구조업무의 명문화

12. 제11차 개정 [타법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소방법의 관련조문정리



13. 제12차 개정 [전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가. 개정이유

소방법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함.
- 2)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함.
- 3)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 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 4) 1992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622호로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소방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서울, 부산을 제외) 9개 시도에 소방본부 설치근거를 마련 실질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전환함.

14. 제13차 개정 [타법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소방법 관련조문정리

15. 제14차 개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2호]

가. 개정이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 시설주가 실시하도록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소방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종전에는 호텔·의료기관·고층빌딩 등의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튼·카펫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지시나 명령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관서장이 그 시정 등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시정지시 등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함.
- 2) 종전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제조소등의 관리를 자율화함.
- 3)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계자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함.

16. 제15차 개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00호]

가. 개정이유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업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설비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제를 도입하며, 소방설비공사의 하자여부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위험물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과 정기점검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동 공사의 업무에 위험물안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함.
- 2) 위험물제조소등을 완공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재선임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교적 위험도가 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그 선임 또는 재선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3) 소방시설점검업자는 소방시설의 점검업무만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점검효율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정비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4) 소방시설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와 소방공사업 관련제도 및 기술기준 등의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내무부 및 시·도에 각각 두도록 함.

17. 제16차 개정 [타법개정 1995.1.5 법률 제4881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소방법 일부개정

18. 제17차 개정 [타법개정 1995.1.5 법률 4919호]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소방법 관련조문정리

19. 제18차 개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4호]

가.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 신청 시 미리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방염처리업의 면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신청시 소방·방화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소방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
-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60일 이내에 임시 저장할 경우 종전에는 소방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 및 방염처리업에 대한 면허제를 폐지하고,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강화함.
- 5)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이 되도록 개선함

20. 제19차 개정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가.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유형에 맞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소방법상 청문규정을 개정함.

21. 제20차 개정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가.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처 명칭 등의 일괄 정비 방침에 따라 소방법 조문 정리

나. 주요내용

제67조제1항중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을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으로 함.

22. 제21차 개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6호]

가. 개정이유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각종 면허·인가·신고 및 의무고용규정을 폐지·완화하여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나. 주요내용

-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를 폐지함.
-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성능시험자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함.
-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 중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강습수료자 등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수량 10배미만 제조소 등에서 지정수량 20배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주의 의무고용부담을 완화함.
- 4) 소방시설 위탁점검업체인 소방시설점검업의 명칭을 소방시설관리유지업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점검업의 변경등록제를 변경신고제로 완화함.

23. 제22차 개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0호]

가. 개정이유

종전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방대상물의 경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뿐만 아니라 수용인원을 새로이 추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수용인원에 관한 기준을 산입함.

24. 제23차 개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7호]

가. 개정이유

1999. 6.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와 1999. 10. 인천 「호프집」 화재 및 2000. 2.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산업인 지하공동구의 소방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 강화, 민원행정 절차개선, 민간소방감리의 책임강화, 지하공동구 소방시설의 현행법 적용

및 기타 운영상 미흡한 기준의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나. 주요내용

- 1) 화재 시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하공동구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마련
- 2) 화재 시 긴급피난과 관련이 있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 강화
- 3) 종전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로 갈음하였으나 청소년수련 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완공검사 절차를 개선
- 4)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설계 및 감리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실감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

25. 제24차 개정 [타법개정 2002. 1.26 법률 제6627호]

민사소송법이 민사집행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됨

26. 제25차 개정 [타법폐지 2003. 5.29 법률 제6893호]

가. 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



을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소방법은 이를 폐지함[시행 2004.5.30].

27. 제26차 개정 [타법개정 2003. 5.29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소방법 관련규정 개정

28. 제27차 개정 [타법개정 2004. 3.11 법률 제7186호]

가.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 관련규정 개정

나.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소방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인용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으로 조문 정리

제3절 소방법의 분법

기존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을 2002년 10월 11일 정부안으로 4개의 법률(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3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을 통하여 2003년 5월 29일 제정하여 분법 공포하였으며 그 효력의 발생시기를 1년 후인 2004년 5월 30일로 하여 시행함으로서 기존의 소방법은 폐지토록 하였다.

1. 분법의 배경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며,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단일법에 혼합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바, 소방법을 소방기본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사항,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취지에서 분법을 하게 되었다.

분법된 법률들은 대부분 기존의 소방법을 나누어 규정한 것이고 몇몇 예외로 조문을 정리하거나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 분법된 법률

1) 소방기본법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는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0장 5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기존의 소방법 제2장(화재의 예방)과 제4장(소방시설등의 기준 및 점검 등) 및 제5장(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에 규정된 28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전체 전문 8장 5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법률은 기존의 소방법 제6장(소방시설공사업등)과 제6장의2(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52조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25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7장 4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법률은 기존의 소방법 제3장(위험물)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전문 7장 3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2

학습정리

- 01 소방법의 제정 배경과 변천과정의 연혁 개요 등 정리
- 02 “금화(禁火)”와 “소방(消防)”이라는 용어 등장 배경
- 03 단일 소방법의 분법 배경과 4개 법률의 내용 정리

chapter 2

학습평가

- 01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제정된 시기는 몇 년도 인가?
- 02 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를 소방업무로 규정한 시기는?
- 03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년 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업무를 시·군 자치업무와 국가사무인 민방위 업무로 전환한 시기는?
- 04 1991.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하였다(○,×).
- 05 종전의 소방법은 4개의 법으로 분법 하였는데 분법한 법령의 법령명은?

정답

(01) 1958년 (02) 1958년 (03) 1975년 (04) ○ (05)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3

소방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소방
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학습
목표

- 01 소방기본법은 행정법을 구성하는 개별법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성격상 행정작용법인 것을 인식한다.
- 02 소방기본법의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이 미치는 적용범위를 숙지한다.
- 03 소방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 흠결의 보충, 특수성, 적용절차 등 해석방법을 탐구한다.

학습
키워드

행정법, 시간적 범위, 소급효, 지역적 효력, 영토고권, 대인적 효력, 속지주의, 판례, 흠결의 보충, 적용절차

제1절 소방기본법과 행정법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는 다수의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법은 행정법 전체로서 공통의 원리가 있어 통일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행정법을 구성하는 개별법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성격상 행정작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행정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형식·성질면에서 여타의 법률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행정법의 특수성은 그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고, 행정법에 적용되는 제반 모든 사항들, 예컨대 행정법의 지도원리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법의 법원 등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소방기본법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제2절 소방기본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효력

가. 효력발생 시기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 즉 효력이 발생토록 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법의 예지 등에 대한 부족 등으로 법적 생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는바 법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주지 시키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관행이다.

이러한 유예기간을 특히 달리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칙에 당해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소방기본법 부칙 제1조)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공포라 함은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게재(조례·규칙)하는 것을 말한다.

공포한 날이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을 의미하고 “발행된 날”은 일반국민이 관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최초의 시점 즉 최초구독가능시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1) 소급효(溯及效)

소방기본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의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공익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다.

2) 효력의 소멸

법령 가운데 특히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한시법). 이외에 상위법령에 의한 명시적 폐지 또는 내용적으로 모순·저촉되는 법령의 제정에 의해 효력이 소멸된다.

3

소방
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2. 지역적 효력

소방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전반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은 대한민국 전 영토에 걸쳐서(영토고권)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화재예방조례, 의용소방대설치조례)·규칙(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당해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가. 영토고권의 예외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교사절 등이 사용하는 토지·시설 및 주둔군이 사용하는 시설·구역 등에서는 국제관례 또는 조약이나 협정(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소방기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대인적 효력

소방기본법령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자연인·법인·내국인·외국인등을 불문한다.

가. 속지주의의 예외

- 1)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의 원수 및 외교관등
- 2) 미 합중국군대구성원

제3절 소방기본법의 해석방법

법 해석의 목적은 입법권자 또는 입법참여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법질서 하에서 타당할 수 있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해석의 방법론

모든 법률은 입법정책을 문자를 이용하여 법문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소방기본법 해석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법문(法文)중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



이며 [문리적 해석(文理的 解釋)] , 나아가 그것이 전체의 법질서 특히 헌법과 체계적인 연관을 갖도록 하는 일이며 [체계적 해석(體系的 解釋)] 그 외에 보충적으로 법령기초안, 국회의 심의록 등의 입법자료를 참고하여, 소방기본법의 해석의 결과가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여 유용하며, 헌법등 실정법에 나타나 있는 가치 및 시대적 정신과 일치하도록 하는 일이다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 解釋)] .

가. 소방기본법 해석에 있어서 관례

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련된 관례와 학설은 법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외에 법적 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 소방기본법의 흠결(欠缺)의 보충

소방기본법은 건축법 등의 여러 행정 관련법과의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행법을 자체로서 완전할 수 없는 관계로 소방기본법 자체에 흠결 또는 공백 등이 있을 경우 흠결을 보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유사한 법령의 준용이다.

예컨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소방기본법 제2조)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바로 소방기본법 해석에 있어서의 흠결의 보충의 예라 하겠다.

2. 소방기본법 해석에 있어서의 특수성

소방기본법의 해석, 흠결의 보충에 있어서 법질서 전반에 걸친 일반원칙이 통용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행정법의 일종으로서의 소방기본법은 헌법과의 긴밀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의 집행법이며 구체화한 법으로서 소방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원리가 동시에 행정법의 지도 원리이자 소방기본법의 지도원리이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헌법의 지도원리인 동시에 행정법의 지도원리 및 일반원칙 등은 언제나 소방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지표와 척도가 되어야 한다.

3. 소방기본법의 적용절차

소방기본법의 적용절차는 일반 행정법의 적용절차와 동일하다.

그 절차는

첫째, 사실을 조사·인정하고

둘째, 소방기본법규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이 무엇인지 해석·확인하여

셋째, 인정사실이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확인하고

넷째,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론적 조작과정을 거쳐야 한다.

chapter 3

학습정리

- 01 소방기본법은 행정법을 구성하는 개별법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성격상 행정작용법이며, 행정법의 지도원리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법의 법원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 02 소방기본법의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이 미치는 적용범위 정리
- 03 소방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 흠결의 보충, 특수성, 적용절차 등 해석방법을 습득

chapter 3

학습평가

- 01 소방기본법은 행정법을 구성하는 개별법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성격상 어떠한 법인가?
- 02 법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주지시키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법의 적용범위는?
- 03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공익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 04 소방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전반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인 제도는?
- 05 소방기본법령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범위는?

정답

(01) 행정작용법 (02) 시간적 효력 (03) 소급효(溯及效) (04) 지역적 효력 (05) 대인적 효력



학습 목표

- 01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법령 체계의 형식을 파악한다.
- 02 법률안의 제안권자, 입안과정(의원위원회·정부), 법률안 심의 의결, 법률의 공포, 효력발생 등 절차 내용을 숙지한다.
- 03 법률의 구성, 법률의 조·항·호 등 내용의 법문, 법률의 용자용어, 유사한 법률용어 의미 및 사용법, 인용조문의 표현 등을 습득한다.

학습 키워드

법률,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조례, 규칙, 제안권자, 입안과정, 심의 의결, 공포, 효력발생, 법률의 구성, 법문, 용자용어, 인용조문

제1절 법령의 형식

1. 법령의 체계

“법령”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써 강요성이 있는 성문의 법 형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 있어서 성문의 법 형식으로 최정점에 헌법이 있고 이하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형식은 실제로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위에서 열거한 것들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형식인 감사원규칙 등도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령의 제(諸) 형식 전체가 하나의 통일적 질서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이 강제성이 있는 사회생활규범인 까닭에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법령이 그 효력을 상실함은 당연한 것이고 법률 이하의 형식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헌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령형식보다 상위의 효력이 인정된다.

전체적으로 국법형식의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등의 단계의 순으로 그 형식적인 효력의 상하관계가 정하여지고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전체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외에 법령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상호간에는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가. 헌법

헌법은 국법질서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으로서 국가의 조직 및 활동의 근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나. 법률

법률이란 헌법 제53조⁴⁾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제정되어 공포된 법을 말한다.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보다도 상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에 관하여서 헌법 및 법률을 제외한 다른 일반의 법령이 법률에의 위임이 없으면 규정할 수 없음이 일반적이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등은 이와 같은 법률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란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령을 포함한 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2종이 있다. 전자는 법률 스스로가 명시하여 위임한 사항에

4) 헌법 제53조

-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하여 정하는 명령을 말하고, 후자는 법률의 시행이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칙 또는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헌법 제75조⁵⁾의 규정은 이러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의미한다. 대통령령의 형식적 효력은 법률보다 약하며, 소방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시행령이 있으며 이의 내용상의 구분에 있어서는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라. 총리령·부령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며, 부령은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부령은 이를 발하는 각부의 명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 국토교통부령 등이 있다. 총리령과 부령은 그 명칭이 다를 뿐 그 형식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총리령 및 부령은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헌법 제95조⁶⁾). 총리령 및 부령은 모두 그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 대통령령 보다 약하며, 소방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시행규칙 등이 있다.

마.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및 명령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한 성문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즉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의 효력은 그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헌법, 법령, 명령보다 하위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1) 조례(條例)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정을 말한다(헌법 제117조⁷⁾).

조례의 소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속한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진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

5)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6)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7)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에 속하는 사무, 기타의 행정사무로서 국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의 3종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⁸⁾).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형식적 효력은 국가의 법령보다 약하다.

또한 시·도 조례와 시·군 및 자치구 조례는 소위 고유사무에 있어서는 시·도나 시·군·자치구가 다같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본래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는 일은 없고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간에 그 형식적 효력의 우열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하나 시·군 및 자치구가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나 시·도와 공동으로 행하는 사무 등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규율하여야 할 대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와 관련한 소방 관련 규정은 화재예방조례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6조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위임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있다. 물론 규칙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조례보다 약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규칙의 형식적 효력이 국가의 법령보다 약한 것도 또한 같다.

8)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9) 지방자치법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절 입법과정

1. 법률안의 제안권자

우리 헌법은 제40조¹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¹¹⁾에서는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하여야 한다.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의원발의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소속정당의 정책실무 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무회의 등 소정의 당내절차를 거쳐 발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입법준비단계

특정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안의 정책기구의 결정에 따라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나. 법률안 기초단계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개인참모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10)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1)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있으며 법제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안 기초 요청을 하면 법제실에서 각종 관련사항에 대한 팀을 구성하여 입법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한 의원에게 제공하게 된다.

다. 국회제출단계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連署)¹²⁾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

가. 제안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나. 소관사항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서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회법 제3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제안절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¹³⁾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同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의장에게 바로 제출한다.

12) 한 문서에 두 사람 이상이 서명함

13) 축조심사 : 일반적으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여 가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함



4.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가. 법률안의 기초

정부제출 법률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기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률안의 초안은 당해 법률의 집행을 담당할 소관부처의 주무부서가 주관하게 된다. 주무부서는 평소에 입법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법률안 기초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단체에 용역을 주거나 위촉을 하는 수도 있으며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안하기도 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소관부처에서 기초·성안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입법예고

정부입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에 앞서 법령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경제장·차관회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 당·정 협의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정부와 여당 사이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정무장관의 폐지와 대통령비서실의 기능약화에

따라 행정협의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바.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앞서 기술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법률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비로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된다.

사. 법제처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는 부처별로 분장하고 있는 법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자.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차. 국회제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면 법제처는 법률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한다.

5. 법률안 심의 의결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 ② 위원회 심사 : 의사일정 작성·상정 제안설명(발의자 또는 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대체토론, 상설소위원회 심사(필요시 따로 안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심사케 함),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
- ③ 체계·자구심사(법제사법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당해 법률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



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법률을 제출한 소관위원회에 통보하며 소관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④ 심사보고서 작성·제출 ; 소관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
- ⑤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6. 법률의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제53조제1항).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부의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 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송부하고, 행정자치부는 법률 공포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공포대장에 공포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법률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7. 법률의 효력발생

법률은 당해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제7항).

제3절 법률의 구성과 문장

법률의
형식과
구성

1. 법률의 구성

법률은 전체적으로 법률의 제목에 해당하는 제명이 있으며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본칙은 법률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며,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률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기존 법률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 부분이다.

본칙부분에 대하여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나 부칙부분은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

가. 제명 및 법령번호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목에 해당하며 제명은 간결하나 이하 모든 법률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 법률”로 표기한다.

법령번호는 공포한 날짜와 법률번호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모든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나. 본칙규정

본칙규정은 법률의 본체가 되는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총칙규정

총칙은 법률의 맨 앞부분에 위치하여 그 법률 전반에 공통된 일반적,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총칙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그 법률의 목적 또는 취지에 관한 규정, 그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법률해석의 지침에 관한 규정 기타 그 법률에 있어서 개괄적,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방기본법은 총칙규정에 목적, 정의, 소방기관의 설치,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소방의 날 제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실체규정

실체규정이란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각 법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실체규정의 기본골격은 ① 어떠한 목적(공익)을 위하여, ②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③ 어떠한 처분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제2장에서 제8장까지 규정하고 있다.

3) 보칙규정

보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부수하는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며 법률 중 실체규정과 별칙규정 사이에 둔다.

보칙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없다. 개개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그 법률의 실체적 규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모두 부분에서 총칙으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술적·절차적인 것들을 취합하여 보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방 기본법에서는 제9장에 규정하고 있다.

4) 별칙규정

별칙이란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을 말하고 징계벌과 같이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과하는 제재에 관한 규정은 별칙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별칙규정은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를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예방함과 아울러 법률상의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근거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다. 부칙규정

본칙에 부수하여 법률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 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기존법률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 부분으로서 소방기본법에서는 시행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장(章)·절(節)등의 구분

법률 본칙의 조문수가 많고,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群)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은 다시 절

(節)·관(款)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법률에 장·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장명(章名) 또는 절명(節名)을 붙인다. 특히, 본칙의 내용이 길고 나눌 필요가 있을 때는 장(章)위에 편(編)을 두어 「編, 章, 節, 款」순으로 나눈다.

마. 조(條)·항(項)

1) 조문 제목의 표시

각 조에는 당해 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의 제목을 붙인다. 조의 제목은 “제○조(□□□)”와 같이 조 다음에 괄호를 해서 표시하며, 당해 조문이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표용어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조의 중심이 되는 용어 다음에 “등”자를 붙여 “제○조(○○○ 등)”으로 표시 한다.

2) 조·항의 구분

법률의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다만, 법률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조”의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항”으로 구분하며, “항”의 표시는 “①, ② ……”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에 둥근 테를 둘러 표시한다.

3) 호·목의 구분

“조” 또는 “항”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호”로 구분하여 열거하며, “호”의 표시는 “1., 2., 3., ……”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온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호”를 다시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목”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가., 나., 다., ……”로 표시한다. “목”을 다시 세분할 때에는 “(1), (2), ……”로 표시하며 별칭은 없다.

2. 법문

법문(法文)이란 법률의 조·항·호 등의 내용이 되는 문장을 말한다. 법문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당해 법률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문은 간결한 문장구조로 작성되며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률적용의 주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가. 법문의 구조

법문의 구조는 각 조·항·호별로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두 개 또는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 한 개의 문장구조

법문에 있어 한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는 단문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두 개의 문장구조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법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전단·후단의 구조¹⁴⁾

이러한 문장구조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보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된다. 이 경우 첫 번째 문장을 “전단”이라 하고, 두 번째 문장을 “후단”이라 한다. 후단의 표현방식은 “이 경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 본문·단서의 구조¹⁵⁾

이러한 문장구조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하여 대립 또는 예외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작성된다. 이 경우 첫 번째 문장을 “본문”이라 하고, 두 번째 문장을 “단서”라 한다.

일반적으로 단서의 표현방식은 “다만”, “단” 또는 “그러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4)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중사명령)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법률의 용자(容姿)¹⁶⁾·용어

가. 한글·한자의 표기

1) 한글·한자의 사용 원칙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사용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법률문(法律文)은 아직까지 한글·한자를 혼용한다.

2) 숫자의 사용

가) 숫자사용의 원칙

법률에서 숫자를 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숫자가 천 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한다.

- (1) 수의 표현에 있어서 1,000㎡, 10,000㎡ 등(cf:200㎡)
- (2) 단위 구분으로서의 ‘배’는 40배, 3천배, 2만배 등으로 표현한다.
- (3) 분수를 문장 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3분의 2’ 등으로 표현한다.
- (4) 기일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1월’, ‘2년’ 등으로 표시한다.

3) 문장부호의 사용

가) 온점(.)

- (1) 온점은 문장 끝에 써서 1개의 법문을 완결 짓는다.
- (2) 괄호 속에서는 온점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괄호 속에 후속 문장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앞부분에 위치하는 단어나 문장 끝에서 온점을 사용한다.
- (3) ‘각호’(各號)에서는 문장 끝에 온점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호가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사용하며, 각호가 단어로 끝나는 경우에도 뒷부분에 단어나 후단이 있으면 단어의 끝에 온점을 쓴다.

나) 가운뎃점(·)

- (1) 단어를 열거할 때 가운뎃점을 쓴다.

－ 건축물·차량·선박·선거·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16) 용모와 자세를 이르는 말



(2)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결할 때 가운뎃점을 쓴다.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3) 업무상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도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한다.

－ 구급대의 편성·운영

다) 반점(,)

(1) 어구를 열거할 때는 반점을 쓴다.

－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2) 대등절 또는 종속절이 이어질 때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반점을 쓴다.

라) 따옴표(“ ”)

법문에서 용어정의·약칭·총칭·준용용어·인용 등에 사용하며, 개정 법률안에 있어서 개정사항의 인용 시에도 사용한다.

○ “관계인”이란... (정의)

○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약칭)

4) 단위의 사용

“kg”은 “킬로그램”으로, “m”는 “미터”로, “cm”는 “센티미터”로 한다(단,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는 단위기호인 kg, m, cm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유사한 법률용어의 의미 구별 및 사용법 비교

가. “본다(간주한다)”와 “추정한다”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추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하면 번복이 가능하다.

나. “적용(適用)한다”와 “준용(準用)한다”

“적용한다”고 함은 어떤 “가” 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나”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준용한다”고 함은 어떤 “가” 사항에 관한 규정이 “가”와는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나” 사항에 대해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 “예(例)에 의한다(정하는 바에 의한다)”와 “준용한다.”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률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例)에 의한다(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사용¹⁷⁾하고, 법률의 개별 규정에 한정하여 다른 사항에 적용할 경우에는 “준용한다.”를 사용한다.

라. “과(科)한다”, “처(處)한다”와 “과(課)한다”

“과(科)한다”는 표현은 일정한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시킬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된다¹⁸⁾. 반면 “처(處)한다”는 표현은 각 법률에서 죄가 될 수 있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한다.¹⁹⁾

한편 “과(課)한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조세·금전 기타 부역이나 현품 등을 부담시킬 때에 사용한다. 즉 국민이나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쓰여 진다.

마. “.....내”와 “.....안”

시간(時間)을 표시할 때에는 “내”로, 지역(地域)이나 범위(範圍)를 표시할 때에는 “안”으로 한다. 즉 “.....기간 내에”, “..... 범위 안에서”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한다.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소방기본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사. “기일(期日)”, “기간(期間)”, “기한(期限)”

“기일”이란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말하고, “기간”은 일정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한”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시점의 도달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기간”과 “기한”의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과는 다른 기준으로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간”으로 표현하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한”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은 연장으로, “기한”은 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 “경우”와 “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자. “즉시”와 “지체 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차. “및”과 “그리고”

“및”은 2 이상의 용어를 병합적으로 연결하여 제기할 때 사용하며 3 이상을 제기할 때 같은 뜻을 서술하는 경우이면 쉼표(,) 또는 중간점(·)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구 앞에 “및”으로 연결한다.

“그리고”는 단계를 짓는 문구끼리를 연결하는 병합적 연결로써 사용하며 “및”의 병

합적 조건보다 큰 뜻에 쓰인다.

1) $[a+b+c]$ 는 $[a, b$ 및 $c]$ 를 뜻하고

2) $[(a+b+c)+(e+f+g)]$ 는 $[a, b$ 및 c 그리고 $e, f, g]$ 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카. “또는”과 “이거나”

둘 다 선택적으로 연결할 때 쓰이는데 3 이상을 연결할 때에는 쉼표(,) 또는 중간점(·)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구 앞에 “또는”으로 연결한다.

“이거나”는 “또는”의 선택적 조건보다 큰 뜻에 쓰인다.

1)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타.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1)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면 200제곱미터를 포함하고 그 이상의 면적을.

2) 층수가 7층 미만이라 하면 7층을 포함하지 않고 6층, 5층을 의미한다.

파. “이전(以前)”과 “전”, “이후(以後)”와 “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간계산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 15일간”이라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 15일간”이라 하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 「以」라는 문자가 붙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고, 「以」라는 문자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됨.



하. “내지(乃至)”

~에서 ~까지, 즉 제1조 내지 제5조라 함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인용조문의 표현

가. 같은 법률 내의 다른 조항 인용

법률 중에서 같은 법률 내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법”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제△항, 제○조제□호, 제○조제△항 내지 제×항”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기한다.

나. 법률 중 타법 조항 인용

법률 중에서 다른 법률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제명과 조항을 함께 표기한다. 다만 둘 이상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 제△조 및 (내지) 제□조”와 같이 표기한다.

다. 법률내의 조항과 타법 조항 동시인용

법률 중에서 같은 법률 내의 조항과 다른 법률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 제△조 및 제□조와 이 법 제×조”라고 표기한다.

chapter 4

학습정리

- 01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법령 체계의 형식을 정리
- 02 법률안의 제안권자, 입안과정(의원·위원회·정부), 법률안 심의 의결, 법률의 공포, 효력발생 등 절차 내용
- 03 법률의 구성, 법률의 조·항·호 등 내용의 법문, 법률의 용자·용어, 유사한 법률용어 의미 및 사용법, 인용조문의 표현 등을 습득

chapter 4

학습평가

- 01 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이 아닌 자치법규로는 무엇이 있는가?
- 02 법률안의 제안권자?
- 03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몇 인 이상의 찬성자(발의자 포함)와 연서(連署)가 있어야 하는가?
- 04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당해 법률을 어느 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 05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에 이송되어 며칠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가?
- 06 법률은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부터 며칠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가?

정답

(01) 조례, 규칙 (02) 국회의원, 국회의 위원회, 정부 (03) 10인 이상 (04) 법제사법위원회 (05) 15일 이내 (06) 20일



제2편 소방기본법의 각론

제1장 소방기본법의 제정

제2장 총칙

제3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4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5장 소방활동

제6장 화재의 조사

제7장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의용소방대

제9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제10장 한국소방안전원

제11장 보칙

제12장 벌 칙

제13장 부 칙

부록

참고문헌

1

소방기본법의 제정

소방
기본법의
제정

학습 목표 01 소방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변경과정을 이해한다.

02 소방기본법의 구성 및 소방법령의 규정체계를 파악한다.

학습 키워드 01 소방기본법, 소방법의 분법, 소방기본법의 구성, 소방기본법의 규정 체계

제1절 제정 배경

1958년에 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공사업 등 소방관련업에 관한 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방, 소방시설 및 위험물관련 사항으로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였다.

종전의 소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 분야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기타 여러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제정 이후 27차례나 개정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 대응적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 체계상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하고, 소방 기본법은 각종 소방행정작용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고,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헌법에의 정당성과 국가 전체의 법령체계에 부합되고, 법률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소방법규를 더욱 잘 준수토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급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소방기본법은 기존의 소방법을 4개의 법률로 분법하면서 소방업무에 기본이 되는 사항과 다른 3개의 법률에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분법된 4개의 법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주요골자

소방기본법은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업무의 기본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제정하였다.

1.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4조)
2.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5조)
3. 소방자동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의 이동·제거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4.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권에 관한 사항(법 제27조).
5.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34조, 제35조)

제3절 소방기본법의 개정

1. 제1차 개정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68호]

가. 개정이유

새로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이 사회현실 등을 감안하여 2005년 8월 4일 개정되었는데, 화재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등 학교 시설에서의 화재로 어린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막소독·쓰레기 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이 전체 출동 건수 대비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

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 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함
- 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다. 시장지역·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마.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2. 제2차 개정 [타법개정 2005.12.30 법률 제7804호]

가.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적인 악기상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새로



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후분야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상업무법을 국가 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상법으로 변경하고,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개정함.

3. 제3차 개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가.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기본법 제26조 제2호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 단장”으로 개정함
- 2) 제32조 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개정함.

4. 제4차 개정 [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2호]

가. 개정이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을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기본법 제7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개정함

- 2)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3)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5차 개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가.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에 따른 소방기본법의 관련조문정리

나.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개정함.

6. 제6차 개정 [타법개정 2007.8.3 법률 제8621호]

가.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선박법 개정에 따른 소방기본법의 관련조문정리

나.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 제1항”으로 개정함.

7. 제7차 개정 [일부개정 2008.1.17 법률 제8844호]

가. 개정이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한 전국의용 소방대연합회 설립과 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소방산업의 육성·진



홍을 위하여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실시권자를 대통령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개정하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신설
- 2)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 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 3)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 4)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 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나)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 다)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라)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바) 소방용 기계·기구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의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 가)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나)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다)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경비

6)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마)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사)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7)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다)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라)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제8차 개정 [타법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가.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



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복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신설에 따른 각 해당 조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함.

9. 제9차 개정 [타법개정 2008.6.5 법률 제9094호]

가. 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08.6.5)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중 소방산업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 및 일부 개정됨.

나. 주요내용

- 1) 소방기본법 제39조의 4(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삭제
- 2) 소방기본법 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 개정
 -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산업기술원으로
- 3) 소방기본법 제45조(한국소방검정공사), 제46조(공사의 업무), 제47조(공사의 정관) ⇒ 삭제
- 4) 제48조(감독)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 개정

1

소방
기본법의
제정

10. 제10차 개정 [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14호]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의 용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추므로써 양 법률의 해석상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며, 화재조사 거부·방해 행위와 단순·경미한 법규위반인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분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행정형벌 규정을 존치하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제2항).
- 2)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함(법 제53조제2호, 법 제5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3)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법 제55조 단서 신설).

11. 제11차 개정 [타법개정 2011.3.8 법률 제10442호]

가. 개정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한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기본법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2)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12. 제12차 개정 [일부개정 2011.3.8 법률 제10443호]

가. 개정이유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 설치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소화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종전에는 수도법 제45조에 의해 설치되는 소화전은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으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45조에 의해 최초로 소화전을 설치할 때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을 새로이 규정함.
- 2) 제16조에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불예방지원활동, 급배수지원, 근접대기,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 등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근거가 없었으나, 제16조의 2에 소방지원활동을 신설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앞에서 말한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13. 제13차 개정 [타법개정 2011.3.9 법률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함.

14. 제14차 개정 [일부개정 2011.5.30 법률 제10751호]

가. 개정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 시 시·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된 소방력은 재난 발생 지역으로 파견되어 해당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거나 소방방재청이 직접 지휘하는 소방대에 편성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 11조의2 신설).

나) 화재 및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호 신설).

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17조의3).

15. 제15차 개정 [타법개정 2011.6.7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함.



16. 제16차 개정 [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6호]

국가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자원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인한 구조·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7. 제17차 개정 [타법개정 2011.8.4 법률 제11037호]

가.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소방기본법 관련조문 정리

나. 주요내용

- 1)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함
- 2)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함
- 3)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함.

18. 제18차 개정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가.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변경

나. 주요내용

각 해당 조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함.



19. 제19차 개정 [타법개정 2014.1.28 법률 제12344호]

가.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나.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함.

20. 제20차 개정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가.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변경

나. 주요내용

각 해당 조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함.

21. 제21차 개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936호]

가. 개정이유

변화된 종합상황실의 기능 및 환경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종합상황실 명칭도 119 종합상황실로 변경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소방본부장,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2조 및 제3조).



- 2) 종합상황실의 기능으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전파 기능 이외에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 종합상황실의 명칭은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함(제4조).

22. 제22차 개정 [일부개정 2015.7.24 법률 제13438호]

가. 개정이유

소방기능의 확대와 역할을 감안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종합계획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제5조, 제16조의3 신설)
- 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23. 제23차 개정 [일부개정 2016.1.27 법률 제13916호]

가. 개정이유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여 선제적·적극적인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법에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 부담이 과중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등 법률분쟁비용을 분담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경계지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제13조)

1

소방
기본법의
제정

나) 시·도지사가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분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신설)

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와 함께 해당 시험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17조의4 신설)

24. 제24차 개정 [타법개정 2016.3.22 법률 제14079호]

가. 개정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조문 정리

나. 주요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제1항제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

25. 제25차 개정 [타법개정 2017.7.26 법률 제14839호]

가.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변경

나. 주요내용

각 조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 제26차 개정 [일부개정 2017.12.26 법률 제15300호]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27. 제27차 개정 [타법개정 2017.12.26 법률 제15301호]

가. 개정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여 제정한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나.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따로 법률에서"로 한다.

28. 제28차 개정 [일부개정 2018.2.9 법률 제15365호]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29. 제29차 개정 [일부개정 2018.3.27 법률 제15532호]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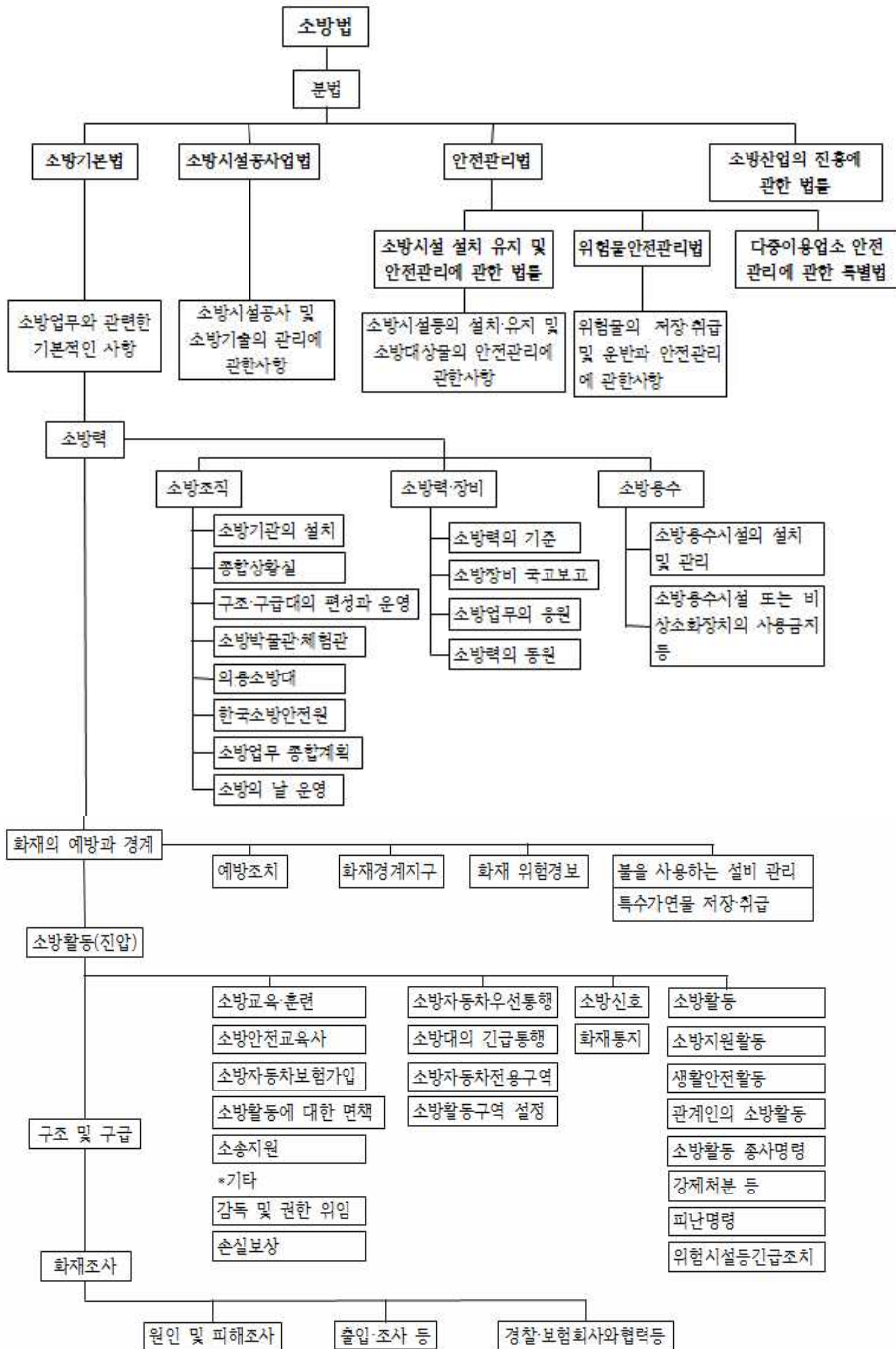
제4절 소방기본법의 구성

[표 2-1] 소방기본법의 구성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 (소방력의 동원)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4장 소방활동 등 제16조 (소방활동)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6 (소송지원) 제17조 (소방교육·훈련)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5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8조 (소방신호)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의2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제25조 (강제처분 등) 제26조 (피난명령)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금지 등)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제30조 (출입·조사 등) 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39조의2 삭제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제39조의4 삭제 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제42조 (회원의 관리)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제44조 (안전원의 운영경비) 제44조의2 (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9장 보칙 제48조 (감독)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49조의2 (손실보상)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50조 ~ 제54조(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7조 (과태료) 부 칙

제5절 소방법의 분법과 소방기본법의 규정체계

[그림 2-1] 소방법의 분법과 소방기본법의 규정체계도

소방
기본법의
제정



Chapter 1

학습정리

- 01 소방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소방법령 변천과정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 02 소방기본법의 구성 과 소방법령의 규정체계는 합당한가?

Chapter 1

학습평가

- 01 종전의 소방법은 4개의 법으로 분법 하였는데 분법한 법령의 법령명은?
- 02 소방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일은 각각 언제인가?

정답

(0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02) 2003. 5. 29, 2004. 5. 30

2 총칙

총칙

**학습
목표**

- 01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따른 소방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지 이해한다.
- 02 소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기능을 이해한다.
- 03 소방 용어의 정의를 숙지한다.
- 04 소방기관·119종합상황실·소방박물관·소방체험관 등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파악한다.
- 05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 01 소방의 목적, 소방용어, 소방기관, 119종합상황실,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소방업무 종합계획, 소방의 날

모든 법률이 총칙이라 하여 분류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작용법들은 총칙부분을 두고 있다.

총칙부분은 본칙 부분에서 가장 앞부분에 두는 규정으로서 법령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부분이다.

소방기본법은 총칙부분에서 소방관련법²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법의 해석에 있어 일관성 및 획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 소방기관의 설치,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소방기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익을 전체적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간으로 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의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소방기본법이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즉 합헌성을 담보하는 법임과 동시에 이 법을 근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성이 담보된 법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과 수단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은 소방기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에 대하여 단계별로 언급을 하고 있다.

첫째 : 1차적 목적인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1차적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 2차적으로 1차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고

셋째 : 궁극에 가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3.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의 기능

가. 소방기본법의 형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등을 언급함으로서 이하 소방기본법의 구성이 화재와 관련한 예방에 관한 사항, 경계에 관한 사항, 진압에 관한 사항, 구조에 관한 사항, 구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합헌성을 담보하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공공의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명시함으로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위한 정당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합헌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이하의 모든 개개조항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한 법임을 표현하고 있다.



다. 소방기본법 운용·해석에 있어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의 기능은 소방기본법 전체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실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이하 모든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바로 목적에 함축되어 있다 할 수 있는바 이하의 법 조항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목적에 표현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이하의 소방기본법 운용·해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준거의 틀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법규적 해석기능을 지닌 규정이다.

라. 입법공백의 보충

입법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소방상황의 발생 등 입법의 공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법의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소방기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적용할 수 있는 입법공백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마. 소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의 목적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소방기본법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소방과 관련된 법률 즉,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어서도 간접적인 목적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관련법에서도 개별법의 목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방과 관련하여 볼 때 소방기본법은 소방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소방과 재해 및 재난에 관하여 기본적인 일반적 지위에 있는 법률인 관계로 관련 법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법이 기존의 소방법이라는 단행법에서 분법 또는 파생되어 왔음을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 의

국민의 자유권이나 재산권 즉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본조의 실익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법령의 용어가 다의적(多義的)이거나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소방기본법의 용어 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법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무엇이 법인지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게 함으로서 국민이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공평성과 획일적인 법집행을 담보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조의 정의규정은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한곳에서 설명하여 돕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입법 기술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본조의 정의규정과 유사한 이른바 약칭(略稱)이 있으나 이것은 본래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의 간소화를 목적한다는 점에서 법문을 해석하여 놓은 정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할 것이다.

2. 용어의 해설

가.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란 소방행정의 목적물이(대상) 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차량·선박·선박건조구조물·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와 같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는 단편·확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분히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1) 건축물

건축물이란 화재의 예방과 진압의 주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²¹⁾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② 위의 ①에 딸린 시설물
2.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3.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	

2) 차 량

소방기본법령에서는 차량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인 “차량”이란 교통수단으로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로

21) 인위적으로 지상(地上) 또는 지중(地中)에 만든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둥, 옹벽, 대피소, 승강기, 항공관제탑 등을 말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

교통법에 의한 자동차²²⁾(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말한다²³⁾.

3) 선박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²⁴⁾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기선·범선·부선)중에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하여 소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

소방기본법에서의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은 육지의 소방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선박을 소방대상물로 하고 있다. 실제 바다를 항해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선박과 관련한 내부 소방시설 등 소방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²⁵⁾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

4) 선박건조구조물

선박의 건조·의장·청소·수리를 하거나 화물을 적재·하역하기 위한 축조물을 말한다. 의장이란 선박에 필요한 모든 선구나 기계를 장비해서 출범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도로교통법 제2조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23)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제1호; 교통수단 “가목”

24)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25) 선박안전법 등



5) 산림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과 죽(竹)을 말하는 것으로²⁶⁾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토지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소방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입목(立木)과 죽(竹)만을 소방대상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공작물

넓은 의미의 공작물이란 인위에 의하여 토지에 고정된 설비의 전체를 말하며 통상 공작물은 “인위에 의하여 토지에 고정하여 설비한 것으로 건축물이 대표적인 것이며 기타 웅벽·굴뚝·광고탑·조형물·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협의의 “공작물”은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에서도 건축물을 따로 정의하고 있어 협의의 공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면 형태나 규모가 동일한 담장이나 대문이라 해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에 설치된 담장과 대문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나 건축물이 없는 공지 등에 설치된 대문은 건축물에 부수되지 않는 단순한 공작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지역

관계지역은 각종 소방활동 상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다. 관계인

소방대상물을 집행하는 기관을 소방행정주체라고 한다면 관계인은 소방행정주체의 의사나 행위의 목적물, 즉 소방행정 객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²⁷⁾, 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 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7)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점유자란 물건 등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²⁸⁾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의 의미는 위의 법률적인 의미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외의 사람도 관계인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경우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외의 사람도 관계인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본부장은 사실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이는 행정기관내의 업무분담의 문제이며 소방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궁극적으로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마. 소방대(消防隊)

각종 소방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며 소방력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의 소방대라 함은 인적인 구성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방대라 함은 인력 외에 소방인력이 소방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장비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바. 소방대장(消防隊長)

소방대장이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제에 있어서의 명칭이라기보다는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현장지휘자(IC-Incident Command)²⁹⁾를 말함이다.

실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모든 소방현장에 있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28)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IC: 선착대 소대장이 최초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후착하여 지휘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방서장이 현장지휘관이 된다.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휘권한이 있는 자(현장지휘관)를 소방대장으로 별도로 정의를 하였다.

3. “용어의 정의”의 적용범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 및 법령뿐 아니라 소방관련 법률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법률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여타의 법률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³⁰⁾ 반대로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방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타 법률에 정의에 따라 그 용어를 해석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제3절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5.30.]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1. 의 의

총칙

본 조는 법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한 의무에 대한 이행 및 집행을 담보하여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나아가 소방업무의 법적 책임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소방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명확히 함으로서 소방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하고자 하고 있다.

2. 소방기관의 설치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서·119안전센터·구조대 등의 소방기관을 두게 되는데 이때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은 관할면적·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고 있다.

본 조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방조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³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시·도에 주어진 소방업무를 적정 원수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통일·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소방업무의 수행을 담보하고 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소방학교 설치 및 그 조직에 관한 사항(제2장), 소방서 등 설치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제3장)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별표 1] 제6호 나목에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업무를 시·도 사무로 하여 그 사무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한 소방업무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참모기관인 소방본부장과 직속기관인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31)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93호, 2013.2.22 일부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13.2.22.] [대통령령 제24393호, 2013.2.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교장) ① 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장·과장·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과·팀·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서 등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서의 과·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②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119지역대) ①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부칙 <제24393호, 2013.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학교장·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제3조·제4조·제6조·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표 2]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8조 및 제9조 관련)

제4절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총칙

제4조(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4.12.30.]

1. 의 의

소방업무는 대부분 긴급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수집·전파 및 상황의 관리와, 지휘·지령을 하기 위한 상황실의 운영은 긴급대응기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조는 소방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소방기관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법률에서 규정(의무화)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을 종합 상황실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상황실의 통일적 운영으로 소방업무의 명확한 수행을 담보하고,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각종 상황에 대한 일원화된 상황관리 및 총괄적인 지휘·지령·통제를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법률적으로 설치·운영토록 강제함으로써 소방기관이 국가 긴급대응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나아가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소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규칙 제2조)

설치·운영기관	운영책임자	인력 및 장비	근무방법 등
소방청	종합 상황실장	- 통신요원 - 유·무선 통신시설	- 24시간 운영체제 - 운영기관장이 정함
시·도 소방본부	"		
소방서	"		



가. 설치·운영 기관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전파를 하는 역할을 한다.

나. 인력 및 장비의 배치 등

종합상황실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대도시·중도시·소도시 : 9명, 소도읍 : 6명)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소방통신망·소방전용전화·소방장거리전화·무선전화)을 갖추어야 하며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규칙 제3조제1항)

종합상황실의 실장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 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 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 3)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라. 직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규칙 제3조제2항)

1) 보고대상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공장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³²⁾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다)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라)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2) 보고방법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은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부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마.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규칙 제3조제3항)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3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긴급상황보고)[소방청훈령 제45호]
[행정안전부령 제2호]

1. 대형화재
가. 인명피해 : 사망 5명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이상 발생화재
나. 재산피해 : 50억원이상 추정되는 화재
2. 중요화재
가.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화재
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다.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3. 특수화재
가.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나.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라.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1.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
2.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응2단계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4. 대응3단계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제5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총칙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오늘날에 있어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나아가 각종 재난·재해에의 대응은 정부가 구성해 놓은 소방관서의 힘만으로는 적절하게 예방·대응 및 복구에 한계가 있다. 특히 화재 등 각종 소방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또한 소방관서는 이러한 국민의 소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자료제공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며, 본 조에서 이러한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 및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소방의 역사 및 안전문화와 관련한 학술적인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2.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규칙 제4조)

소방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박물관에는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 조직,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규칙 제4조의2)

가. 의의 및 기준

일반인의 안전의식 부재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삼풍백화점사고³³⁾,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³⁴⁾, 대구 지하철화재³⁵⁾ 등 각종 대형 참사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의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기 위하여 화재·지진·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가상재난체험을 통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이 최초 개관되었다. 소방 체험관은 지역 주민에 대한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 지사가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3)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사고일시 : 1995. 6. 29. 오후 05:55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5-3 번지
－ 피 해 :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실종신고 관리자 6명

34)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 발생일시 : 1999. 6. 30 오전 01:30
－ 장 소 :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 청소년 수련의 집
－ 패 해 : 사망 23명, 부상 6명

35) 대구 지하철방화 화재사건

－ 발생일시 : 2003. 2. 18 오전 09:53
－ 장 소 :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지하철 전동차」
－ 패 해 : 사망 192명, 부상 148명

◎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규칙 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1. 설립 입지 및 규모 기준

- 가. 소방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 나. 소방체험관 중 제2호의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 가.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분야	체험실
생활안전	화재안전 체험실
	시설안전 체험실
교통안전	보행안전 체험실
	자동차안전 체험실
자연재난안전	기후성 재난 체험실
	지질성 재난 체험실
보건안전	응급처치 체험실

-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표 2-3] 분야별 소방체험관 체험실

분야	체험실
생활안전	전기안전 체험실, 가스안전 체험실, 작업안전 체험실, 여가활동 체험실, 노인안전 체험실
교통안전	버스안전 체험실, 이륜차안전 체험실, 지하철안전 체험실
자연재난안전	생물권 재난안전 체험실(조류독감, 구제역 등)
사회기반안전	화생방·민방위안전 체험실, 환경안전 체험실,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체험실, 사이버안전 체험실
범죄안전	미아안전 체험실, 유괴안전 체험실, 폭력안전 체험실, 성폭력안전 체험실, 사기범죄 안전 체험실
보건안전	중독안전 체험실(게임·인터넷, 흡연 등), 감염병안전 체험실, 식품안전 체험실, 자살방지 체험실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실



다. 소방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이 건물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가.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
- 5) 「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가목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2)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4) 소방체험관에서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가.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대외협력 및 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적절한 수준의 행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축물과 체험교육 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할 적절한 수준의 시설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체험교육 운영 기준

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소방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총칙

다. 시·도지사는 설치되어 있는 체험실별로 체험교육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는 체험교육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능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종류 및 착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기준

가.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실의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소방체험관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체험내용, 체험시간 등을 적은 체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나. 소방체험관의 기능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6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4.>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④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전문개정 2011.7.14.]



1. 의 의

본 조는 2011.7.14.일 개정 시에 신설되었으며, 2015.7.24일자 신설 및 일부개정 되었다. 소방업무는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어 소방예산 및 인력을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의존하여 왔으며, 중앙정부(국가)의 지원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화재 등 재난이 점점 광역화되고 있어 국가사무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간 재정의 규모와 자립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국 가(법 제6조제1항, 영 제1조의2제1항)

국가(소방청장)는 5년마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 규정 신설

다. 시·도지사(영 제1조의2제3항)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마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

라. 기타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영 제1조의2제2항)

- 1)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조치

제7절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총칙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의 날은 범국민적인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월동기간중의 대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11월 9일이 아니고 일제강점기는 12월 1일³⁶⁾,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11월 1일³⁷⁾에 소방의 날이라 하여 각종 관련행사를 하여 오다가 그 후 1963년부터는 매년 11월을 불조심강조의 달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방의 날 행사를 지역단위행사에서 전국규모의 행사로 시작하게 된 시기이다.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을 개정(제12차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법제화하여 행사의 명칭을 통일하고 화재구조구급 신고전화번호인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하였다.

소방의 날은 단순히 행사적 의미를 넘어서 대국민 안전의식의 고취 및 각종 소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등을 위한 정책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방기본법은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36) 일제강점기 때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함

37)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1월 9일로 법정기념일이 되기 전 까지 11월 1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



있도록 하고 있다.

2

2. 의사상자 및 공로자의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

총칙

본 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및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chapter 2

학습정리

- 01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헌법의 기본권과의 관계 정리
- 02 소방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등
- 03 소방기관·119종합상황실·소방박물관·소방체험관 등 설치 및 운영 규정 정리
- 04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의 내용

chapter 2

학습평가

- 01 소방기본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02 선박은 항구 안에 매어둔 것만을 소방대상물로 본다(○,×).
- 03 소방업무의 수행권자와 지휘·감독권자는 각각 누구인가?
- 04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 05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각각 누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가?
- 0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은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가?

정답

(01)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 (02) ○ (03) 소방서장, 시·도지사 (04)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05) 소방청장, 시·도지사 (06) 5년



3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등학습
목표

- 01 소방력 기준의 합리성과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 사업의 내용을 파악한다.
- 02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습득한다.
- 03 소방업무의 응원과 소방력 동원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 소방업무의 응원, 소방력 동원

소방기본법 제1장에서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방업무의 책임과 수행을 규정하고 나아가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장은 소방업무를 실제 적정·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소방력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인력 및 장비(법 제8조 및 제9조) 및 소방용수시설(법 제10조)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소방활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방업무의 응원(법 제11조)과 소방력의 동원(법 제11조의2)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소방기본법임을 감안할 때 소방력에 대한 각종 사항의 명확·구체적 규율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는 바로 소방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제1절 소방력의 기준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6.>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력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총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방력의 3요소라 함은 인적요소인 소방대, 물적인 요소인 소방차량, 각종 소방장비 등과 소방용수(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를 말한다. 이러한 소방력은 소방활동의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소방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물적인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업무를 현실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고 또한 소방업무를 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방력의 적정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업무를 이행토록 할 뿐만 아니라, 소방력의 확충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방 환경의 변화와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소방행정의 발전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방력기준

가. 소방관서(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9조 관련 [별표2];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1)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소방서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근 시·군·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

나) 소방서에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5개 센터 이하마다 1개서를 추가 설치

다)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의 급증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마다 설치

2)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특별시 :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km² 이상

나)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km² 이상

다)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km² 이상

라)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km² 이상

마)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km² 이상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소방정대의 설치기준

가) 향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향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

나) 위에도 불구하고 향만의 이동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소방정대를 설치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km² 이상 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

나. 소방관서장 등의 직급(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표1]; 소방학교장·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



[별표 1] <개정 2013.2.22.>

소방학교장·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직 급
소방학교장	특별시, 경기도	소방준감
	광역시, 그 밖의 도	소방정
소방학교의 부장·과장·팀장·연구실장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
소방서장		지방소방정
소방서의 과장·팀장		지방소방령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 119구조구급센터장·소방정대장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위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市)에 설치된 소방서의 장의 직급은 지방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소방서에 한정하여 그 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

다.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사다리차

-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 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영상 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 를 1대 이상 배치한다.
- (3)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학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 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가) 및 나) 에서 정한 화학차 대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대수를 설치한다.
- (가) 제조소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500 개소 이상 1천개소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천개소 이상인 경우

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text{화학차 대수} = (\text{제조소등의 수} - 1,000) \div 1,000$$

(나)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규모가 위험물 지정수량의 6만 배 이상 240만 배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240만 배 이상 480만 배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480만 배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화학구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차량을 화학구조대에 배치할 수 있다.

다)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 (1)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인구 10만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 시 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2)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적게 배치할 수 있다.
- (3) 119안전센터에 제1호 나목에 따른 화학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차를 펌프차로 간주하여 화학차가 배치된 수만큼 줄여서 배치할 수 있다.
- (4)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 (1)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 지역별로 공설 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지역(이하 “중도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 (2)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면 지역 및 농공단지·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 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일반구조대

- (1) 구조차 및 장비운반차: 구조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 (2) 소방사다리차: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km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구조정(救助艇) 및 수상오토바이: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1대씩 배치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 실정 및 소방 수요 특성에 따라 화학분석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구조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기본 장비를 우선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표 2-4] 구조대 별 기본 장비

구 분	기본 장비	추가 장비
1) 화학구조대	화학분석제독차 1대 이상	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2) 수난구조대	구조정 1대 및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3) 고속국도구조대	구조차 1대 이상	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
4) 산악구조대	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 이상	구급차 및 구조버스 등 그 밖의 소방차량
5) 지하철구조대	개인당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	특수 소방장비

4) 119구급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5)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

가)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시·도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나) 유조차: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소방정대에 두는 소방정 등의 배치기준

가) 소방정 및 소형 보트: 소방정 및 소형 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나) 수상오토바이: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7) 119지역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면적이 50km²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펌프차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공설 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물탱크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라.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1)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

[표 2-5]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

구분	등급 산정 기준
1급서	특별시·광역시·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관할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2만 개소 이상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300 이상인 소방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
2급서	2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인구가 2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소방서 1급서에 해당하지 않는 관할인구가 50만명 미만인 시의 소방서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개소 이상 2만 개소 미만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200 이상 300 미만인 소방서
3급서	관할인구가 25만명 미만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개소 미만인 소방서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200 미만인 소방서

<비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세부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건물위험지수는 관할구역의 유동인구 및 인구밀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text{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개소} \times 15) + 1\text{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개소}]$$

2) 소방서 등급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표 2-6] 소방서 등급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총계	81	69	52
지휘감독요원	서장	1	1
	과장(단장), 담당관	5	3
	팀장(담당)	17	14
행정요원	행정지원요원	11	8
	대응요원	8	5
	예방요원	9	5
현장활동요원	현장예방요원	12	7
	현장대응요원	15	6
	상황요원	3	3

<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 및 화재조사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서장 재량으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서장 이외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마.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

1) 소방서 소속 특수차량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배치인력	30명 또는 24명	24명 또는 21명	15명
비고	국가산업단지 30명 일반지역 24명	국가산업단지 24명 일반지역 21명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소방서 등급을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센터	2급 센터	3급 센터
배치인력	24명	21명	18명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안전센터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119안전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구조	2급 구조	3급 구조
배치인력	27명	24명	21명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조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 대원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4) 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그룹 (서울, 경기)	2그룹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3그룹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4그룹 (세종, 제주, 창원)
산악구조대	18	15	12	9
수난구조대	18	15	12	9
화학구조대	18	15	12	9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운전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119구조대 중 특수구조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조대를 말한다.
- 다. 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5) 119구조대(직할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그룹 (서울, 경기)	2그룹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3그룹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4그룹 (세종, 제주, 창원)
운영지원팀(일근)	6		5	
직할구조대(교대)	39	33	27	21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조차 등의 기준과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에 따라 구조대원,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현장부서의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1명, 직할구조대에 지휘관(대장) 1명을, 항공구조구급대에 지휘관(항공대장) 1명을 각각 별도로 둔다.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배치인력	18명	15명 또는 9명	9명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119구급대에 두는 구급차량은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 다. 119구급대 구급대원 중 1명을 지휘관(구급대장)으로 둘 수 있다.

7)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분야별)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
	기장	부기장		
인력현황(교대근무)	3	3	4	7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의 기준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비사 1명과 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 근무로 두되, 주유차 운영 등을 겸한다.

8)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계	소방정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항해사	기관사	진압·구조·구급대원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에 배치]	운전	구조	운전	구조
30	6	6	12	3		3	

<비고>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되, 구조인력의 경우에는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정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9)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
배치인력	15명	12명	9명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지역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0)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교대근무(1팀 기준)				일근근무		
		상황접수	상황관제	상황보고	구급상담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1그룹	서울	40	6	4	7	10	8	5
	경기	40				10	8	5
2그룹	부산	17	5	3	5	5	7	2
	대구	11				5	7	2
	인천	12				5	7	2
3그룹	강원	9	4	2	4	4	6	2
	경기북부	9				4	6	2
	충북	10				4	6	2
	충남	13				4	6	2
	전북	11				4	6	2
	전남	10				4	6	2
	경북	14				4	6	2
	경남	13				4	6	2
4그룹	광주	7	3	1	3	3	5	2
	대전	9				3	5	2
	울산	5				3	5	2
5그룹	세종	2	2	1	2	2	4	2
	제주	4				2	4	2
	창원	5				2	4	2

<비고>

- 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신고건수, 상황처리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119종합상황실 근무에 따라 상황접수·상황관제·상황보고·구급상당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처리분석, 빅데이터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당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11)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대형	중형	소형
체험관 연면적	5천㎡이상	1천㎡이상 5천㎡미만	1천㎡미만
인력(명)	35	20	12

<비고>

- 가. 배치기준은 행정지원, 체험교육기획, 체험교육운영 인력을 포함하고, 일근근무인력으로 배치한다.
- 나. 소방체험관 외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할 수 있다.
-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3. 소방장비관리법 주요내용[법률 제15301호, 2017.12.26. 제정]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가. 제정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유해화학물 확대에 의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인증제도 도입이나, 검사와 정비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방장비는 취득과 유지관리 방법 등에 있어 일반 물품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현행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내용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2)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4조).
- 3)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5조).
- 4)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5)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 표준규격을 정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6)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방장비의 확충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7)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품목 및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8)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함(제26조).
- 9)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제32조).
- 10)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 11)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2절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국고보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적인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特定經費)를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업무비용에 대해서 법령으로 국가 부담이 의무화된 보조금과 국가가 특정의 사업을 장려할 목적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이 있다.

소방업무는 국가의 기능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나 그 업무의 수행과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시·도의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소방업무수행의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지만, 중앙정부
가 소방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활동적 요소들을 보조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적극적인
장려와 나아가 적정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영 제2조제1항]

가.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1) 소방자동차
- 2)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3)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4) 그 밖의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나.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3.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7. 2. 1., 2017. 7. 6.>

[별표 1의2] <개정 2017. 7. 6.>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규칙 제5조제1항관련)

구분	종류				규격	
소방활동장비	소방자동차	펌프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소형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물탱크소방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화학소방차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고성능		340마력 이상	
			내폭		340마력 이상	
			일반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사다리소방차	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330마력 이상		

			이상인 것에 한한다)			
			굴절	27 이상급	330마력 이상	
				18m 이상	240마력 이상	
				27m 미만급		
		조명차	중형	170마력		
		배연차	중형	170마력 이상		
		구조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구급차	특수	90마력 이상		
			일반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소방정	소방정	100톤 이상급, 50톤급			
		구조정	30톤급			
		소방헬리콥터		5~17인승		
	통신 설비	유선통신장비	디지털전화교환기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키폰장치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팩스		일제 개별 동보장치	
			영상장비다중화장치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무선통신기기	극초단파 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이동용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휴대용	공중전력 5와트 이하	
		초단파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공중전력 5와트 이하		
단파무전기	고정용		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이동용					
소방 전용 통신 설비 및전산 설비	전산 설비	주전산기기	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90메가헤르츠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용량 5기가바이트 이상		
		보조전산기기	중앙처리장치	성능 : 26Mbps 이상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츠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용량 : 22기가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서버		중앙처리장치	성능 : 80Mbps 이상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츠 이상 워드길이: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초당 32메가바이트 이상		



		단말기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츠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모니터	칼라, 15인치 이상
		라우터		6시리얼포트 이상
		스위칭허브		16이더넷포트 이상
		디에스유, 씨에스유		초당 56킬로바이트 이상
		스캐너		A4사이즈, 칼라 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플로터		A4사이즈, 칼라 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범프로젝트		밝기 400룩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액정프로젝트		밝기 400룩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무정전 전원장치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4.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규칙 제5조제2항]

-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5. 국고보조의 기준보조율[영 제2조제3항]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50%로 정하고 있으나, 소방관서용 청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3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등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② 시·도지사는 제21조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1. 의 의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소방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과 수도법 제45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소방활동은 소방의 3요소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원·장비·소방용수에 의해 그 업무가 수행된다. 이 3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소방활동 즉 진압활동은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물은 진압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물론 화재의 양상에 따라서는 일부 위험물 화재와 같이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첨단 과학소방의 시대에서도 소화약제로서의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이 중요한 소화약제로서 갖는 특성은

- 가격이 싸고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 기화열이 크며 연소물체에 도달하기 쉽고
- 사용하기 편리하고



- 침투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약제보다 소화효과가 크다는 물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화재취약지역에 미비된 소방용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유지하여 초기 화재진압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소방용수는 크게 인공적으로 설치한 인공소방용수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소방용수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인공소방용수에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와 같이 설치목적이 소방활동에 사용코자 설치한 것과 그 밖의 용수가 있다. 인공소방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배관에 부설하여 상수도로 급수되는 한 계속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소화전, 급수탑, 상수도에 직결 또는 유수를 일정량 저수한 저수조가 있고 자연소방용수에는 하천, 바다, 호수 등 소화활동 시 소방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인공소방용수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시·도가, 수도에 있어서는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나 공공의 소방에 필요시 언제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개인이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설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는 지정소방용수시설로 관리하는 규제가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관계자의 승낙을 얻어 관할구역내의 사설소방용수시설의 위치·구조·수량 등과 자연소방용수는 사전에 파악해서 소방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차량이 소화활동을 함에 있어 충분한 수량을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구조가 아니면 안 된다.

가. 현행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표3])

[표 2-7] 현행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거리 기준	저수조 설치기준	소화전 기준	급수탑 기준	소방용수 시설조사
국도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	상 업 지 역	100m 이하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 구조 : 지하식 또는 지상식 - 연결금속구 구경: 65mm	- 배관구경 : 100mm 이상 - 개폐밸브 위치 : 지상에서 1.5m이상 1.7m이하	- 월1회 이상
	공 업 지 역					
	주 거 지 역					
그 밖의 지역		140m 이하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나.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다음과 같이 설치기준을 신설하였다.

-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 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영 제2조의2)

- 1) 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시행 2018. 6. 27.] [소방청예규 제16호, 2018. 6.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를 포함한다)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3. "소방호스"란 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4. "관창"이란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 5. "비상소화장치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비상소화장치 설치·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픽토그램"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문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때 적용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제5조(비상소화장치함) ① 비상소화장치함은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화장치함은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함의 내부는 호스의 연장 및 수납조작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2. 함의 전면에는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시하고, 내·외부에는 누구나 쉽게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화전 및 개폐도구) ① 비상소화장치에는 개폐용 핸들이 부착된 지상식 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식 소화전 또는 지하식 소화전 인근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개폐에 필요한 도구를 비상소화장치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화전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 방수압력이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전원 공급 장치와 이를 수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소방호스) ① 소방호스는 장착 링에 결합한 소방용릴호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용릴호스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칭 40mm의 소방용고무내장호스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용릴호스와 소방용고무내장호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호스는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최소 45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하 "방수압력"이라 한다)은 0.17MPa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상수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초기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소방관서의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초기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는 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화재를 방호하려는 지역(이하 "방호지역"이라 한다)의 면적
2. 해당 비상소화장치와 방호지역의 높이 차에 따른 압력손실 가능성
3. 방호지역의 구조물·시설물의 배치형태에 따른 압력손실 가능성
4. 기타 방수압력 감소 등 효과적 화재진화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

⑦ 제5항의 심의위원회는 현장활동 간부 또는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8조(관창) 비상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관창은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은 항상 결합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② 소방용고무내장호스는 아코디언 식으로 보관하여 화재 시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호스는 사용 후 호스 내 잔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 비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화장치함의 잠금장치는 화재 시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소화장치 구성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호, 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관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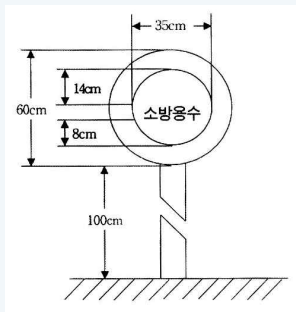


4.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설치된 소방용수는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인에 의한 사용상의 장애 및 훼손 등이 없도록 적정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도로상 또는 주택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표시하여 일반인에게 인식토록 함으로서 함부로 훼손 또는 사용상의 장애(주·정차 등)를 배제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유사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 관리상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표지(다음의 별표2 그림 참조)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 소방용수표지(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2.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비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5. 유지관리

공설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은 그 설치 재원을 각 시·도의 소방시설공동체로 하고 있으므로 그 유지·관리는 사용주체인 소방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설치·유지와 관리를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을 시·도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

3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등

서장은 다음과 같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조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45조³⁸⁾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그 설치자가 유리·관리토록 하고 있다.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나.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6. 기타 사항

도로교통법³⁹⁾에서는 차량의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유사시 소방용수시설의 본래 목적상 장애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 등에 있어서 주차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도법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소화전 설치 및 관리의 의무를 두고 있다.

38) 수도법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9)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2018.8.10. 전문개정]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4절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오늘날에 있어서 화재 및 각종 재난은 규모와 피해적인 면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화재 또는 재난이 당해지역의 소방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거나 특수한 성격의 화재 또는 재난이 있어 타 지역의 소방력 도움이 필요하거나 타 지역의 소방활동과 연관이 있는 사항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사전 협정 및 조율 등 상호지원체제를 갖추어 둠으로서 유사시 효율적인 화재 및 재난대비활동을 함으로서 재난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방응원은 재해나 기타 비상시 행정관청의 기능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당해 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타 관청이 자기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원하여 이를 응원하는 행정응원의 일종으로 현재의 소방업무의 책임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당해 시·도의 구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은 상호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응원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협정사항·대상지역·소요 경비 등에 대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등

2. 응원요청의 요건에 있어서 긴급성

소방기본법 제11조는 상호 응원협정에 있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현장에 이웃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응원은 이웃한 소방기관이 미리 협정 등으로 규약화해 두었지만 “긴급한 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긴급한 때”란 사안이 급박하여 즉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바 이때에 응원의 요청은 여러 물리적인 사항(거리·출동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늦은 조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한 때”라 함은 화재 등의 사고가 긴급하고도 급하게 처리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때 일반적인 필요정보다는 고도의 긴급성이 내재된 필요성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소방응원 출동 시 지휘권

소방업무의 응원 시 지휘권에 대해서는 상호 협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있다고 명시를 함으로서 소방업무의 수행책임⁴⁰⁾과 함께 소방응원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상호응원협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규칙 제8조)

소방응원의 협정체결 시 정하여야 할 내용은 응원출동의 종류 및 응원출동대상지역, 요청방법, 응원출동의 규모 및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 1)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 2) 구급·구조업무의 지원
- 3) 화재조사 활동

40)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12. 30.>



나.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 2)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 3) 그 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5절 소방력의 동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1. 의 의

현대의 화재, 재난·재해 등은 점점 대규모화하여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대규모 산불이나 이천 냉동창고 등 대형사고시에는 타시도의 소방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앞의 제11조에 의해 소방업무의 지원을 각 시·도지사가 이웃한 시·도에 요청할 수 있지만, 본 조에서는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소방력의 동원

가. 소방력의 동원요청자 : 소방청장

나. 소방력의 동원요청대상 : 각 시·도지사(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음)

다. 동원요청 요건

- 1)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2)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라. 동원요청 내용

- 1)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 2)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지원

마. 동원요청 방법(규칙 제8조의2)

- 1)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 가능
 -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2) 위 사항 외에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함.

바. 지휘권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휘

2)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지휘

사. 경비부담 또는 보상

1) 경비부담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

2) 민간 소방인력에 대한 보상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Chapter 3

학습정리

- 01 소방력 확충계획의 수립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및 보조율을 정리
- 0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과 종류 및 관리방법
- 03 소방업무의 응원과 소방력 동원의 개념 및 필요성

Chapter 3

학습평가

- 01 소방력 확충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인가?
- 02 소방용수시설의 종류는?
- 03 소방용수시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0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및 지리조사를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05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가?
- 06 소방청장이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는 권한은?

정답

- (01) 시·도지사 (02)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03) 100m 이하 (04) 월 1회 이상
(05)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06) 소방력 동원

4

화재의 예방과 경계

화재의
예방과
경계학습
목표

- 01 화재의 예방조치를 위한 조치권자, 예방조치명령, 위험물건의 보관 등의 내용을 파악한다.
- 0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관리 및 화재에 관한 위험정보에 대한 내용을 습득한다.
- 03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요령을 숙지한다.

학습
키워드

화재의 예방조치, 화재예방조치명령, 화재경계지구, 화재 위험정보, 불을 사용하는 설비, 특수가연물

1. 개 요

화재는 그 속성상 화재라는 현상이 발생한 후에 그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의 예방은 관계인 즉 민간자율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화재는 발생 메커니즘의 복잡성·불가예측성·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성격상 민간자율에 의한 화재예방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약(화재예방에 대한 투자의 소홀, 인식의 부족 등)이 있다.

또한 화재예방은 공공성을 띠고 있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에서 예방을 위한 각종 사항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의 예방에 대한 제반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바, 본 장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경보의 발령, 화재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상 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사항과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특수가연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장에 있어서의 화재예방과 경계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 대상물에 대한 시설물과 관련된 화재예방의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예방과 경계

예방이란 어떤 현상(화재)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거나 또는 제어를 하여 화재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예방(Prevention, 豫防)이라 할 수 있으며 경계(Watching, Precaution, Warning, 警戒)라 함은 미리 예의 주시한다,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한다는 개념으로 화재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거나 화재가 임박하였을 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예방의 범주보다는 강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방의 개념을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모든 조치라고 확장할 때에는 경계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할 수 있으나, 화재발생의 임박성과 그에 따른 조치의 급박성에 비추어 예방보다는 강화된 조치를 경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과 경계의 한계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종전 소방법에서는 화재의 예방(제2장)부분과 화재의 경계(제7장)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나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볼 때 본 장에서는 법 제12조 및 제15조가 예방의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 및 제14조는 경계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1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본 조는 소방행정주체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예방 상 위험한 행위 또는 소방 활동 상 지장이 있는 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의 객체인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의 의무(작위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명령을 하거나 명령의 상대방이 확실치 않아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치워 화재예방상 안전한 상태 또는 소화활동상 지장이 없는 상태를 실현함



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조치명령(제1항)

화재의
예방과
경계

가. 명령권자(명령 주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나. 명령의 상대방(명령 객체):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령의 상대방(수명자)은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 명령의 요건

명령의 요건은 『화재예방 상 위험 또는 소화활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판단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맡겨져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 또는 지장이 인정되는 경우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구체적 명령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입법기술상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경험(과거의 화재사례, 화재통계의 분석, 소방에 관한 학술지식 등), 주변상황(기온, 풍향, 풍속,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토대로 합리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명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강하므로 명령을 함에 있어서 명령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법익, 공익)과 개인의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비교하여 명령을 해야 함(과잉금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라. 명령의 성격 : 하명적·기속재량적 성격

“~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명령적 행정행위 중 행정객체에게 작위·부작위·수인 등을 부과하는 하명에 해당 된다.

또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량행위의 성격이 있으나 명령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명령을 하여야하는 기속재량 즉 법규재량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명령의 내용

-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에 대한 조치(영 제3조)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관계인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둬온 화재예방상의 위험이나 소화 활동상의 지장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 공익(소방행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소방기관이 관계인을 대신해서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워 화재예방상의 위험 또는 소화 활동상의 지장을 배제함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방기관이 관계인을 대신하여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므로 외견상 행정대집행과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제2항에 의한 조치는 법령상의 의무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의무를 대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이 되지는 않으며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유물권에 대하여 직접 실력행사(물건을 옮기거나 치움)를 하여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행위로 행정상 즉시강제(대물적 강제)에 속한다. 제2항에서 관계인을 알 수 없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할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해소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업무처리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 강제 처분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 1) 보관공고(법 제12조제4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보관일로부터 14일 동안 공고
- 2) 보관기간
게시판에 공고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

나. 강제처분한 물건의 처분

- 1) 보관기간 종료 시 매각 또는 폐기
- 2) 매각 시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

다. 매각 또는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상

매각 또는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참고 :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알 수 없는 위험물 또는 물건에 대한 처리절차

① 소속공무원에게 옮기거나 치우도록 명령 → ② 14일동안 게시판에 공고 → ③ 공고기간 종료 후 7일간 보관(경과) → ④ 매각 또는 폐기 → ⑤ 매각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 → ⑥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 보상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1.27., 2017.7.26.>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1.27.>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6.1.27.]

※ 제3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의 의

화재의 발생우려가 다른 지역보다 많거나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 즉 화재의 예방 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정의 지역을 특히 관리 및 규제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경계지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과 그 피해의 최소화라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재경계 지구는 그 특성상 강화된 화재경계지구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경계지구 지정목적에 비추어 지구주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또한 본 조에 서와 같이 법률로서 그 권원을 규정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경계지구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서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정권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적극적인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명령 현황, 소방교육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요건

- 가.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지역
- 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4.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 가. 시장지역
- 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사.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아. 그 밖에 위의 가~바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5.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영 제4조)

가. 교육 및 훈련 :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

－ 교육 및 훈련 10일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 : 소방특별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화재경계지구안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함(법 제13조제4항).

다. 소방특별조사 : 연 1회 이상 실시

라.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작성 관리 : 시·도지사

-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가연물에 있어서 날씨의 조건은 연소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바람 등은 주변의 소방 대상물로의 연소확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즉 화재와 관련하여 기상상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상법”은 이상기상으로 인한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은 기상에 따른 화재의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이상기상 예보나 특보시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여 국민에게 주의와 관심을 유도하고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경계활동의 강화 등의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상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특보”라 함은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⁴¹⁾

2. 화재위험경보 발령조건

가. 발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나. 발령사유 : 이상기상의 예보·특보가 있을 때

다. 발령기간 중 조치사항 : 해제시까지 당해구역내의 불의 사용제한, 그 밖에 화재발생의 위험한 행위 등의 제한

41) 기상법 제2조 (정의)



3. 기상법에 의한 예보 및 특보

○ 기상법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4.17>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삭제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삭제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제2항 각 호의 기상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세부 종류·내용, 대상 구역,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4.17.>

※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건조경보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호우주의보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의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의 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 함은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가연물이란 화재발생시 다른 가연물 보다는 연소 확대가 빨라 그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물질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은 이러한 설비에 대한 위치·관리·구조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연료, 용접·흡연 등 제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도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종전 소방법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하였으며, 특수가연물은 위험물로 분류하여 그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도의 화재예방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 입법례에 따라 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지켜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영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치기준, 구조기준, 관리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설비를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노·화덕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 구분하여 설비기준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영 제5조 관련)

■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여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연료탱크에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다.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보일러와 벽·천장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난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여 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

탁업의 영업장

- 마.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 사. 영화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아.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 카.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타. 역·터미널

■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1. 연통 또는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워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 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장·서커스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 경주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 라.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할 것
 - 나. 조작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할 것
 -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마.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할 것
5. 수소가스는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옥상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바람이 초속 7미터 이상 부는 때에는



떨어지는 아니 된다.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전기시설

1.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접속기구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노·화덕 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주요 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불 연재료로 할 것
 -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착된 배기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씌울 것

4

3. 특수가연물

화재의
예방과
경계

특수가연물이란 쉽게 착화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연소 확대되는 면화류, 볏짚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영 제7조)

-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의 금지표지를 할 것
-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나)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 [영 별표2]

특수가연물(제6조 관련)

품 명		수 량	
면 화 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벚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상	

※ 비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벚짚류”라 함은 마른 벚짚·마른 복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조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 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 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 제품, 합성수지 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넙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Chapter 4 학습정리

- 01 화재의 예방조치명령권자, 화재 예방조치명령의 내용 및 위험물건의 보관 등의 내용과 절차 정리
- 0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관리 및 화재 위험경보에 대한 내용을 숙지
- 03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요령과 특수가연물의 종류 및 저장·취급 요령

Chapter 4 학습평가

- 01 화재의 예방조치명령권자는 누구인가?
- 02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운 경우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절차는?
- 03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의 지정권자는?
- 04 화재경계지구에서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및 교육을 몇 회 이상 실시하는가?
- 05 화재의 위험경보권자는?
- 06 석탄·목탄류, 볏짚류, 사류는 특수가연물이다(○,×).
- 07 가연성고체가 특수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3000킬로그램이상이다(○)

정답

(0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02) 그 날부터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 (03) 시·도지사 (04) 연 1회 이상 (05)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06) ○ (07) ○



소방활동

학습 목표

- 01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의 도입 배경과 활동범위 그리고 한계와 강제처분 등 조치로 인한 보상규정 등을 파악한다.
- 02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교육대상, 교육 횟수, 교육훈련기간 등을 숙지한다.
- 03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시험, 결격사유,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 04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신호와 사고 현장 발견·화재오인 우려 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숙지한다.
- 05 관계인의 소방활동,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활동 종사명령, 피난명령, 위험시설 긴급조치,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강제처분과 조치명령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 07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송지원 등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숙지한다.

학습 키워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신호, 화재 통지,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소방대 긴급통행, 소방활동구역,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소방활동 면책, 소송지원

화재, 재난·재해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현상이며 이를 제어 또는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반 활동을 소방활동이라 할 수 있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소방활동은 그 자체적으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행정기관에 의한 각종 제한·명령·처분 등이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긴급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소방행정상의 조치가 소방활동의 속성 일 지라도 그로 인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합리성과 적법성이 있어야 하는 바, 본 장에서는 소방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관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방대의 긴급통행 및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긴급성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소방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경계구역의 설정,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광범위한 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의 목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토록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법률적인 권원을 부여하고 있다.

제1절 소방활동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19., 2017.7.26.>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본 조는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본래의 업무를 조문화한 이유는 소방의 업무인 소방활동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사고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법률에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방업무 수행에 따른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담보 한다는 선언적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제2절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1. 의 의

제16조(소방활동)에서 화재, 구조·구급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외의 소방의 여러 가지 현장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2011.3.8.일 개정 시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의 소방지원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산불예방 지원활동, 급배수활동, 각종 행사시 근접대기,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등의 소방지원활동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소방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방관련 법령에 없었다.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방지원활동의 법적근거가 명확해 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업무의 정당성 및 합법성이 확보되었다 할 것이다.

제16조의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구급활동을 말하며, 제16조의2에서는 소방지원활동이라 하여 위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유관기관·단체의 요청에 의해 소방지원활동을 하였을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방지원활동의 내용

가. 주체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나. 요건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소방지원활동의 내용

-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규칙 제8조의4)
 -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라. 소방지원활동의 한계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함.

마. 비용 부담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에 의해 소방지원활동을 한 경우 협의하여 비용부담을 하게 할 수 있음.



제3절 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삭제 <2017. 12. 26.>

[본조신설 2015.7.24.]

1. 의 의

최근들어 화재, 구조·구급 활동 외 기타출동과 같은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여러 가지 현장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2015.7.24. 개정 시 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을 본조에 신설하여 위급한 상황이 우려되는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대응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 생활안전활동의 내용

가. 주체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나. 요건 :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

다. 생활안전활동의 내용

-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라. 생활안전활동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조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6.]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제5절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현행법에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합의금·벌금 등 벌률 분쟁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증진토록 하기 위하여 본조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보험가입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제6절 소송지원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6.]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소송절차를 모르고 소송비용 부담 등 어려움과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절 소방교육·훈련

소방
활동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11.19., 2017.7.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수반되며, 많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업무이며 특히 화재·재난·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소방활동은 그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소방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관계로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업무의 실질적인 이행을 다시 한 번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등 학교시설에서의 화재로 어린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가입 국가 중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을 홍보하도록 2005년 8월4일 소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이 규정을 두게 되었다.

2.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3의2)

가. 화재진압훈련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나. 인명구조훈련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다. 응급처치훈련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라. 인명대피훈련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마. 현장지휘훈련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정

3. 소방교육·훈련의 기간 등(규칙 별표3의2)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며 그밖에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소방안전교육훈련(규칙 제9조)

소방청·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대 상(법 제17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

다.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표3의3)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및 장비 기준,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기준, 교육의 방법, 안전관리 기준, 교육현황 관리 등을 이행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3의3] <개정 2017. 7. 26.>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규칙 제9조제2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안전교실: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 2)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류
화재안전 교육용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헬멧,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옥내소화전 모형 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연기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화재대피용 마스크, 공기호흡기, 119신고 실습전화기
생활안전 교육용	구멍조끼, 구멍환, 공기 튜브, 안전벨트, 개인로프, 가스안전 실습 모형도, 전기 안전 실습 모형도
교육 기자재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동형 앰프, LCD 모니터, 디지털 캠코더
기타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2.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 등

가.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사 및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받게 할 수 있다.

3. 교육의 방법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교육시간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나.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실습(체험)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습(체험)교육 시간의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 라. 실습(체험)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 1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 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기준

-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육훈련대상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교육현황 관리 등

-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실시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기재한 소방안전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화재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의 홍보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8절 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의

소방방재청 개청과 더불어 체계적인 예방홍보 추진을 위하여 ‘소방’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올바른 ‘소방인식⁴²⁾’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해 ‘생존을 위한 예방교육, 설득과 이해를 위한 홍보’를 기본개념으로 정립하고 소방기본법 제17조를 2005년 8월 4일 개정하여 안전교육과 소방홍보를 할 수 있는 법령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학교에 소방홍보반과 소방안전교육사반 등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5개년 동안 25억원을 투자하는 ‘재난안전교육 5개년사업’을 수립하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였으며, 소방교육과 홍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이후에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방 안전교육을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으로 옮겨 규정하였다.

2.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가.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42) 소방인식(消防認識) : 소방을 올바로 이해하고 판별하는 일

- 나. 소방안전교육의 진행
- 다.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 라.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 마. 소방안전교육의 교수업무

3.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영 제7조의2 관련, 별표2의2)

가.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차.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 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 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안전교육사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시험방법(영 제7조의3)

- 1)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2)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표 2-8] 소방안전교육사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구 분	시험 과목	출제범위	비 고
제1차 시험 ※ 4과목 중 3과목 선택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선택형 (객관식)
	구급·응급처치론	응급환자 관리, 임상응급의학,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포함), 화상환자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재난관리론	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의 이해,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평가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이해 안전교육의 개념과 기본원리 안전교육 지도의 실제	논술형 (주관식)

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규칙 제9조의2관련, 별표3의4)

5.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영 제7조의5)

가.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

-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5명

4) 삭제 <2016.6.30.>

다.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 문제 등의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6.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영 제7조의6)

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 가능

나.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 안전 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

7.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등(영 제7조의7)

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나.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규칙 제9조의3제2항)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사본

6호, 제8호 및 제9- 소방청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의3제3항).

다.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

※ 규칙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5.>

③ 삭제 <2017. 2. 3.>

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영 제7조의7제4항)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공고(영 제7조의8)

가.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

라. 소방청장은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9.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법 제17조의3)

가. 의 의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당해 사유에 대한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라 함은 그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법 제17조의4)

소방청장은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하며,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가. 의 의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둠으로서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일정한 대상에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본 조항을 신설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나.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 및 배치기준(영 제7조의11 관련, 별표2의3)

- 1) 소방청 : 2명 이상
- 2) 소방본부 : 2명 이상
- 3) 소방서 : 1명 이상
- 4) 한국소방안전원
 - 가) 본회 : 2명 이상
 - 나) 시·도지부 : 1명 이상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명 이상



제9절 소방신호

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신호는 소방대의 활동에 관한 신호라 할 수 있으며 신호의 종류 및 방법 등을 단일 화합으로써 신호체계의 혼란 등의 방지로 소방대의 활동의 효율성을 꾀하고 나아가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소방신호는 오늘날의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가치나 인식적인 차원에서 극히 미미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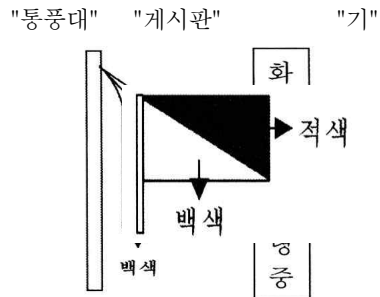
하지만 소방신호는 비상대응기관으로서 사회의 모든 인프라(Infra)가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소방 활동상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법은 소방신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4)

[표 2-9]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신호방법 종 별	신호발령	신 호 방 법	
		타종신호	사이렌신호
경계신호	화재예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한 때	1타와 연2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 3타 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그 밖의 신호



* 소방신호는 타종신호와 사이렌 신호 외에도 통풍대 게시판·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비 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 등을 사용한 경우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절 화재 등의 통지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5.30]

※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의 의

화재발견 및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출동지체는 바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사안이므로 화재 등의 통지의무는 신속발견·출동 및 진화라는 소방목적에 달성하는 수단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등의 통지의무를 일반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화재 등의 통지의무는 일응 강제성보다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법률화함으로써 계몽 또는 선도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막소독 또는 쓰레기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의 횟수가 많아 실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등

- 가. 시장지역
- 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바.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3. 시·도 조례(예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시행 2013. 7. 10.] [부산광역시조례 제4881호, 2013. 7. 10., 일부개정]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팩스·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7. 10>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 2. 22>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의 공사현장
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신설 2012. 2. 22>



제11절 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본조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초기진압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므로 화재의 초기진압에 있어 일차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적인 사항 외에 각종 소방활동을 유발토록 한 당사자라는 지위와, 자신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위해는 자신이 가장 먼저 보호하고 방호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이에 근거하여 관계인에게 소화활동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화활동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화재예방의 의무⁴³⁾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본 조는 관계인의 소화의무를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안내 및 협조의 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계인의 의무

가. 인명구조 : 사람을 구출하거나

4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각종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각종 소방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두고 있다.

나. 소화활동 : 불을 끄거나

다. 연소 확대방지 :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라. 시간적 요건 :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제12절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2.26.>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

1. 의 의

소방력의 일부분이며 소화활동의 모든 요소(인원·장비·수리 등)를 운반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은 소화활동의 원활 및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가장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을 위하여 출동 시 일반교통에 쓰이지



않는 도로나 사유지 또는 물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⁴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차와 사람에 있어서 출동상의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긴급성 확보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소방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방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범위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제3항에서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같이

- 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다.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통행의 방해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에 의한 소방자동차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자동차를 긴급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그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다.

44) 소방기본법 제22조

가. 긴급자동차의 우선(도로교통법 제29조)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19. 3. 28.] 제29조

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도로교통법 제30조)

- 1) 자동차등의 속도제한
- 2) 앞지르기 금지
- 3) 끼어들기 금지

4. 긴급자동차와 사이렌의 사용

소방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소방자동차가 소방 목적상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는 “긴급 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 목적상 출동할 경우에는 경광등 또는 사이렌을 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3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시행일 : 2018.8.10.] 제21조의2

1. 의 의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벌칙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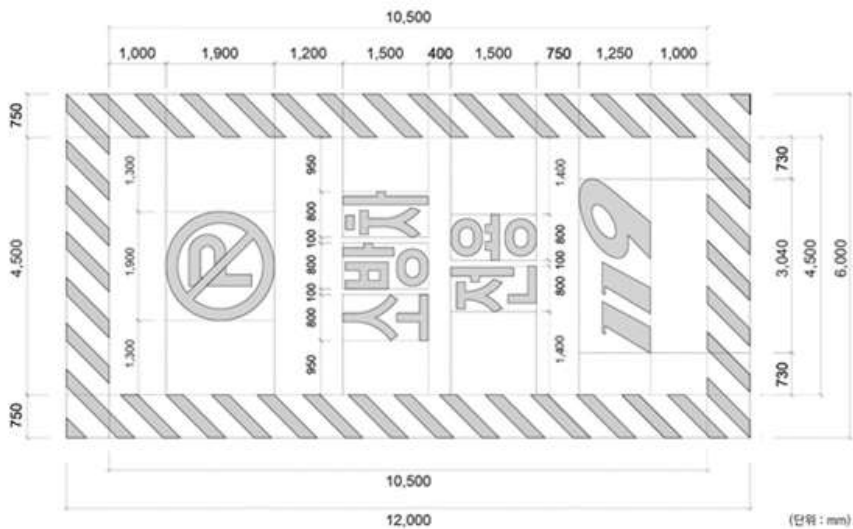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영 7조의13)

가.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다음의 「별표 2의5」와 같다.

[별표 2의5] <신설 2018. 8. 7.>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



비고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로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3.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영 7조의14)

- 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나.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라.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마.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8. 7.]

제14절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의 및 주요내용

소방대의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출동시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가장 긴급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의 실질적인 긴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⁴⁵⁾에 관한 사항과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는 소방대가 현장출동이라는 긴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용 도로 외에 사도(私道) 또는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점용·사용절차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출동에의 신속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 등에 대한 침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45)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본 조에서 언급하듯이 소방대의 현장출동이라는 요건과 나아가 긴급성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는 차량 등의 교통금지 도로, 가옥 부지내의 도로 또는 개인주택의 전용도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리고 물위라 함은 호수, 양식장, 댐 등을 가리키며 빈터란 개인 소유지로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15절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

1. 의 의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은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 외에도 낙하·붕괴·도괴·폭발 등 각종 2차적인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 일반인의 무단출입 등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을 야기할 수 있고 숙련되고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의 활동은 자칫 소화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바 소방대장이 일정한 구역(소방활동상 필요한 안전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통제토록 함으로써 화재 및 2차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소방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 조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본 조항은 종전의 소방법에 있어서는 “방화경계구역”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소방 활동구역”이라는 쉽고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였다.

2.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

가. 소방대장

현장에서 실제 출동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인 소방대장 (IC - Incident Command)이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 장도 소방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소방활동구역의 범위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소방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4. 소방활동구역 출입권자(영 제8조)

- 가.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나.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다.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라.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마.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바.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5. 경찰공무원의 조치(본조 제2항)

경찰은 안전유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소방본부장, 소방서장등)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소방대가 현장에 없을 경우 등) 경찰이 이를 행사함은 경찰의 본질적인 의무에 비추어 보아도 적합하다 할 것이다.⁴⁶⁾

제16절 소방활동 종사명령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2. 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6)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1. 의 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소방현장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속한 상황의 조치 및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이다. 하지만 소방활동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관설 소방력이 충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설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및 소방대장이 소방상 필요한 때 소방활동 및 구조활동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다.

소방현장에 있어서의 상황조치 및 각종 인명구조 등의 활동은 전문인력인 소방공무원에 게도 고도의 어려움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소방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각종 안전장구의 제공 및 안전확보, 명령 및 지휘권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소방활동 종사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보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는 달리 일반인의 경우는 각종 소방활동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일반인은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회피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소방활동이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요된 소방활동의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소방활동 비용의 지급

제3항에서는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인적·물적 비용에 대한 지급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예컨대 건물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중장비등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 중장비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한 보상은 소방활동이 있도록 한 원인제공자(제3항 제2호) 및 당해 소방대상물에 있어 사람을 구출하거나, 화재의 진압 및 연소확대 방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인 관계인(법 제20조)과 소방현장에서의 물건을 훔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 제2항에서의 소방활동 종사자의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고,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제2호에서 보상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함.



제17절 강제처분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5.30]

- ※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의

화재현장에 있어서의 소방활동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사용·사용의 제한·방수·파괴 등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제처분은 당연히 그 활동에 있어 법률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의 긴급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출동로의 장애물에 대한 강제처분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 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 상 요구되는 각종 필요한 강

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활동을 확보하고 있다.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차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활동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에 대한 본 조의 규정은 실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법률적 권원이 되는 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근거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2. 강제처분(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화재라는 소방상 장애가 있을시 소방행정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법령상의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바 이러한 행정상의 조치가 명령과 강제처분이다.

화재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목전의 긴급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 부과시 화재의 진압 및 인명의 구조 등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정주체가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는 행정상 강제처분의 하나인 즉시강제를 말하며 이러한 즉시강제는 사전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를 명함이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반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그 발동요건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즉시강제권의 발동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 즉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여 조치가 필요할 것(적합성의 원칙)

둘째 :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셋째: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서는 당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며(보충성의 원칙)

넷째: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행정상의 필요사이에 정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협의의 비례의 원칙)

강제처분 자체는 바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이 되므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강제처분은 한편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재량권의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재현장이라는 긴급성에 비추어 무제한의 재량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처분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와 상황적인 근거를 요구함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한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 및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의 진압 또는 인명의 구조라는 소방의 목적과 그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시,

첫째 :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라는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 이러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 개인의 재산등에 대한 강제처분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 져야 하며

셋째 : 그 목적과 수단의 선택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에는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3. 강제처분의 대상(법 제25조 제1항~제3항)

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

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기 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라.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4. 강제처분의 내용(법 제25조 제1항~제3항)

- 가. 소방대상물(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일시사용
- 나. 소방대상물(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의 제한 또는 필요한 처분
- 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소방활동 상 필요한 처분
- 라.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 또는 이동조치 처분

5. 처분의 요건과 손실보상

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

1)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의 요건인 “필요한 때”

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은 소방행정이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필요성에 따른 강제처분을 하지 않으면) 당해 소방대상물은 화재로 인하여 재산 등이 완전히 소실되기 때문에 소방행정이 적극 개입한다 함은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이므로 그 필요성은 개연성과 검증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소방대상물 보다는 요건의 강도가 약하다 할 것이다.

나)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의 요건인 “필요한 때”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의 요건인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 필요성보다는 강화된 요건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제1항은 그 필요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수단인 강제처분은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헌법⁴⁷⁾상의 요구에 비추어 불 때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

47)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의 필요성보다는 한층 강화되고 개연성이 높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가” 외의 소방대상물과 손실보상

-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이 아닌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 목적상 필요한 강제처분의 요건은 필요성이라는 개념이 아닌 긴급성 및 급박성이 요구되는 가일층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성이라는 불확정 개념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및 소방대장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개연성이 있는 요건의 정도로 성립할 수 있지만 “긴급성”이라는 불확정 개념은 현장상황 등을 판단하여 지금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화재진화의 실패·연소확대·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의 소방대상물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이 아닌 소방행정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방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타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은 다른 소방대상물에 발생한 소방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화재의 진압 또는 인명의 구조라는 소방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외의 특별한 희생을 제공하였다 볼 수 있다. 이에 법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제3호는 기타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과 손실보상

1) 강제처분과 손실보상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확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가능한 현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통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골목길 등의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급박한 소방활동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하여 적법·불법을 불문하고 소방차량 출동로상의 장애가 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이동 및 제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처분 또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라는 긴급성과 급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처분의 수단이 아닌 다른 경미한 조치로도 신속한 출동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의 사용과 제한은 인정이 되나⁴⁸⁾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 또한 법령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등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규정(법 제49조의2)을 두고 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

48)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소방자동차의 긴급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기본법의 제반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1조에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22조에서는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한 현장출동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25조에서는 소방자동차의 출동로상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을 두어 화재 및 재난·재해 등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7. 소화활동과 강제처분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위하여 주수를 하고 파괴를 하는 행위자체가 강제 처분이며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강제처분의 규정은 파괴소방 등의 소화활동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화재현장에 있어서 광범위한 강제처분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행하고 있으며 그 재량에 있어서도 많은 법률적·사실적인 권한을 주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정도와 요건 또는 강제 처분을 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계라 함은 법이란 명확해야 하며 무엇이 법인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이 법치주의의 원리임을 볼 때 강제처분의 요건인 필요성 또는 긴급성 등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의 재량에 대한 한계라 할 수 있다.

제18절 피난명령

소방
활동

제26조(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피난명령은 화재 등 각종 소방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구역 밖으로 피난토록 하는 행정처분으로 생명위험 지역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명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피난명령 또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 제23조가 소방대의 입장에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면 본 조는 소방활동 보다는 위험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안전의 확보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제2항은 소방본부장등은 피난에 소방력을 투입하기보다는 화재 등 각종 소방상황의 조치에 주력하고 위험지구내의 사람에 대한 피난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업무와도 깊은 연관⁴⁹⁾이 있기에 경찰로 하여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4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제19절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6.>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의

본 조는 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처분과 그 성격이 유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내용이 다르며 소방활동을 위한 각종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바 본 조에서는 소방기본 활동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방서장 등의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여 덩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는 화재 등 각종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물질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연소확대,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의 대형재난으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인하여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보상하게 하는 규정 [동법 제49조의2(손실보상)] 을 두고 있다.

5

2. 주요내용

소방
활동

가. 긴급조치권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나. 긴급조치 대상

- 1)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 또는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 2)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

다. 긴급조치 요건

- 1)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 2) 화재의 발생이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

라. 긴급조치 내용

- 1)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조작
- 2)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 차단



제20절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7. 12. 26.]

※ 본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시 적재적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 유지되어야 하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본 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또는 손상 등으로 효용상·사용상의 장애를 주는 경우 실제 화재 시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소방활동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제한을 가함으로써 유사시 즉시 이용이 가능토록 함에 있다.

2.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의 제한

가. 소방용수시설물

- － 소화전·저수조·급수탑 및 비상소화장치

나. 사용의 제한 및 방해금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 금지
 -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목적과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함이 타당하고 또한 사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효용상 장애유발 행위금지

-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과 소방기본법

소방용수는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의 3대 요소이며 특히 화재현장 등의 소방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기본법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0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설치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서는 화재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27조에서는 현장에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권을 두고 있으며 본 조에서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의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용수에 대한 규정은 소방활동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소방용수에 대한 규정은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규정(소방기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대의 긴급통행 - 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등)과 함께 본 규정을 묶으로써 인력과 장비와 소방용수가 포함된 소방대의 실질적인 소방활동의 원활을 확보하고 있다.



Chapter 5

학습정리

- 01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의 개념과 활동범위 그리고 한계와 강제처분 등 조치로 인한 보상규정 등 정리
- 02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교육대상, 교육 횟수, 교육·훈련기간 등을 정리
- 03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시험, 결격사유, 배치 등에 대한 내용
- 04 소방신호 요령과 사고 현장 및 화재오인 신고내용 정리
- 05 관계인의 소방활동,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활동 종사명령, 피난명령, 위험시설 긴급조치,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의 개념 및 강제처분과 조치명령에 대한 내용 특히 최근 개정·시행되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과 진입 방해행위 금지 규정
- 06 개정 신설된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송지원 등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Chapter 5

학습평가

- 01 다음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중 반드시 출동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02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은?
- 03 업무에 관계없이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은 인명대피훈련이다(○,×).
- 0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경찰서,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이다(○,×).
- 05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가 있다(○,×).
- 06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행위는 119신고 대상 아니다(○,×).
- 07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5

소방
활동



- 08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9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구역은?
- 10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는 통행할 수 없다(○,×).
- 11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가능하다(○,×).
- 12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서장의 소화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활동에 종사한 경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인 것은?
- 14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하는 것은?
- 15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 16 단전, 단수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01) 소방지원활동 (02)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03) ○ (04) × (05) ○ (06) ×
 (07) 관계인 (08) × (09)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10) × (11) × (12) × (13)
 강제처분 (14) 피난명령 (15)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6) ×

6

화재의 조사

화재의
조사학습
목표

- 01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의 개념, 조사 방법, 조사반 운영, 조사자의 자격 등을 숙지한다.
- 02 화재조사 시 출입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질문 등 권한과 관계 공무원의 의무 규정을 숙지한다.
- 03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협력, 관계 보험회사와의 협력 사항을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화재원인조사, 화재피해조사, 출입조사권, 수사기관, 국가경찰공무원, 관계 보험회사

제1절 의의

화재는 그 성격상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며 특히 대형화재의 경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피해 및 위해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의 원인과 피해 정도 등 화재와 관련한 일련의 메커니즘(mechanism)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화재조사가 할 수 있다.

화재조사가 전체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원인 피해 정도 등의 실제적인 진실 또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나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화재조사의 목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방에서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발전의 일환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화재조사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사법업무의 일환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사정하여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화재조사가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과 관련한 화재조사 개념은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조사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통일적인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8년 11.7 행정자치부 훈령 제17호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제정하고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종전의 소방법을 분법하면서



화재조사자격제도를 두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법은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강제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과의 상호협력·관계보험회사와의 조사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라는 현상과 화재조사는 여러 법률관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조사는 형사사법업무인 경찰관의 업무와는 깊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1.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조사

형사사법업무로서의 화재조사는 화재의 원인에, 보험회사에서의 화재조사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중점이 있다 할 것이나, 소방에서는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화재의 원인·발화·발견·통보 및 연소확대 등의 화재발생부터 피난상황, 소방설비의 작동 등 화재진압까지 화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 밝혀냄으로써 향후 화재의 예방·홍보 및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소방설비의 개선, 소방점검 등 예방활동에 참고)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소방행정의 점진적인 개선 및 발달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에 있다.

2. 형사사법업무로서의 화재조사

경찰관은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실화죄⁵⁰⁾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

50)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인을 발현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형사사법업무의 정의를 실현한다.

화재의
조사

3. 보험회사에서의 화재조사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사정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의 목적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2절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1.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제168조 (연소)

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 (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화학적 폭발현상은 제외)

첫째 : 일반적인 사회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연소현상

둘째 :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셋째 : 소화 시 소방시설 등 이와 동등한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2. 화재조사 종류 및 조사범위(규칙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5)

가. 화재원인조사

- 1) 발화원인 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 2)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 3)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 4)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 5) 소방시설 등 조사 :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나. 화재피해조사(화재 또는 소화로 생긴 손해)

1) 인명피해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중상의 경우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경상의 경우 중상 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한다) 부상을 말한다.

2) 재산피해

-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수손피해 : 소방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6

화재의
조사

3.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가.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규칙 제12조제1항)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나. 화재조사 전담부서장의 업무(규칙 제12조제2항)

- 1)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 2) 화재조사의 실시
-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다. 화재조사권자(법 제29조제1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

4.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가. 화재조사자의 자격(규칙 제12조제3항)

화재조사전담 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규칙 제12조제4항 관련, 별표6]

화재전담부서에는 발굴용구·기록용기기·감식용기기·조명기기·그 밖의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개정 2009.3.13>

1.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

구 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발굴용구 (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굵개
기록용기기 (14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감식·감정용 기기(13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조명기기(5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안전장비(7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1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보조장비(7종)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증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추가 권장 장비(17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물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유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30㎡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8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6

화재의
조사

2. 소방서

구 분	기자재명
발굴용구(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굵개
기록용기기(14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감식용기기(9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조명기기(5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안전장비(7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1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보조장비(7종)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증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추가 권장 비(3종)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화재시물레이션시스템, 정전기측정장치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20㎡이상의 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8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조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비고

1. 거점소방서단 화재발생 빈도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이 권역별로 별도로 지정한 소방서를 말한다.
2. 촬영용 고무매트란 증거물 등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격자 표시형 고무매트를 말한다.
3. 화재조사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추가 권장 장비는 화재조사 및 감식·감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써 보유가 권장되는 장비를 말한다.
5. 화재조사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규칙 제13조)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다음의 '별표7' 참조)은 소양교육·전문교육·실습교육·행정으로 구분하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조사자의 전문성을



항상하고 나아가 진정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목
소양교육	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 등
전문교육	기초화학, 기초전기, 구조물과 화재, 화재조사 관계법령, 화재학, 화재패턴, 화재조사 방법론, 보고서작성법, 화재피해액산정, 발화지점판정, 전기화재감식, 화학화재감식, 가스화재감식, 폭발화재감식, 차량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방화화재감식, 증거물수집보존, 화재모델링, 범죄심리학, 법과학(의학), 방·실화수사, 조사와 법적문제, 소방시설조사, 촬영기법, 법정 증언기법, 형사소송의 기본절차
실습교육	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사례연구 및 발표
행 정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료식 등

* 비고: 전문교육의 경우 교육과목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과목을 병합·세분·추가·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화재조사 시점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화활동의 개념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발생을 인지한 때(신고접수시점 또는 화재각지시점), 출동도중 정보수집, 현장도착시 정보수집, 진화단계, 진화정리단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소화활동과 동시”라는 것은 현장진화단계의 개념이 아니라 신고접수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6. 화재조사의 목적

- 가.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 방지와 피해의 경감
- 나. 예방행정(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등)의 자료활용
- 다. 연소확대 및 소방시설의 작동상황 등을 파악, 진압대책의 자료활용
- 라. 화재발생상황, 원인, 손해상황 등을 통계화 함으로써 소방행정의 자료로 활용

6

7. 화재의 종류

[표 2-10] 화재의 종류

화재의
조사

대상물별 화재종류	긴급상황보고대상화재 (조사활동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1. 건축·구조물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 물이 소손된 것 2. 자동차·철도차량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건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 된 것 3. 위험물·가스제조소등화재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제조· 저장·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4. 선박·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 이 소손된 것 5.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 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6.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가. 인명피해 : - 사망 5명 이상 -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나. 재산피해 - 50억원 이상 추정화재	가.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청공 장, 문화재, 지 하철, 지하구 등 공공건물 및 시 설의 화재 나. 관광호텔, 고층 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 조·저장·취급하 는 장소, 대형화 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다. 이재민 100명이 상 발생화재	가.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 재 나.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 되는 화재 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라. 기타 대상이 특 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제30조(출입·조사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 ※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 하 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의 의

행정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감독하에 있는 사업자 혹은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이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기 위하여 사무소, 창고 또는 관련 장소 등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를 출입검사·조사라고 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관계인에 대하여 강제조사권인 자료제출명령·출입검사·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화재조사 활동에 법적 근거를 두어 강제조사권의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원활하게 원인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6

2. 출입·조사의 수단

화재의
조사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화재조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해명자료
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출입·조사

출입·조사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기, 물건 등 기
타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화재조사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다. 질 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행정의 주체가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화재조사 시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관계인에 대한 자발적인 대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⁵¹⁾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인의 자발적인 답변이 아
니면 답변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소방기본법은 본 조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과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벌칙⁵²⁾을 두
고 있지만 질문에 대해서는 벌칙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출입·조사자의 의무

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금지

다. 화재조사 수행 시 취득하게 된 비밀 누설금지

51) 헌법 제12조제2항 ‘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52) 소방기본법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6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4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 소방행정상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행정상 업무협조의 관련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정하고 있는 화재조사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조사 업무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상호 협력의 의무 측면에서 볼 때는 수사기관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화재조사 등의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화재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나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거나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조사 업무와 화재조사 업무를 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법률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2. 조사대상

가. 인적대상 :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게 체포된 피의자

나. 물적대상 : 방화 또는 실화와 관련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3. 조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조사권에 대한 행위의 제한

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제5절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나 많은 부분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 할 것이다.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언급한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및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상호 협력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연관성의 정도를 표현한다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화재현장에 도착하고 나아가 실제 진압을 담당함으로써 당해 화재의 주위정황·내부사항·화재의 성격 기타 특이 사항 등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가장 많이·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범죄수사를 할 때 소방공무원이 소유 또는 인지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들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 또는 실화의 구성요건 등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업무이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찰관련 법상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함이다.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지만 공공의 복지증진이라는 국가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관할경찰서장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력의 의무는 상이한 국가기관에서 행하여지는 화재조사라는



업무가 중복됨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력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에도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제6절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소방·경찰·보험회사에서 각각의 목적을 갖고 화재조사를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 하에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의 지급여부라는 이익과 화재피해를 당한 피보험자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 절차와 관련이 있지만 특수 장소에 대한 화재의 예방이라는 기능 즉 공익적인 기능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규정 또한 상호간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적인 단체이나 소방업무와 깊은 연관성, 관계보험회사의 공익성 등 그 업무성격⁵³⁾에 비추어볼 때 소방본부·소방서 등 소방기관에의 화재조사에 대한 협력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5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화재의
조사

Chapter 6

학습정리

- 01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의 개념, 조사 방법, 조사반 운영, 조사자의 자격 등 정리 - 화재조사권자, 화재조사시기, 화재조사 전담부서
- 02 화재 출입·조사 시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권, 질문권 등과 관계 공무원의 의무 규정의 내용
- 03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협력, 관계 보험회사와의 협력 사항

Chapter 6

학습평가

- 01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권자를 모두 나열하시오.
- 02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조사는 어느 시점부터 실시하는가?
- 03 화재조사에 대한 조사권은 소방청장에게만 있다(○,×).
- 04 화재피해조사에는 인명피해조사와 재산피해조사가 있다(○,×).
- 05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정답

(0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02) 소화활동과 동시 (03) × (04) ○
(05)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학습
목표

01 화재, 재해·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한다.

02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 배경을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구조대, 구급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제1절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화재, 재해·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의 대처라는 소방활동은 구조 및 구급업무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에서 비추어 볼 때 구조 및 구급업무는 그 자체가 바로 소방활동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운영할 수 있는 구조·구급의 조직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소방활동 상 당연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본 조와 제35조, 제36조에서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조에서는 단순히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소방활동 중의 하나인 구조 및 구급업무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구조·구급 업무에 대해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제2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제정 운용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 제정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제6조 및 제7조)

- 1) 소방청장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생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1)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편성·운영함.
- 2)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고,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함.
- 4) 소방청장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문구조·구급대원을 양성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5)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구조·구급 현장에서 인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설치(제27조)

- 1)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 2)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Chapter 7

학습정리

- 01 화재, 재해·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의 개념과 기능 정리
- 02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내용

Chapter 7

학습평가

- 01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명은?
- 02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조직은?
- 03 화재·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 활동을 조직은?

정답

(0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02) 구조대 (03) 구급대

8

의용소방대

의용
소방대학습
목표

01 의용소방대의 의의, 연혁, 설치 근거와 관련 규정을 이해한다.

02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 배경을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의용소방대는 관설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화재예방과 초기발견 및 신고·소화 등은 물론 각종 재난방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간소방조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희생·봉사정신이 강한 사람들의 자원에 의하여 조직되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단위생활 공동체 속에서 화재 등 각종 소방상황에 있어서 상호 협조 및 상부상조라는 민간 조직에서 그 모태를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순수 자율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재진압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긴급성을 가지는 업무인 까닭에, 유사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관이 행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부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등이 설치된 시·도 지역에 있어서는 화재예방홍보, 진압업무보조 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 재난·재해시에도 관설소방대를 보조하여 지역방재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지역은 특별시, 광역시와 시·읍·면지역이며,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소방기본법의 위임에 의해 각 시·도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으나 전국적 형평성과 어느 정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조례준칙에 의거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의용소방대가 기본적인



으로 공동생활체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볼 때에도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38조 삭제 <2014.1.28.>

제39조 삭제 <2014.1.28.>

제39조의2 삭제 <2014.1.28.>

제1절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연 혁

의용소방대는 그 유형의 차이는 있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있어 왔던 제도이며, 이 의용소방대가 오늘날 관설소방의 모태인 점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 성립의 배경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 및 지역공동체의 재산과 생명은 국가 또는 타인이 개입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보호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 의식 및 공동체 의식의 발로를 근간으로 최초 조직되고 설립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순수한 자율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소방활동 종사의 필요성 때문에 소방기본법은 법령으로서 의용소방대조직과 운영에 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초 세종 때 금화도감(세종8년 1426년)이라는 최초의 화재 진압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이 금화도감의 세부업무 내용에 대한 사료 [비화조건(備火條件)⁵⁴⁾, 1431년 세종 13년] 을 보면 그 당시부터 한성부 내에서는 화재예방(이 당시에는 화재예방과 방범업무를 겸함) 및 화재발생시 진압을 위한 민간조직체가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조직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후기 일본인 거류민단에서 의용소방조를 편성한 것이 근대의 최초의 의용소방

54) <備火條件>중 일부

3. 매리(每里)에 5집마다 한 명의 우두머리를 결정하고 그 우두머리마다 통기를 비치하여 5가인 성명을 기록하고 도감에서는 이 통기를 보아서 독신자 이외에는 모두 준비를 막론하고 인원수를 결정하며 급수통을 준비하였다가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지체치 않고 근처의 각 호는 각기 자기 집을 구하고 그 나머지는 관령이 집합 정돈하여 도감의 지휘를 따라 시행하게 한다.

대 조직이었다(1889년 고종26년) 이러한 의용소방대 조직은 일제 강점기에 전국적으로 확산, 제도권으로 흡수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소방서의 설립에 있어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경성 소방서 1925년)

- 1915. 6. 소방조규칙 제정(조선총독부령 제65호)
- 1939. 7. 3 경방단규칙(警防團規則)제정(조선총독부령 제104호)
- 1958. 3. 11 소방법 제정시(법률 제485호) 의용소방대 설치규정
- 1972. 12. 의소대 설치 조례제정(각 시·도별 제정)
- 2008. 1. 17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규정(법률 제8844호)
- 2014. 1. 28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44호)

2. 설치근거 및 관련규정

가. 설치근거

-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 시·도 조례(시·도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 법”이라 한다.)

나.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의용소방대 법 제2조)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법 시행규칙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3.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제3조~제8조)

가.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나.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 1)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 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②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 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라. 조직

- 1)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 2)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3)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마. 임무

- 1)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②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④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 ①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②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③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의용소방대 법 제8조제1항 관련)

1. 의용소방대(남성, 여성, 혼성)

의용
소방대

[표 2-11]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지도부	예방홍보반	1. 화재예방 활동, 불조심 캠페인 2. 주민지도·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현장관리반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2. 지역의용소방대

[표 2-12] 지역 의용소방대 조직 및 분장사무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가료처치 등



3. 전문의용소방대

[표 2-13] 전문의용소방대 조직 및 분장사무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2.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반	1.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2.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4. 전담의용소방대

[표 2-14] 전담의용소방대 조직 및 분장사무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비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바. 복장착용 등

- 1)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규칙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달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 60명 이내
2. 시·읍: 60명 이내
3. 면: 50명 이내
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8.29.>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제9조~제13조)

가.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1)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나. 재난현장 출동 등

- 1)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2)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 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라.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마. 교육 및 훈련

의용
소방대

-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무상대여)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 가. 의용소방대 제도
 -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 다.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 가. 수난(水難) 구조
 - 나. 산악 구조
 -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5.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가. 경비의 부담

- 1)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소집수당 등

의용
소방대

- 1)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 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재해보상 등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 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절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가.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 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나.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업 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나.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회 의

의용
소방대

가.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나.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다.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라.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5.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도 또는 시·읍·면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대형재난과 관련한 시·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7.8.29.>

Chapter 8 학습정리

- 01 의용소방대의 의의, 연혁, 설치 근거와 관련 규정 정리
- 02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

Chapter 8 학습평가

- 01 관설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화재예방과 초기발견 및 신고·소화 등은 물론 각종 재난방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간소방조직은?
- 02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명은?
- 03 의용소방대의 설치권자는?
- 04 의용소방대의 설치지역은?
- 05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전국적인 조직은?

정답

(01) 의용소방대 (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3)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04) 시·도, 시·읍 또는 면 (05)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학습 목표

- 01 국내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해한다.
- 02 소방기술의 개발 촉진자와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홍보 행사한 실시한 자 등에게 자금 지원, 재정 지원을 하는 취지를 이해한다.
- 03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의 시책을 숙지한다.
- 04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 취지를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국제화 사업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 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한 국내 소방산업은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미국 등 공업선진국의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 및 기술경쟁에서 어려움이 있고 중국제품에 대하여는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방안을 소방기본법에 신설(08.1.17)하였다. 또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08. 6. 5)됨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비, 업무, 정관 등 일부 규정은 소방기본법에서 삭제 또는 개정되었다.

9

소방
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제1절 국가의 책무

제39조의 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국가는 국내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였고 또한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 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⁵⁵⁾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전문개정 2011.5.30]

55)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1. 의 의

소방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방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 또는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해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재정지원의 범위

- 가. 소방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나.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 다.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 라.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제3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새로운 소방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기술력 축적하기 위해서 국가는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 등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우수한 소방기술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마.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
업부설연구소
- 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제4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 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국내 소방산업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미국, 일본, 독일 등 공업선진국의 제품과 품질 및 기술경쟁에서 중국과는 가격경쟁에서 취약한 실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소방산업제품이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 따라 국가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전시회나 국제교류 또는 국외시장의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 추진시책

- 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 다.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 라.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Chapter 9

학습정리

- 01 국내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리
- 02 소방기술의 개발 촉진자와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홍보 행사한 실시한 자 등에게 자금 지원 및 재정 지원 내용
- 03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의 시책 정리
- 0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

Chapter 9

학습평가

- 01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맡은 정부기관은?
- 02 국가는 소방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 03 국가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04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0

한국소방안전원

한국
소방
안전원학습
목표

0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근거와 연혁, 안전원의 업무, 회원 관리, 운영 경비, 임원 등 규정을 이해한다.

02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내용을 숙지한다.

03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취지를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한국소방안전원, 회원의 관리, 운영 경비, 교육계획, 정관, 임원, 유사명칭,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이 단체는 국가의 정책상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법인의 조직 등에 대해서는 근거법인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명 및 업무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은 2017. 12.26일 소방기본법 제40조가 개정되면서 재단법인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함에 있으며 이러한 단체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띄우고 있으므로 그 설립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절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1. 의 의

한국소방안전원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와 소방관계자의 기술 향상이라는 그 설립목적의 공익성에 비추어 설립근거와 업무의 근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및 설립근거

1980년 이전 내무부산하 소방단체로 대한소방협회, 한국위험물안전기술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방염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유사단체를 통합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하였다.

1980. 1. 4 법률 제3229호로 종전의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만들어 소방 및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홍보 그 외의 소방관련 업무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소방기본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300호로 개정되면서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안전원과 관련된 사항을 소방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하여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설립 목적

정부의 소방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기술의 향상과 홍보 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의 위탁사업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절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1. 의 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안전원장은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영 제9조)

가. 안전원의 장은 법 제40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 둔다.

-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라.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기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안전원의 업무

제41조(협회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7.12.26.]

1. 의 의

법 제40조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는 설립된 안전원의 업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원의 업무 및 사업은 안전원의 정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 협회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명확한 이행의 확보와 동시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2. 안전원의 업무

한국
소방
안전원

- 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나.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다.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라.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행정기관의 업무위탁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 즉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가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전되어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탁관계(신탁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조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한

-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사항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된 업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자

마.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바.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회원의 관리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2.26.>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1. 의 의

안전원의 회원은 안전원의 설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관계로 회원에 대한 자격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조는 안전원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한 규정으로 1호 및 2호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될 사람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으며 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2. 회원의 자격

가. 소방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사람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방염처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2)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자
 - － 소방시설설계업자
 - － 소방시설공사업자
 - － 소방공사감리업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등 허가자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나.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업무관련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다. 기타 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절 안전원의 정관

제43조(안전원의 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7.12.26.]

1. 의 의

본 조는 안전원의 설립 등에 대한 적정·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관이란 주식회사 등 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설립 요건 중 하나이다⁵⁶⁾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등과 법인의 조직에

56)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또는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조 제1항은 정관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제2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법인 등은 법인이 자주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바, 특히 필요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기 전에 소방청장의 인가를 얻도록 하여 변경된 정관의 적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가”란 안전원에서 행하는 정관의 변경이라는 법률행위에 관할행정청인 소방청장이 동의하여 정관의 변경행위를 유효·적법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보충행위이며 행정법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이다.

이 법은 안전원의 설립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에서는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관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안전원 설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정관에 있어서 기재사항

가. 목 적

나. 명 칭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바.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사.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원 정관 변경 : 소방청장의 인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절 안전원의 운영경비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전문개정 2017.12.26.]

본 조는 안전원의 예산 및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한국소방안전원은 다른 일반적 인 단체와는 달리 국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체라 할 수 있으나 행정상 업무의 위탁 또는 위임 시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본 규정 또한 안전원의 운영경비는 회비 또는 협회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7절 임원 구성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전문개정 2017.12.26.]

1. 안전원의 임원(법 제44조의2)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법 제44조의3)

소방기본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금지

Chapter 10

학습정리

- 0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근거와 연혁, 안전원의 업무, 회원 관리, 운영 경비, 임원 등 규정 정리
- 02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규정 신설) 등 내용
- 03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내용 정리

Chapter 10

학습평가

- 0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한 소방 단체는?
- 02 2018년 변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법인 성격은?
- 03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승인 및 교육평가감독을 하는 자는?
- 04 국가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

(01) 한국소방안전원 (02) 재단법인 (03) 소방청장 (04) ×

11

보칙

보칙

학습
목표

- 01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 서류 및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다.
- 02 소방청장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취지를 이해한다.
- 03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희생이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을 숙지한다.

학습
키워드

감독, 권한의 위임, 손실보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공무원 의제

법률은 일반적으로 본칙규정과 부칙규정으로 나누고 있으며 본칙규정은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두고 있다 소방기본법도 이와 같은 법률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보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부수하는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며 소방기본법에 있어서는 산하단체인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과 이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에 관한 사항 및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감독

제48조(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 2017.12.26.>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안전원에 위탁하고 있음으로서 담당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감독권을 행사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며 2017.12.26.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안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소방기본법 외에도 소방법령⁵⁷⁾에서 안전원에 위탁한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이고 명확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

1. 안전원에 대한 감독업무 내용(영 제10조제1항)

- 가.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 나.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라.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 소방청장의 승인(영 제10조제2항)

3. 안전원으로 변경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 가.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 나. 소방청장은 위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 다.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영 제10조제3항)

5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별적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항.

11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 제49조의3)

행정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⁵⁸⁾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보칙

제2절 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5.30]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기관의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하고 수임기관이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위임은 법률이 정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위임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야 하며 전부에 대하여 위임할 수 없다.

본 조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행정관청(소방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방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둬으로써 효율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전문가인 실무자에게 그 권한을 둬으로써 실질적인 소방기본법의 수행을 확보하고 있다.

58)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영 제18조의2)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다.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1

제3절 손실보상

보칙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1. 의 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소방활동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일반인에 대한 특정의 행위명령 등을 통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예로서, 희생에 대한 보상·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함), 현장 소방활동 시 강제처분·긴급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둌으로써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손실보상의 대상

- 가. 생활안전활동 대응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나. 소방활동 종사명령 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다. 화재 현장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
- 라.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마.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손실보상의 주체 : 시·도지사

4.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영 제11조)

- 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
 -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나.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 다.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의 동법시행령 별표 2의4와 같다.

11

보칙

소방활동 중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영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2의4)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에 따른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에 따른다.

4. 보상금 지급순위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금의 환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영 제12조)

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마.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바.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 위의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영 제13조)

- 가.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나.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보상위원회 위원장(영 제14조)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다.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11

보칙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마.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7. 보상위원회의 운영(영 제15조)

가.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기타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영 제18조).

8.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영 제16조)

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나.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위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영 제17조)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0.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영 제17조의2)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1

보칙

Chapter 11 학습정리

- 01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 서류 및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내용 정리
- 02 소방청장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취지 파악
- 03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희생이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신설) 내용 정리

Chapter 11 학습평가

- 01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 서류 및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 등 감독권자는 누구인가?
- 02 행정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소방기본법 상의 신설 규정은?
- 03 소방청장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소방기본법 상의 근거 규정은?
- 04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보상하는 신설 규정과 그 보상의 주체는

정답

(01) 소방청장 (0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03) 권한의 위임 (04) 손실보상, 시·도지사



벌 칙

학습 목표

- 01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의 취지를 이해한다.
- 02 행정벌(行政罰) 즉 벌칙에 대한 규정으로 행정형벌(行政刑罰)로는 징역·벌금과 양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로서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하는 규정의 취지를 이해한다.
- 0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하는 양벌규정을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벌칙,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태료, 양벌규정, 부과절차, 행정처분

벌칙이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예방함과 아울러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즉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상 부과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법규범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그 집행이 강제되는 강제규범이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강제력의 수단으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을 규정하게 된다.

벌칙의 필요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규정의 경우이다. 그러나 의무규정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대응하는 벌칙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의무의 이행이 강요되는 경우에도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 이외의 수단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선 소방행정상의 시정조치를 취하게 하고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는 경우이다.

소방기본법은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 행정벌(行政罰) 즉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

12

며 행정형벌(行政刑罰)로는 징역·벌금과 양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로서 과태료(過怠料)규정을 두고 있다.

벌칙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심리강제)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범 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벌 또는 행정벌은 행위 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 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된다.

2. 행정벌의 종류

가. 행정형벌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상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 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처분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질서벌

1)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행정법령에 위반하는 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데 대하여,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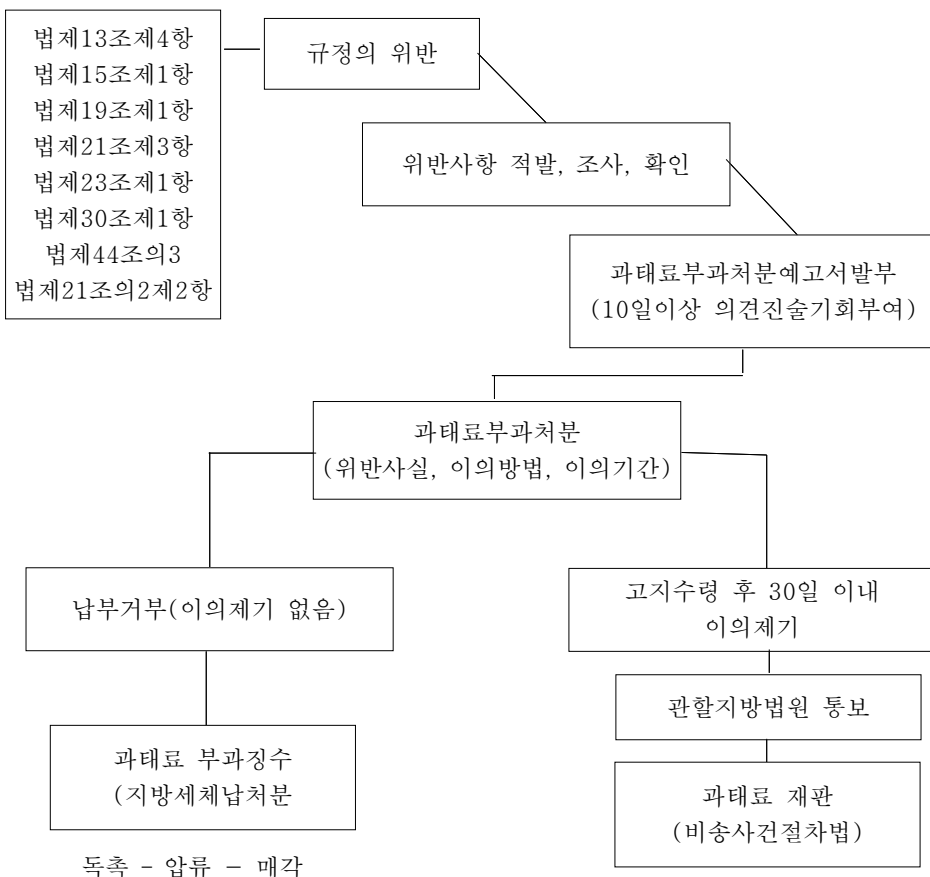
정질서별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업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대판 1969. 7. 29, 69마400)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과하여져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벌칙과의 사이에 누범(累犯)관계도 생길 수 없다. 그리고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규정되는 금전벌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과하여지는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징계의 수단으로 과하여지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등이 있다.

소방기본법은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두고 제56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권자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부과절차

[그림 2-2] 과태료 부과 절차



12

3. 소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한 벌칙]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 1)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방해한 사람
 -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3)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나. 처 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1조에 의한 벌칙]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 1)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나. 처 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소방기본법 제52조에 의한 벌칙]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 1)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한 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제2항)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나. 처 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한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조사 등)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처 벌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4조에 의한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7.24., 2016.1.27>

1. 제13조제3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

12

벌칙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생활안전활동 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3)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의 소방활동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하는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5)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6)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규정에 따른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나. 처 벌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30]



행정법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 재산 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직접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종래 형법이론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부정설(통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이 인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기업범죄, 공해죄 및 일반경제범죄의 영역에서는 법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형벌은 형사벌과는 달리 정책적인 견지에서 행정상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위법 상태의 발생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예방적 또는 위하적(威嚇的) 요소⁵⁹⁾가 많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도 행정형벌은 윤리적 요소가 비교적 약하며 합목적적·기술적 요소가 강한 특수성을 강조하여 법인처벌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실제로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의 자연인만 처벌하여서는 법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 양벌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소방기본법 또한 여느 행정법과 같이 양벌규정을 소방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다.

5. 행정벌과 행정처분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행정벌이라는 동일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병과 할 수 없으나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행정벌의 적용은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일반통치권에 기한 벌이며 행정벌은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인 관계로 위반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소방기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해당여부·과태료처분 해당여부 및 벌칙 규정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하여야 한다.

59)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가함으로써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느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일반예방 효과와 유사한 개념

6.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질서벌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한 과태료]

벌칙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2. 9.>

[전문개정 2011. 5. 30.][시행일 : 2018. 8. 10.] 제56조

가. 위반 규정 및 부과대상

-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2)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규정에 따른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 3) 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



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4)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5)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6)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⁶⁰⁾ 외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7)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화재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8)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나. 처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

60)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7. 10.>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12

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벌칙

라. 과태료 부과권자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19조 관련, 별표3)]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 기준

[표 2-1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50	100	150	2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20	50	100	100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200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의2	100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	50	100	100	100
사.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00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5호	50	100	150	200
자.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6호	200			

12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한 과태료]

벌칙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부과대상

화재 등의 통지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⁶¹⁾로 정하는 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나. 처 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61)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제4881호, 2013. 7. 10., 일부개정]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2. 22>



- 01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의 효과를 파악
- 02 행정벌(行政罰) 즉 행정형벌(行政刑罰)과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로서 과태료(過怠料)의 개념과 처벌의 차이점 정리
- 0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하는 양벌규정 정리

- 01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벌칙은?
- 02 행정벌의 종류 2가지는?
- 03 벌금은 행정벌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 04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범칙금 중에서 행정형벌로 볼 수 없는 것은?
- 05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인 것은?
- 06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하는 벌칙 규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07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중 권력적 단독행위(영업허가, 영업정지, 공기업의 특허, 면허취소, 자격정지, 과징금, 조세의 부과 등)인 것은?

정답

(01) 행정벌 (02)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03) 행정형벌 (04) 범칙금 (05) 과태료
(06) 양벌규정 (07) 행정처분

13

부 칙<제00000호,2000.00.00.>

부칙

학습
목표

01 법률은 본칙(총칙규정·실체규정·보칙규정·벌칙규정)과 부칙(부수적·경과적 규정)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이해한다.

02 부칙은 본칙과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이해한다.

학습
키워드

본칙, 부칙, 시행일, 유효기간,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이다.

법률은 총칙규정·실체규정·보칙규정·벌칙규정으로 구성되는 본칙과 부수적·경과적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부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칙은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본칙의 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부칙은 장의 번호를 붙이지 아니하며 조의 경우 본칙규정의 조번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1조, 제2조, ……”와 같이 한다.

제1절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0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0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의 시행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시행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일을 규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또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0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00000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절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00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효력은 종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도 미치며 종전의 상태와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던 행위가 새로이 규제대상이 되거나 또는 종전의 조직이 폐지됨으로써 그 구성원의 신분 관계에도 변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의 상태에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 이행에는 혼란이 야기될

13

부칙

수 있기 때문에 신·구 상태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경과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 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법률 사이에서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제4절 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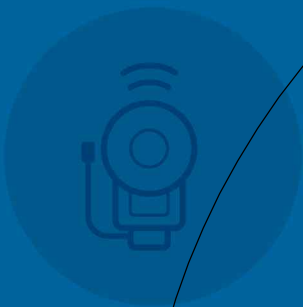
제00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00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Chapter 13

학습정리

- 01 법률은 총칙규정·실체규정·보칙규정·벌칙규정으로 구성되는 본칙과 부수적·경과적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부칙으로 구성
- 02 “부칙은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본칙의 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



부록

1.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2.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지 1~10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소방용수조사부

[별지 제3호서식] 지리조사부

[별지 제3호의2서식]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5호서식] 경력(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증

[별지 제7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6] [행정안전부령 제45호, 2018.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6.>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消防艇隊)·119지역대·119종합상황실·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3.]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장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 3. 6.>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담당관, 담당(팀장)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나. 삭제 <2018. 3. 6.>
 -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마. 삭제 <2018. 3. 6.>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 가.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3. 6.> [전문개정 2012. 12. 13.]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3. 6.> [전문개정 2012. 12. 13.]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록

[전문개정 2012. 12. 13.]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 중 소방인력에 관한 보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2. 13.]

부칙 <제45호, 2018.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수신:	보 고 일 시:				
참조:	작 성 자:				
발신:	보고책임자:				
발신지	○○종합상황실	관할소방서	○○소방서	접수시간	
제목					
1. 발생개요 가. 일 시: 나. 장 소: 다. 대 상: 라. 건물구조: 마. 원 인: 바. 사고개요: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부상) - 사망자 명단: - 부상자 명단: 나. 재산피해: 천원 - 부동산: - 동 산: 3. 동원상황 가. 인원: 명(소방 , 의용소방대 , 경찰 , 그밖의 인원) 나. 장비: 대(펌프 , 탱크 , 구조장비 , 구급장비 , 그밖의 장비) 4. 조치사항 5. 그 밖의 사항(보험가입 및 언론보도내용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용수조사부

수리 번호	위 치	지상식 또는 지하식	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소화전배관 연결부위의 깊이(m)	출수 압력 (kg/cm ²)	표지판 유무	배관구경 (mm)

[illegible]

286 소방법령 II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지리조사부

			결재자	
구 분	내 용			
1. 공사명				
2. 위치				
3. 시공처		전화번호		
4. 시공자				
5. 공사기간				
6. 공사구간				
7. 불통사유				
8. 조사자	계급	성명	(서명)	
<u>약 도</u>				

210mm×297mm[백상지(80g/㎡)]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illegible]

364mm×25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
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응시번호				사진 (3.5cm×4.5cm)
응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E-Mail)		

시험사항	응시자격				
	시험면제	☐ 해당 없음 ☐ 제1차 시험 면제 : 제 회 제1차 시험 합격(응시번호 번)			
	제1차 시험 선택과목 (3개 선택)	☐ 소방학개론 ☐ 구급·응급처치론 ☐ 재난관리론 ☐ 교육학개론			
	응시지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절 취 선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표

사진 (3.5cm×4.5cm)	응 시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시 험 일 시	제1차 시험 :		
	및 장 소	제2차 시험 :		
	제 1 차 시 험 선택 과 목			
	합격(예정)자	제1차 시험 :		
	발 표 일 자	제2차 시험 :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4. 휴대전화 및 이메일 :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5.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인터넷 접수 시 JPG파일을 첨부합니다.
6. 응시자격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각 호 중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호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합니다.
※ 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번호 "2"를 기재합니다.
7. 시험면제 : 전 회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회수와 당시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8. 제1차 시험 선택과목 : 제1차 시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 안에 "v"표시를 합니다.
9. 응시지역 : 시험 공고 시 안내하는 응시지역 중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0. 모든 내용은 정자(正字)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시험답안카드(OMR)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6.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 응시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유의사항

- 이 증명서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부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소방안전교육사증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사 진

(가로 5cm × 세로 7cm)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비고: 태두리는 금박

210mm×297mm[백상지(150g/m²)]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7. 2. 3.>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쪽수 : 작성 연월일 :						결재			
소방안전교육사증 번호	사진 (3.5cm × 4.5cm)	생년 월일	성명	주소	최종 경력	재교부상황			비고
						날짜	사유	확인	

364mm×257mm[(백상지 80g/㎡) 또는 (증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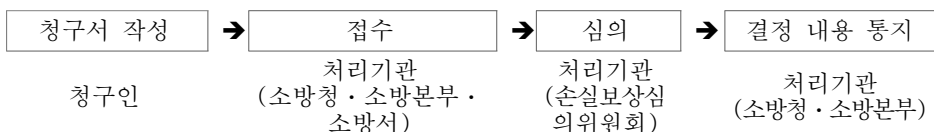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294 소방법령 II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 6. 26.>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 6. 26.>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참고자료]

1. 단행본

소방방재청, (2009), 한국소방행정사 '2009' 증보판, 한국소방행정사 편집위원,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

이윤근, (2006), 소방관계법령 해설1, 한성문화.

정경문, (2016), 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법률저널.

중앙소방본부, (2016),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119생활안전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중앙소방본부, (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정책국, 대명디앤피.중앙소방학교, (2017), 소방법령Ⅱ, 디앤피디자인.

2.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소방청 <http://www.nfa.go.kr/nfa>

3. 법 령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시행 1988.2.25)

소방법(법률 제6893호, 시행 2004.5.30., 폐지법령)

소방기본법(법률 제15365호, 시행 2018.8.10)

소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082호, 시행 2018.8.10)

소방기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호, 시행 2018.6.2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393호, 시행 2013.2.22)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45호, 시행 2018.3.6)

소방장비관리법(법률 제15301호, 시행 2018.12.27)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시행 2018.6.8)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696호, 시행 2018.3.13)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소방청예규 제16호, 시행 2018.6.27)

수도법(법률 제15193호, 시행 2018.6.13)

기상법(법률 제14786호, 시행 2018.4.19)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4호, 시행 2018.4.19)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4597호, 시행 2017.9.15)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시행 2018.2.9)

부록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4603호, 시행 2017.6.22)
- 고등교육법(법률 제15038호, 시행 2018.5.29)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 시행 2016.9.28)
-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4497호, 시행 2017.3.28)
- 의료법(법률 제15716호, 시행 2018.8.1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29호, 시행 2018.5.30)
-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877호, 시행 2017.9.19)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3호, 시행 2018.6.27)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09호, 시행 2017.10.19)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7호, 시행 2018.5.8)
- 경찰법(법률 제15566호, 시행 2018.4.17)
-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15565호, 시행 2018.4.17)
- 형법(법률 제13719호, 시행 2018.1.7)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29호, 시행 2017.10.19.)
- 보험업법(법률 제15414호, 시행 2018.8.22)
-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5300호, 시행 2018.6.27)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18호, 시행 2018.3.2.)
- 건축법(법률 제15307호, 시행 2018.6.27)
-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 시행 2018.8.10.)
- 교통안전법(법률 제15726호, 시행 2018.8.14)
- 선박법(법률 제14476호, 시행 2017.3.28)
- 선박안전법(법률 제15002호, 시행 2018.5.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87호, 시행 2018.5.1)
- 민법(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2.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44호, 시행 2018.4.17)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44호, 시행 2018.4.17)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6.27)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시행 2017.7.26)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45호, 시행 2018.4.3)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4881호, 2013.7.10)



제3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소방시설법의 제정 및 구성

제2장 총칙

제3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4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6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7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 칙

제10장 부 칙

<부록1>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부록2>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부록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1

소방시설법의 제정 및 구성

소방
시설법의
제정 및
구성학습
목표

- 01 소방시설법의 목적 및 제정 배경 이해
- 02 소방시설법의 구성내용 및 시행사항 이해
- 03 소방시설법령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이해

핵심
내용

- 01 소방시설법의 목적
- 02 소방시설법의 제정 배경
- 03 소방시설법의 구성내용
- 04 소방시설법의 시행사항
- 0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근거
- 0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등
- 07 소방시설법시행규칙의 개정연혁
- 08 소방시설법시행규칙의 개정 주요내용

제1절 소방시설법의 제정 및 구성

1. 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소방과 관련한 안전성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법이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는 화재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유지·관리토록 하는 법률상의 근거를 둬서 화재발생시 설치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정상 작동토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체적으로 화재의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용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안전 확보와 검증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위험정도를 기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적인 요인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두어 설치된 소방시설이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화재로부터 안전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2. 제정 배경

이 법의 제정 배경은 먼저 소방법의 분법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8년에 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공사업 등 소방관련업에 관한 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 분야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기타 여러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제정 이후 27차례나 개정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 대응적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체계상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종전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⁶²⁾으로 분법하고, 종전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3. 5. 29.)하게 되었으며 2016년 법의 명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로 변경하여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함께 규정하게 되었다.

3. 법의 구성내용 및 시행

이 법 또한 대부분 법률의 그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은 총칙규정, 본칙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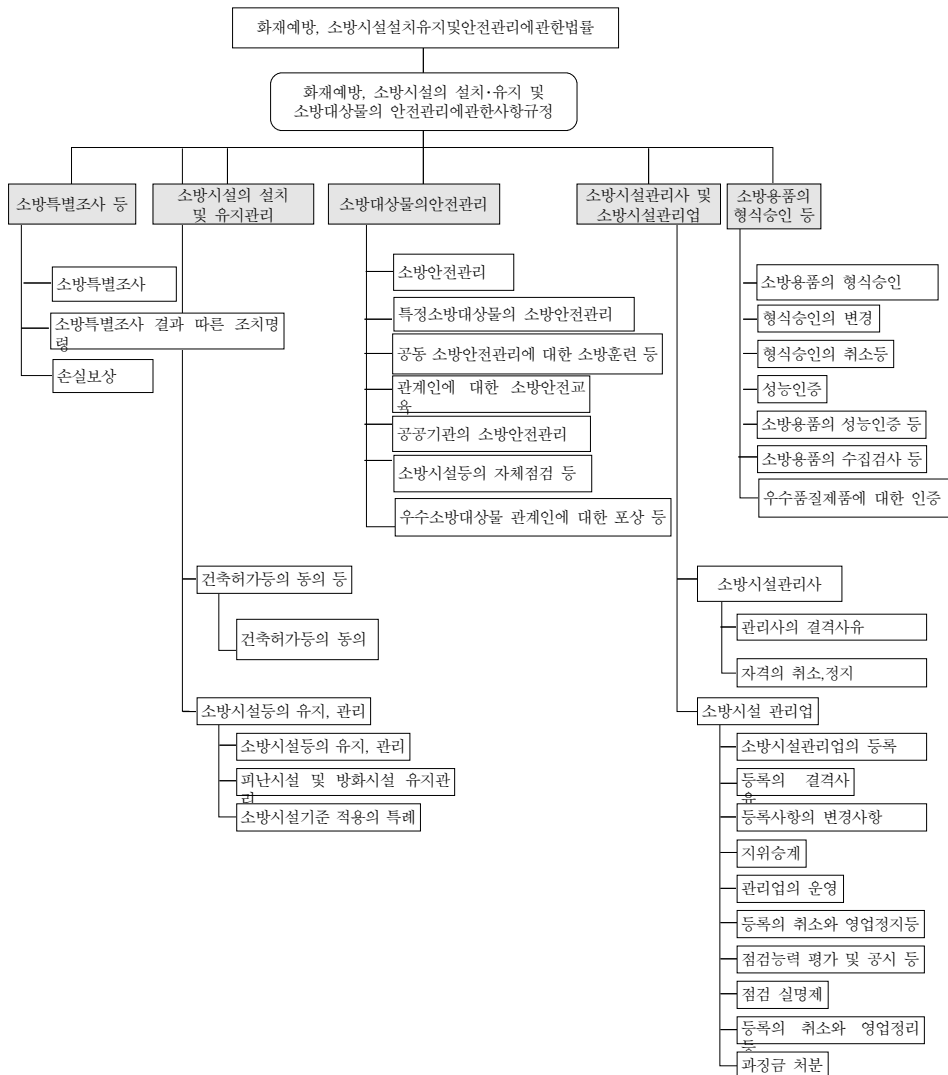
이 법률은 기존 소방법을 분법하면서 기존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2장(화재의 예방)과 제4장(소방시설 등의 기준 및 점검 등) 및 제5장(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에 규정된 28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4개의 조문 신설 및 9개 조문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며, 전문 8장 본칙 47조 및 벌칙 6조, 부칙 6조로 구성되었다. 전체 내용은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형식승인 등)와 건축허가등의 등 소방시설의

62)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시장의 감독권인 소방특별조사 등에 대한 사항과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제도 및 소방시설유지관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은 2003년 5월 29일에 법률 제6895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2004년 5월 30일이다.

[그림 3-1] 소방시설법의 구성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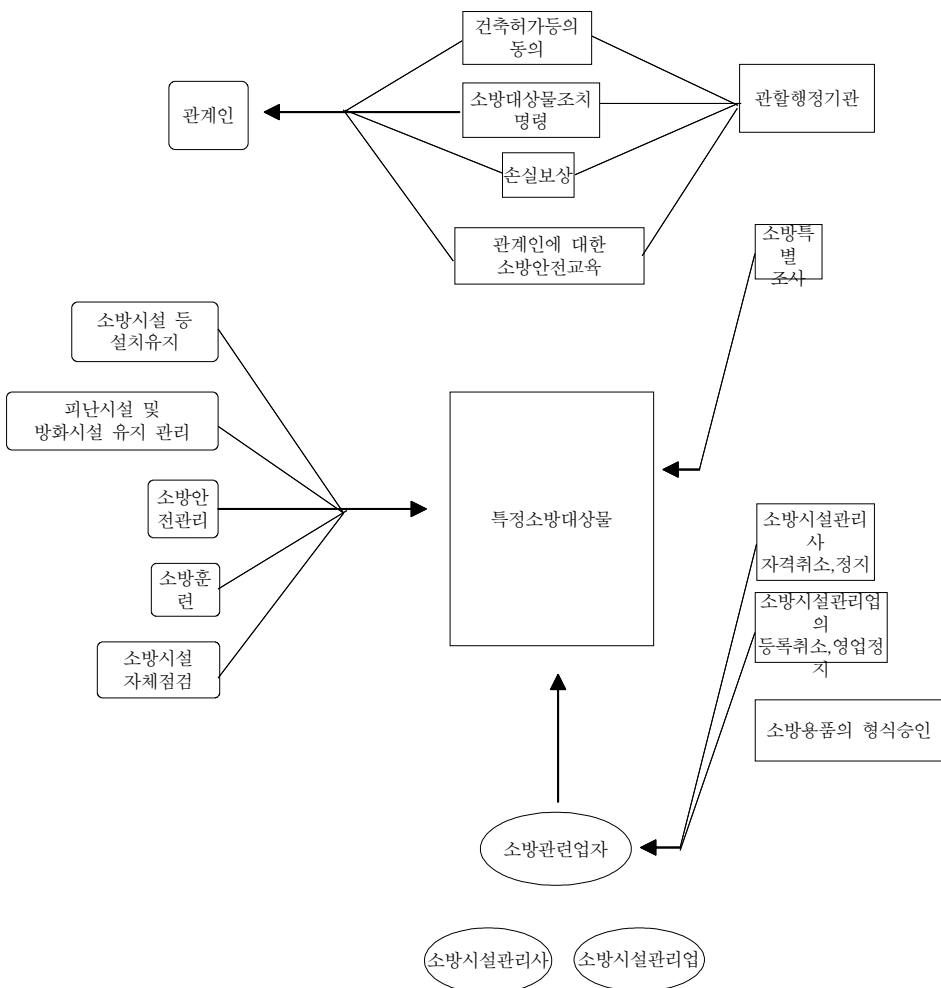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등

이 법은 전체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 대한 의무규정과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감독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3주체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도록 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3-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등 관계도



제2절 소방시설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1.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표 3-1] 소방시설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소방 시설법	29차 개정	2018. 3. 2. (제15419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8차 개정	2017. 12. 26. (제15303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함
	27차 개정	2017. 12. 26. (제15300호)	•[타법개정 : 소방기본법]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강화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비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강화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6차 개정	2018. 3. 27. (제15533호)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고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5차 개정	2018. 3. 2. (제15419호)	•「항공법」의 폐지·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24차 개정	2017. 7. 26. (제14839호)	•부칙개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23차 개정	2016. 12. 27. (제14476호)	•[타법개정 : 지방세법]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체납처분의 중지예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22차 개정	2016. 1. 27. (제13917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제9조제1항 후단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제45조제7항)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제25조제2항)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21차 개정	2016. 1. 19. (제13805호)	•[타법개정 : 주택법]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조합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형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 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20차 개정	2015. 7. 24. (제13439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운영 근거를 신설함(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제20조의2)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결격사유 조정함(제27조 및 제30조) •소방특별조사 결과 내린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이하므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조정함(제48조의2제1호, 현행 제49조제1호 삭제)
	19차 개정	2015. 1. 20.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의 명칭을 「화재예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제13062호)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변경함(제1조) • 화재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과 국민안전처장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 건축물의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제1항)
	18차 개정	2014. 12. 30. (제12939호)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제9조의3,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신설, 제13조제2항,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 현행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제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현행 제53조제1항제3호의2·제4호 삭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근무자·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제20조제6항제1호, 안 제21조의2 및 제5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처벌근거를 신설함(제20조제12항·제13항 신설, 안 제48조의2제1호)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45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기준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17차 개정	2014. 11. 19. (제12844호)	• [타법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제9조제1항 후단 신설)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제45조제7항)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제25조제2항)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16차 개정	2013. 8. 6. (제11998호)	•[타법개정 : 지방세법]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지방세외수입금 채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채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채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채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5차 개정	2014. 1. 7. (제12207호)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허가 관청이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1항)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는 공사 중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제20조제3항, 제6항)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면 되도록 함(제33조제3항)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제42조제1항)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며,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2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1호)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44조)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5조제7항 및 제50조제11호 신설)
14차 개정	2013. 3. 23. (제11690호)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13차 개정	2011. 8. 4. (제11037호)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12차 개정	2010. 3. 31. (제10219호)	•[타법개정 : 지방세법]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1차 개정	2010. 4. 12. (제10250호)	•[타법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회 설치(법 제6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법 제12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법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법 제19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도입(법 제24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책임(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0차 개정	2008. 12. 26. (제9199호)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9차 개정	2008. 6. 5. (제9094호)	•[타법개정 : 소방산업기술법]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공개하여 소방사업자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하여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소방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8차 개정	2008. 6. 5. (제9093호)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0조) -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방염처리업자가 허위시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3조제2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의2 신설)
	7차 개정	2008. 3. 21. (제8974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6차 개정	2008. 2. 29. (제8852호)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5차 개정	2006. 3. 24. (제7906호)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법 제2조제1항)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법 제8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법 제12조제1항)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제1항)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4차 개정	2006. 3. 24. (제7903호)	•지하구는 전력·통신케이블·초고속 광통신망 및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간 망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및 관리하도록 함
	3차 개정	2006. 9. 22. (제7983호)	•방염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염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2차 개정	2005. 8. 4. (제7661호)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자 참여하에 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도록 함
	1차 개정	2005. 3. 31. (제7428호)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채권자협회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제정	2003. 5. 29. (제6895호)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소방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게을리 하거나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34조제1항)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행정자치부장관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

1

소방
시설법의
개정 및
구성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소방시설 법시행령	52차 개정	2018. 8. 28. (제29122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19호, 2018.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51차 개정	2018. 6. 26. (제28996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50차 개정	2018. 1. 16. (제28583호)	[타법 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49차 개정	2017. 8. 16.(제28243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48차 개정	2017. 7. 26. (제28216호)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47차 개정	2017. 5. 29. (제28074호)	[타법개정 : 정신보건법시행령]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46차 개정	2017. 1. 26. (제27810호)	-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함 -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의무화
	45차 개정	2017. 1. 6. (제27767호)	[타법개정 : 광산보안법 시행령]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44차 개정	2016. 12. 30. (제27751호)	[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기준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준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설정하도록 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도록 함 -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도록 함
	43차 개정	2016. 8. 2. (제27427호)	•[타법개정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연도별 한국수어 발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제2조)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제4조)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0조)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제11조)
	42차 개정	2016. 6. 30. (제27299호)	•[타법 개정 :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41차 개정	2016. 1. 19. (제26916호)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제7조의6 신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제24조의2 신설)
	40차 개정	2016. 1. 19. (제26916호)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항 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 함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39차 개정	2015. 6. 30. (제26370호)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조치명령 등의 연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포함되도록 함
	38차 개정	2015. 7. 24. (제26438호)	•[타법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37차 개정	2015. 6. 30. (제26370호)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조치명령 등의 연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36차 개정	2015. 1. 6. (제26033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기준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35차 개정	2015. 1. 6. (제26033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기준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34차 개정	2014. 11. 19.(제25753호)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 함
	33차 개정	2014. 7. 7. (제25444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은 일정한 경우에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하는 소방시설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에 해당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하는 소방 관련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32차 개정	2013. 12. 30.(제25050호)	•[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1차 개정	2013. 11. 20.(제24864호)	•[타법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기준을 달리하도록 함
	30차 개정	2013. 1. 9. (제24304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9차 개정	2013. 3. 23. (제24417호)	•[타법개정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8차	2013. 1. 9.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개정	(제24304호)	- 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 소방대상물의 방염 기준 강화(안 제19조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별표 2) -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선(안 별표 5)
	27차 개정	2012. 9. 14. (제24100호)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26차 개정	2012. 5. 1. (제23759호)	[타법개정 : 경비업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 함
	25차 개정	2012. 1. 31. (제23571호)	-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도록 함
	24차 개정	2011. 12. 8. (제23356호)	[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23차 개정	2011. 10. 28. (제23272호)	-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22차	2011. 11. 23.	[타법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개정	(제23314호)	- 정] 전문과목 명칭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수련연도 변경제도 개선(안 제5조) •수련병원 지정 등 업무의 위탁 관련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1조)
	21차 개정	2011. 4. 6. (제22880호)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20차 개정	2010. 12. 29. (제22560호)	•[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19차 개정	2010. 12. 31. (제22605호)	•[타법개정 : 전과법 시행령]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제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8차 개정	2010. 9. 10. (제22375호)	•미세한 물 입자를 분무하여 소화하는 미분무(微噴霧) 소화설비를 소화설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기격납고, 목조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성능이 유사한 소화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7차 개정	2010. 5. 4. (제22151호)	•[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16차 개정	2009. 2. 6. (제21318호)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 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5차 개정	2010. 2. 4. (제22010호)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차 개정	2010. 1. 27. (제22003호)	•[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운영(영 제12조)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13차 개정	2009. 2. 6. (제21318호)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 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차 개정	2008. 12. 3. (제21146호)	•[타법개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영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영 제5조 및 제6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영 제8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영 제10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영 제19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등(영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11차 개정	2008. 2. 29. (제20732호)	•[타법개정 :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경호실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실로 이체하고, 대통령실장이 경호처장에게 3급 이하 5급 이상의 전보권, 4급 및 5급의 임용제청권,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차 개정	2008. 2. 15. (제20610호)	•가. 방염처리 대상의 개선(영 제19조제2호)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영 별표 4)
	9차 개정	2007. 9. 10. (제20258호)	•[타법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8차 개정	2007. 6. 28. (제20120호)	•[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7차 개정	2007. 3. 23. (제19954호)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의 종류(영 제2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영 제4조 내지 제8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영 제9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영 제18조)
	6차 개정	2006. 12. 7. (제19748호)	•[타법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비용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자금 지원의 범위·절차(영 제4조)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영 제12조)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영 제16조제1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영 제17조 및 별표 2 제5호)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영 제19조 및 별표 3)
	5차 개정	2006. 10. 27. (제19717호)	•[타법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비용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자금 지원의 범위·절차(영 제4조)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영 제12조)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영 제16조제1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영 제17조 및 별표 2 제5호)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영 제19조 및 별표 3)
	4차 개정	2006. 10. 26. (제19714호)	•[타법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영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광고물(영 제11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영 제20조)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영 제2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품의 상호·등급 등의 표시 방법(영 제27조)
	3차 개정	2005. 11. 11. (제19128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할 학교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
	2차 개정	2006. 5. 29. (제19488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 개선(영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개선(영 대통령령 제18404호 부칙 제2조)
	1차 개정	2005. 7. 27. (제18978호)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시행령]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시민식품 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제정	2004. 5. 29. (제184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 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7조)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방송용 송·수신탑 등으로 정함(영 제12조제1항).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비상조명등·비상구 등으로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범위를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5)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펌프자동차, 가스누설경보기 등으로 정함(영 제37조)



3.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26차 개정	2018. 9. 5. (제72호)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시점을 명확하게 함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 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25차 개정	2017. 7. 26. (제2호)	•[타법개정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24차 개정	2017. 2. 10. (제1369호)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안 제14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습 및 평가 중심으로 조정(안 제32조 및 별표 5)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34조 및 제35조)
	23차 개정	2016. 1. 26. (제1250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2차 개정	2016. 1. 27. (제1247호)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21차 개정	2016. 1. 26. (제1250호)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차 개정	2015. 7. 16. (제1176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 이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 피난계획 수립·시행의 절차 및 조치명령 등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9차 개정	2015. 1. 9. (제1130호)	-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공포, 2015. 1.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및 실무교육 기준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소방서장 등에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8차 개정	2014. 7. 8. (제77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자위소방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위소방대의 편성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차 개정	2014. 11. 19. (제1105호)	• [타법개정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16차 개정	2014. 7. 8.(제77호)	•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안 제 14조의2 신설)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방식 변경(안 제19조제1항 신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방식 개선(안 제36조) •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 추가(안 별표 1)
	15차 개정	2013. 4. 16. (제6호)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 중 단란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장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차 개정	2013. 3. 23.	• [타법개정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제3호)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지원 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13차 개정	2012. 2. 3. (제282호)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 제3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 제2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 제1항, 안 별표 2 신설)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3 신설) 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시험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12차 개정	2011. 3. 31. (제207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 반환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시수수료 등의 전자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방염처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시·도지사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소방서장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보고의무 위반 시 현재 과태료와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1차 개정	2011. 3. 31. (제207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 반환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시수수료 등의 전자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방염처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시·도지사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소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방서장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보고의무 위반 시 현재 과태료와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0차 개정	2010. 9. 10. (제160호)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 동의요구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차 개정	2010. 1. 15. (제130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우수인력에게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방화관리자 등이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교육비의 반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8차 개정	2009. 7. 3. (제91호)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7차 개정	2009. 6. 5. (제87호)	•양수 또는 압류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안내를 받은 날부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차 개정	2008. 1. 24. (제4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첨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단면도 등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시에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도면의 추가 작성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방염처리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5차 개정	2007. 12. 13. (제407호)	•[타법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4차 개정	2007. 3. 23. (제379호)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제5조) •피난안내도 비치 장소 등(제1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등(제13조 및 제14조)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소방관서와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제8조 및 제25조)
	3차 개정	2006. 11. 29. (제357호)	•수동식소화기의 점검은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을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차 개정	2006. 9. 7. (제345호)	•[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물고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1차 개정	2005. 12. 21. (제309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상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정밀점검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점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	2004. 7. 7. (제240호)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제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도록 함(제2조제1항) •건축물 등의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제4조)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신고 및 완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방화관리자의 선임기간을 정함(제14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법령 구분	개정 회차	공포 일자	개정 내용
			실시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연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

자료 :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소방시설법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문제
01

1. 소방시설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은?

- ① 재난으로부터 안전 이라는 목적 달성
- ② 방재로부터 안전 이라는 목적 달성
- ③ 재해로부터 안전 이라는 목적 달성
- ④ 화재로부터 안전 이라는 목적 달성

답

정답 : ④

해설 : 소방시설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로부터 안전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문제
02

2. 현재의 소방시설법이 최초 제정 당시의 정확한 법률명칭에 해당하는 내용은?

-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③ 소방시설법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법

답

정답 : ①

해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3. 5. 29.)한 후 2016년도에 법의 명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로 변경하면서 소방시설 외에 화재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게 되었다.

문제
03

3. 다음 중 소방시설법의 29차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은?

- ① 방화관리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② 방화관리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③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④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답

정답 : ④

해설 : 소방시설법의 29차 개정(2018. 3. 2.) 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총칙

총칙

학습 목표	01 소방시설법의 목적과 수단의 이해 02 소방시설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이해 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이해
핵심 내용	01 소방시설법의 목적 02 소방시설법의 수단 03 소방시설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04 소방시설의 종류 05 소방시설 등의 종류 06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0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08 소방시설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절 목 적

1. 의 의

법령의 총칙은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률 본칙의 앞부분에 두며, 규정하는 내용으로서는 목적규정·용어의 정의규정·해석규정·적용범위 등이 규정되고 이 외에 이념규정이나 책무규정 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들을 총칙부분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규정과 이 법 전체에서 법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및 이 법과 연관이 있는 소방관련법 중 안전관리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과 수단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이것은 제명(題名)과 함께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의미 및 존재이유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규적 해석의 기능을 지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수단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이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목적규정의 기능

가. 법률의 합헌성 확보

이 법의 목적규정은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근본취지가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이라는 헌법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이 법 이하의 법률은 전체적으로 헌법의 유보 하에 있는 합헌성이 담보되어 있는 법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합헌성에 근거한 본 조의 목적규정은 그 목적인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유보된 법률

본 조의 목적규정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규정으로서 이는 동시에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방법의 적정

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다.

특히, 본 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⁶³⁾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법률임을 표현하고 있다.

다. 법규 해석의 기능

본 조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률규정의 의미와 존재이유를 표현하고 있어 이하 이 법의 규정을 운용·해석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표현

목적규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단의 내용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3) 헌법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 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 의

정의규정이란 법률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당해 법률에서 쓰이는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조의 정의규정은 이하 법률의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한 곳에서 설명하여 뉘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용어의 정의 [시행령 별표 1]

가. 소방시설(시행령 제3조 관련)

■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소화기구

2

총칙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다)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

마) 분말자동소화장치

바) 교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등

가) 스프링클러설비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물 분무 소화설비

나) 미분무소화설비

다) 포소화설비

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마)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사) 분말소화설비

아) 강화액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단독경보형 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

가) 비상벨설비



나)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피난기구

가) 피난사다리

나) 구조대

다) 완강기

라)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가) 방열복

나) 공기호흡기

다) 인공소생기

3) 유도등

가) 피난유도선

나) 피난구유도등

다) 통로유도등

라) 객석유도등

마)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2

총칙

■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
음 각 목의 것

- 1) 제연설비
- 2) 연결송수관설비
- 3) 연결살수설비
- 4) 비상콘센트설비
- 5) 무선통신보조설비
- 6)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일반인 및 자체의 자동체계에 의하여 동작토록 되어 있으나, 소화활동설비는 관계인 및 일반인 사용목적이 아니라 관설 소방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방시설이란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나.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별표 2)

“소방대상물⁶⁴⁾”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하며, 이러한 소방대상물 중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새로이 개념을 정립하였다. 본 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존 소방법에 있어서는“특수장소”라는 법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64) 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화재의 위험정도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적정의 소방시설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일 규모의 소방대상물인 경우 사용자와 사용 방식 등에 따라 화재의 위험정도가 다를 수 있는 바, 소방대상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위험정도 등을 구분하며 그에 따른 적정의 소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라 적정의 소방시설을 적용 하고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30개 용도별 구분)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총칙

가.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타. 삭제 <2013.1.9.>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총칙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 가목]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2

라.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총칙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갇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갇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

2

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총칙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라.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제6조)

-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진, 송수구, 관창(管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정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마. 국가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없으나 이 법 및 소방관련 법령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이라 함은 각종 소방시설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 소방법에 있어서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종전 소방법에서는 기술기준규칙을 법령화함으로서 개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급변하는 소방기술을 규정하기에는 그 경직성과 비신축성 등의 문제가 발생 하였던 바, 종전 소방법을 분법 하면서 기술기준규칙을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세부 안전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행정안전부령의 고시로 하도록 함으로서 급변하는 소방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용어의 정의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용어의 정의와 타법의 준용

일반적으로 행정관련 법령은 단일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법률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여러 관련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본 조에서도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타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토록 함으로서 입법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본 조 제2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된 대상인 건축물과 관련이 깊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토록 함으로서 입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입법권자의 입법공백으로 인한 사항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칙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 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기존 법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피난로 등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요양병원의 허가·화재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안전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가. 수립시기

국가는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구성에 관한 사항
-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다. 계획의 통보

- 1) 소방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2) 관계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가 있으며, 이 법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의 포괄적인 개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나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달리 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입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입법상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문제
01

1.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 ① 소화 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소화설비 ③ 경보설비 ④ 피난설비

답

정답 : ④

해설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 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02

2. 무창층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 ①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내일 것
-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답

정답 : ②

해설 :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문제
03

총칙

3. 국가는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몇 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답

정답 : ④

해설 : 국가는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습 목표

- 01 소방특별조사의 법적근거의 이해
- 02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의 이해
- 0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항목의 이해
- 04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이해

핵심 내용

- 01 소방특별조사의 법적근거
- 02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0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04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05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 06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 및 조사결과서 작성

제1절 소방특별조사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 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최근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 시 소방특별조사를 빌미로 화재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바,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시에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방특별조사,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 등 소방행정기관의 권한행사로 인하여 관계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인 바, 그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와 공정성이 요구된다.

소방특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소방특별조사의 법적근거

가. 법 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명 령

대통령령 : 이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소방관련 법

이 법 제46조(감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31조 (감독),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조사 등)

3. 소방특별조사의 수단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이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소방상 관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명·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 1) 명령의 주체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2) 명령의 성격 : 행정상 작위하명
- 3) 명령의 객체 : 관계인

나.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특별조사란 행정기관이 그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사업이나 영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상 필요한 때 관계 공무원이 관계지역에 직접 출입하여 각종 소방관련 사항을 검사·질문·파악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소방행정 활동을 말한다.

통상의 소방특별조사가 함은 사실상 출입검사를 소방특별조사가 함이 일반적이며 이는 소방특별조사의 근거인 이 법 제4조의 각 항들도 출입검사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

1) 소방특별조사의 주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관계공무원이며 관계공무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정한 공무원은 특별조사 업무를 행하는 사실적 주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사업무의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 할 수 있다.

2) 소방특별조사의 성격

소방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에게 명령을 할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명령에 의함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정의 주체(관계공무원)가 직접(통보 없이) 국민의 신체·재산(특수장소 및 관계인)에 실력(검사, 조사, 관계장부열람 등)을 가하여 이 법상 필요한 목적(화재예방, 경계)을 실현하는 행위인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격이 있다. 이외에도 출입검사 시 관계인에게 현장교육 등을 하는 행정지도·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인 행정조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하명, 현장에서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의 사실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활동이다.

3) 소방특별조사의 범위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계지역 :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⁶⁵⁾

65) 소방기본법 제2조 제2호

4) 출입검사의 제한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5) 소방특별조사자의 의무

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의무

이때의 증표는 출입검사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절차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출입검사 행위라도 유효한 행위가 된다. 하지만 증표 제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계인이 출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방해금지의 의무

다) 출입검사 수행 시 업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누설금지 의무

라) 사전통보의 의무(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

6) 벌칙

가) 관계인의 출입 특별조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법(벌칙) 제50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폭행·강압·협박 등에 의한 출입검사의 거부 : 형법 제136조⁶⁶⁾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7) 기타사항

소방특별조사를 목적으로 관계장소에 출입 시는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외에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이 법상 규정은 없지만 특별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적절한 소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 질 문

질문은 본 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의 주체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행위로서 특별조사를 위한

66)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충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 1) 질문권의 주체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관계공무원
- 2) 질문의 성격 : 소방특별조사권자의 질문자체는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질문에 대답하여야 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불성실한 답변 혹은 질문의 회피 등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없다할 것이다.
- 3) 질문의 객체 :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외의 사용인 대리인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의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 4) 질문의 범위 :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에 관련 있는 사항전반에 대해 가능

4.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시행령 제7조)

소방특별조사는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과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가.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다.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라.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마.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시행령 제7조의2)

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2) 소방기술사
- 3) 소방시설관리사
-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방특별조사위원의 제척 등(시행령 제7조의3)

가. 소방특별조사위원의 제척(除斥)

-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해당 안전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



사를 한 경우

-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나. 소방특별조사위원의 기피(忌避)

-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소방특별조사위원의 회피(回避)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7. 소방특별조사위원의 해임·해촉(시행령 제7조의4)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라.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마.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8.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의 편성·운영(시행령 제7조의6)

가. 조사단의 구성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나. 조사단의 임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1) 소방공무원
-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시행령 제8조)

가.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소방특별조사 방법(시행령 제9조)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
-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절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은 종전 소방법의 제정(제정소방법 제5조)때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소방특별조사의 장에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치명령은 당해 소방대상물에 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소방상의 장애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본 조에 근거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하명의 행정형식을 통하여 배제토록 함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인명의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하고 있다.

2. 특 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은 그 성격상 여타의 규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권(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내재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 명령의 요건에 있어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필요하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이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여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주었다는 점과

둘째 : 일차적으로 법률상 요건징표에 해당한다는 포섭(包攝)⁶⁷⁾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결정, 선택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령의 문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자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법원칙에 부합 되도록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며,

셋째 : 이러한 해석 및 적용 또한 그 나름의 한계(이 법 제5조에 주어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판단여지에 대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넷째 : 본 조는 실제 적용 시에 부담을 받는 행정객체의 수인(受忍)의 정도에서 볼 때 여타의 어떠한 규정보다도 그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명령의 정도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의 한계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다섯째 : 본 조는 법령에 위법한 소방대상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인한 이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가. 명령의 요건

본 조의 명령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무엇이 법인가(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 즉 요건규정-불확정개념에 대한 확립)를 판단한 후 2차적으로 명령을 발하는 효과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요건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행정주체에게 의존하고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후에 관계되는 행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형식을 행정상 기속재량 또는 법규재량의 성격이라고 한다.

1) 요건규정

본 조에 근거한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등의 발효요건은 첫째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한 때, 둘째 : 소방대상물에

67) 포섭(包攝) : 어떤 개념이 보다 일반적인 개념에 포괄되는 종속 관계를 이룸
- 화재예방을 위하여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식하였음을 말함.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때의 필요성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개념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닌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어서 그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유를 인정하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불확정 개념은 객관적이고 경험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은 그 성질상 법해석권자(본 조의 경우 명령권자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당연히 수반되는 바, 일정한 범위에서 불확정 개념의 해석 및 적용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으로 존중된다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필요성의 정도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근거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조에 있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성 및 예상성”은 일반 추상적인 위험성으로는 부족하고 명령권자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축적된 경험·전문지식 및 객관적 판단에 의한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이고도 구체적 개연성 있는 위험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2) 효과규정

위에서 언급한 요건규정이 일차적으로 성립이 되었을 경우에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하의 규정에 따른 명령권의 발동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즉, 요건규정이 성립되었을 경우“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령의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마지막 규정인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때에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재량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속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법문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응 행정주체에게 본 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재량권(결정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만, 위의 요건규정에 합치되는 위험성 및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시 화재예방 상 필요성이 있음이 경험칙 상 또는 객관적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이는 소방상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한단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본 조의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을 행하여 소방상 장애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가) 소방상의 장애가 계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고

나) 이 법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음은 그 또한 재량권의 판단을 그르친(남용)것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행정상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는 판단의 여지를 두지 않는 내용적으로 기속 행위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건규정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가 판단되어서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이 되어지면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을 행하도록(하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명령의 내용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라 함은 화재 예방상 또는 화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다. 명령권 행사에 있어서 한계

이 법 제5조에서 규정에 부합되는 소방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그 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법 문구에 의한 한계 외에 또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의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조리상의 한계라고 한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의 한계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이 당연히 행정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하며, 이에는

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상의 한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 제5조에 근거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에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소방대상물의 조치·이전·제거·공사의 정지·중지 또는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첫째 :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화재예방 및 인명 및 재산에의 위험성 배제)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둘째 : 그 명령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관계인에게 최소한의 침해가 가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셋째 : 화재의 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에의 위험제거라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하

여야 한다(협회의 비례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넷째 : 이외에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화재의 예방과 인명에의 위험제거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관계인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다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보충성의 원칙)

※ 이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⁶⁸⁾

나) 평등의 원칙상의 한계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재량권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의 법리의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예컨대 어느 지역 어느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장이 화재의 발생시 인명의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어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을 발하였다가 가정하였을 시 동종·동류의 다른 소방대상물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소방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동일한 명령을 발할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법 제6조의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제약

이 법 제6조는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에 있어 필요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협의 등 손실보상의 절차적인 문제가 뒤따름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이 내재되어 있다.

4.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적용

가.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한 적용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등이 소방관련법령⁶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68) 헌법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방관계법 외의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소방대상물은 사실상 여러 관련 법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가스·전기·소방 등) 각각의 개별법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법의 적용 및 행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개념에 있어서는 소방관련 법규만을 구체적으로 적용받는 특정의 개념이 아닌 여타의 여러 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물 즉, 하나의 대상물의 개념이 강하다 할 것이다.

이는 화재의 개념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는 비단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 사안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대상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 이의 예방 진압 등의 차원에서도 이 법령의 규정에 한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등이 아닌 전체적인 소방대상물 (즉, 여타의 법규의 적용을 받는 사실상의 대상물)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본 조의 화재의 예방상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이라 함은 소방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화재의 예방상 또는 화재로 인한 인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권자가 조치·이전 등 및 공사의 정지·중지 등의 용어를 선택한 것은 소방관련 시설 또는 소방관련 설비에만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것임을 법의 논리해석상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은 이 법령과 관련된 사항 외에 타법 (건축, 전기, 가스 관계법 등)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요건이 구비되면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소방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있어 특정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 법 제5조와 관련한 규정 외에도 다른 이 법의 조항을 적용(적법한 소방시설 등은 예외로 함)함으로서도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 법 제5조의 규정은 두고 있는 입법권자의 취지는 명령요건의 대상이 소방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위치·구조·설비 등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하여도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타법에 있어 적법한 사항에 대한 적용

적법 적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은 한편으로 각각의 개별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맞는 소방대상물인 바, 상황 (주변 소방환경 또는 건축물의 경우 개축·대수선·증축 등)의 변화가 없는 한 안전한 소방대상물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69)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수 있다. 예컨대, 가스설비와 관련하여 가스 관련법상 적법·적정한 설비라면 안전한 가스설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역설적으로 그 필요성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등에 대한 본조에 근거한 명령권의 발동은 소방 환경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2) 타법에 불법한 사항에 대한 본 조의 적용

화재예방상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대상물 위치·구조·설비가 이 법 사항이 아닌 전기·가스 등 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 본 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다. 전기·가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이 법령 사항에 있어 본 조의 적용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있어 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 또는 이 법령 적법한 경우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1) 위치·구조·설비 등이 이 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이 법령상 불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은 이 법 제5조의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조항이 아닌 다른 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임으로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우선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2) 위치 구조 설비 등이 이 법령에 적법할 경우

이 법령에 적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한 본 조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법상 적법·적정한 소방대상물은 한편으로는 화재예방상 또는 인명의 위해상안전한 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을 이 법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화재의 예방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소방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 법령에 적법·적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은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며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대상물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함은 주변 환경의 변화 또는 특별한 정황 등 고도의 개연성과 검증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 조치명령 등의 절차(시행규칙 제12조)

가. 조치명령서 발부

- 1) 발부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2) 발부대상 :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나. 조치명령으로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시 조치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손실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 그 밖의 증명자료를 함께 보관

6. 조치명령 미 이행 사실 등의 공개(시행령 제10조)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미 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 기간이 끝난때 부터 소방청장,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 3) 유선방송
- 4) 반상회보
-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라.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의 의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국가배상이라고도 하며 행정구제의 일종이다. 이러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제도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의 이익이 침해 된 경우의 구제수단인 손실보상 제도가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6조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 등, 즉,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조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이라는 이 법 제5조에 근거한 적법한 행사에 의하여 행정객체(수명자)는 법률이 정하는 외의(기타의 법령에 적법한 소방대상물)재산상의 특별한 희생(화재의 예방 또는 화재로부터 인명보호라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적법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외의 특별한 희생을 법적으로 요구)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상의 전보라 할 수 있다.

2.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과 손실보상

가. 손실보상의 의의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인행위의 위법·적법을 묻지 않고 결과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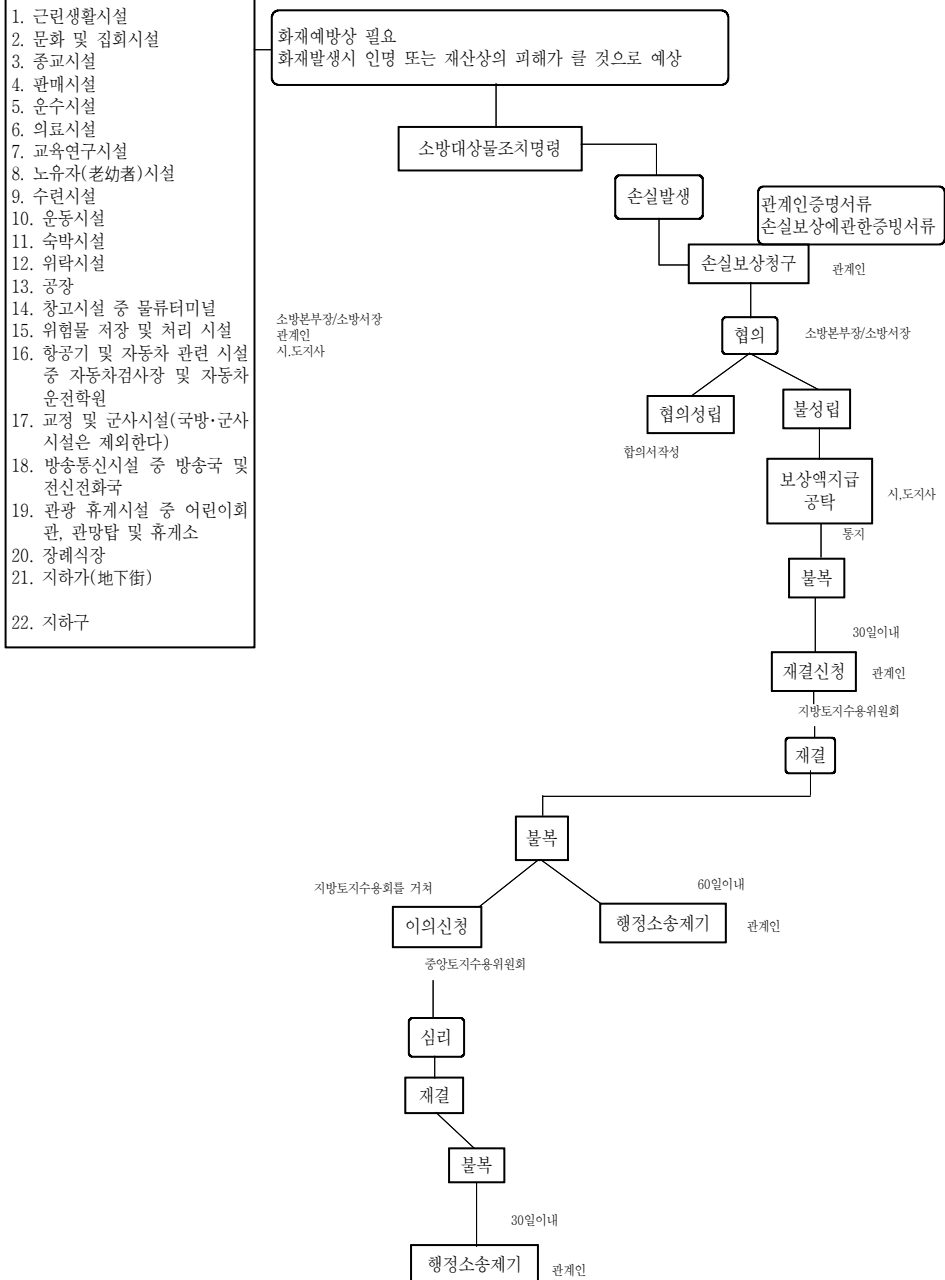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일반법으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나. 손실보상 요건

- 1)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
- 2)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
- 3) 공권력의 행사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과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법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법 제5조에 근거하여 행정객체인 관계인에게 적법·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바(조치·이전 등의 명령) 그 명령으로 인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사회적 제약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넘어서는 부담(손실)이 있는 경우에 보상함을 말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손실을 전보한다는 점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은 포함하지 않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인 보상이란 점에서 일반적으로 또는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과 구별 된다.

다. 손실보상의 절차

[그림 3-3] 손실보상의 절차도

소방
특별
조사 등



1) 손실보상의 청구

가) 청구인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

나) 청구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2) 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 기준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의 협의

가) 협의대상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

나)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 성립 시 조치내용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

다)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 불성립 시 조치내용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4) 신청인의 재결신청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절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 및 조사결과서 작성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2.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10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항의 적합성(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자격의 유효성,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
 - 나.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2.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가.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보고서 보존관리사항 확인

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등

3.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가.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표 및 배치확인서 보관여부 확인

나. 자체점검의 적정성(시설확인 누락여부, 허위점검 여부)

5.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 사용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안전관리 사항의 적합성

8.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적합성 여부

나. 그 밖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조사의 사유 및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1. 피트층, 파이프닥터 등 건축물의 피난보조공간의 안전유지관리 사항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제 관리사항

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③ <삭 제>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소방특별조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특별조사결과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

3. 조치명령 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③ 소방특별조사결과 별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소방특별조사 결과 건축·전기·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의 절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특별조사의 조사내용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항의 적합성(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자격의 유효성, 실무 교육 이수여부 등)
- 2)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나.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1)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보고서 보존관리사항 확인
- 2)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등

다.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 1)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표 및 배치확인서 보관여부 확인
- 2) 자체점검의 적정성(시설확인 누락여부, 허위점검 여부)

마.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바.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 사용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안전관리 사항의 적합성

아.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적합성 여부
- 2) 그 밖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방화시설 등의 조사내용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조사의 사유 및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가. 피트층, 파이프닥터 등 건축물의 피난보조공간의 안전유지관리 사항

나.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제 관리사항

다.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3. 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가.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소방특별조사서 작성 및 처리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가. 소방특별조사결과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

3) 조치명령 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다. 소방특별조사결과 별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다.

마.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소방특별조사 결과 건축·전기·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의 절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다.

-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별지 제1호 서식]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2. 기본 조사사항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피난시설 등	실시()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 위 통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 위 통보내용 중 「조치할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 부터 .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 . 까지 ○○소방서(주소: . . . , 담당자: . . . , 이메일: . . . , 전화번호: . .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併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분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분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 7. 26.>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기신청 대상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조치명령 기간	
	연기기간	
	연기 신청사유	
처리 내용	연기 여부 [] 연기됨 [] 연기 안됨	
	연기가 승인된 경우	승인기간 :
	연기가 불승인 된 경우	사유 :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판·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 7. 26.>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기신청 대상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조치명령 기간	
	연기기간	
	연기 신청사유	
처리 내용	연기 여부 [] 연기됨 [] 연기 안됨	
	연기가 승인된 경우	승인기간 :
	연기가 불승인 된 경우	사유 :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제
01

1.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경우 몇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답

정답 : ④

해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문제
02

2.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소방지휘대장

답

정답 : ④

해설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문제
03

3. 다음 중 소방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 ①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20일 이내
②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10일 이내
③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7일 이내
④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3일 이내

답

정답 : ①

해설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

4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학습
목표

- 01 건축허가등의 동의제도의 이해
- 02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유지·관리제도 이해
- 03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도 이해
- 04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 이해

핵심
내용

- 01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0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 0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04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0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06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방염성능의 검사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



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가·허가 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의 의

이 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주된 수단으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주된 소방대상물인 건축물 등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도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관계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설치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장은 가장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 될 당시부터 적절한 소방시설이 적용·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적인 절차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하 각 소방대상물의 규모별·용도별·수용원인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와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이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물적 요소가 되고 있는 방염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들은 관계인에게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유지 및 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위반 시 각종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본 장

4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의 각종 규제적·명령적 규정들은 대표적인 규제행정부의 일종으로서 대상물 및 인적요소의 통제를 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그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본 장의 규정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이라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담보된다 할 수 있다.

본 장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 1절인 본 절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설계되고 계획되어지는 단계부터 적정 소방시설 등이 적용·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를 미리 담보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된 소방대상물인 건축물에 있어 소방상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각종 소방시설 등이 적정·적법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서 건축물이 완성되어 사용 할 때부터 소방상 안전한 건축물이 되게 함으로서 소방행정의 효율성의 제고와 화재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예방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다.

2. 건축허가 등의 동의의 실익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등의 동의는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설계·계획단계부터 미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들어가야 할 소방시설 등을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음으로 하여

첫째 : 소방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 건축주가 미리 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인지하고 계획토록 함으로서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사전에 이행토록 담보하고 있다.

둘째 : 소방공사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는 한번 시공되고 난 후에 재시공 또는 개·보수가 어려우며,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전에 협의 단계에서 설치되는 각종 소방시설의 적법·적정을 담보함으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 소방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행정장애를 예방

- 사전에 협의·검토 등을 통하여 관계인에게 적정여부를 고지하고 잘못된 점을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잡음으로 인하여 이 법과 관련한 소방행정에 있어 국민 신뢰와 행정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넷째 : 소방시설업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확보

- 소방시설의 계획·설계 등의 단계에서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 및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상의 규정을 둠으로서 소방시설업의 업무수행의 명확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3. 건축허가 등의 동의의 성격

이 법에 근거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다단계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닌 건축허가의 일부분에 속하는 개념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이를 이유로 행정쟁송 등을 제기할 수 없음이 일반적이며,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 관계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

4. 소방관련법과 건축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있어 그 동의대상물이 “건축법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 법과 건축법이 많은 연계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이 법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 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의 행위는 법이 정한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 또는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상 적정·적법하다면 신뢰보호 등의 차원에서 인정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11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1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3)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제4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하여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합격 을 받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의 기관

가. 건축물 등과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1)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나.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다.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⁷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6.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70)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라.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마.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 자격증사본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 설계 계약서 사본 1부

7. 건축허가 등의 동의

가. 동의기간

- 1)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 2) 허가 신청한 건축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 10일

나. 서류보완(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1) 보완요구사유 :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보완요구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3) 보완요구기간 :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보완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미 보완시 조치 : 동의요구서 반려

다. 허가취소 등의 통보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8.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 동의 대상물

-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
-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2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외대상(시행령 제12조 제2항)

-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10. 건축신고 등에 대한 통지

종전의 소방법은 허가에 대한 동의만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⁷¹⁾대상이 아닌 신고⁷²⁾대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건축법상 허가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등은, 건축법상 신고대상(대수선, 용도변경 등)인 관계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새로운 적용 및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행정기관에서 이를 미연에 확인 검토 할 방법이 없어서 관계인이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완료 후에 소방특별조사 시에 관련사항이 적발되어 사후에 각종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등의 소방행정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조 제2항은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 시⁷³⁾에도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건축물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함으로써 비록 신고대상이어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과정은 거치지 않더라도 소방시설 등이 변경 또는 새로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미리 각종 소방시설이 적정·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1) “허가”란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허가청에서 당해 사안의 허가여부에 대하여 검토절차를 행한 후 허가를 함으로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72)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나로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 통지행위로서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73)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 사용승인에 대한동의(법 제7조 제4항)

사용승인이란 관할 관청이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건축법상의 행위⁷⁴⁾이다. 이 법에서는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는 건축허가동의의 그것과는 달리(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74)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법 제7조 제4항)

이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등과 건축신고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3. 건축허가 등의 등에 있어서 문제점

가. 건축허가청에서의 소방시설법 열람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건축행정의 목적은 건축법 제1조 (목적)에서 보듯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허가청은 건축법의 목적이 추구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또는 관심사항으로 하고 있지 건축물의 소방 또는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의 안전이란 부분의 중요성은 간과하기 쉽다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규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등의 절차란 것이 있어 필히 소방서장의 허가등의 등을 득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지침 등이 없는 관계로 건축허가청에서 이 법에 대한 열람의 노력이 없다면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이런 이유로 실무상에 많은 소방행정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허가 등의 등의 성격과 유사한 제도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의 허가 권원이 있는 식품위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신청·신고 시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첨부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있어서와 같이 허가청의 담당자가 소방시설법의 열람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발생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신청(이하 “허가신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4호 생략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 3. 생략

나. 건축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이 법의 영향

이 법령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을 건축법에 의한 허가의 대상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일부 제외) 건축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있어서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11조, 제14조), 건축법과 이 법은 각각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바, 건축법에서의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동의 대상 및 신고대상이 변동될 수 있는 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동의 등은 이 법의 목적에 의해서만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의 변경으로 이 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4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4.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관련한 기타 행정사항

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여부를 회신한 때에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5.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가. 설치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나. 설치의무자 : 주택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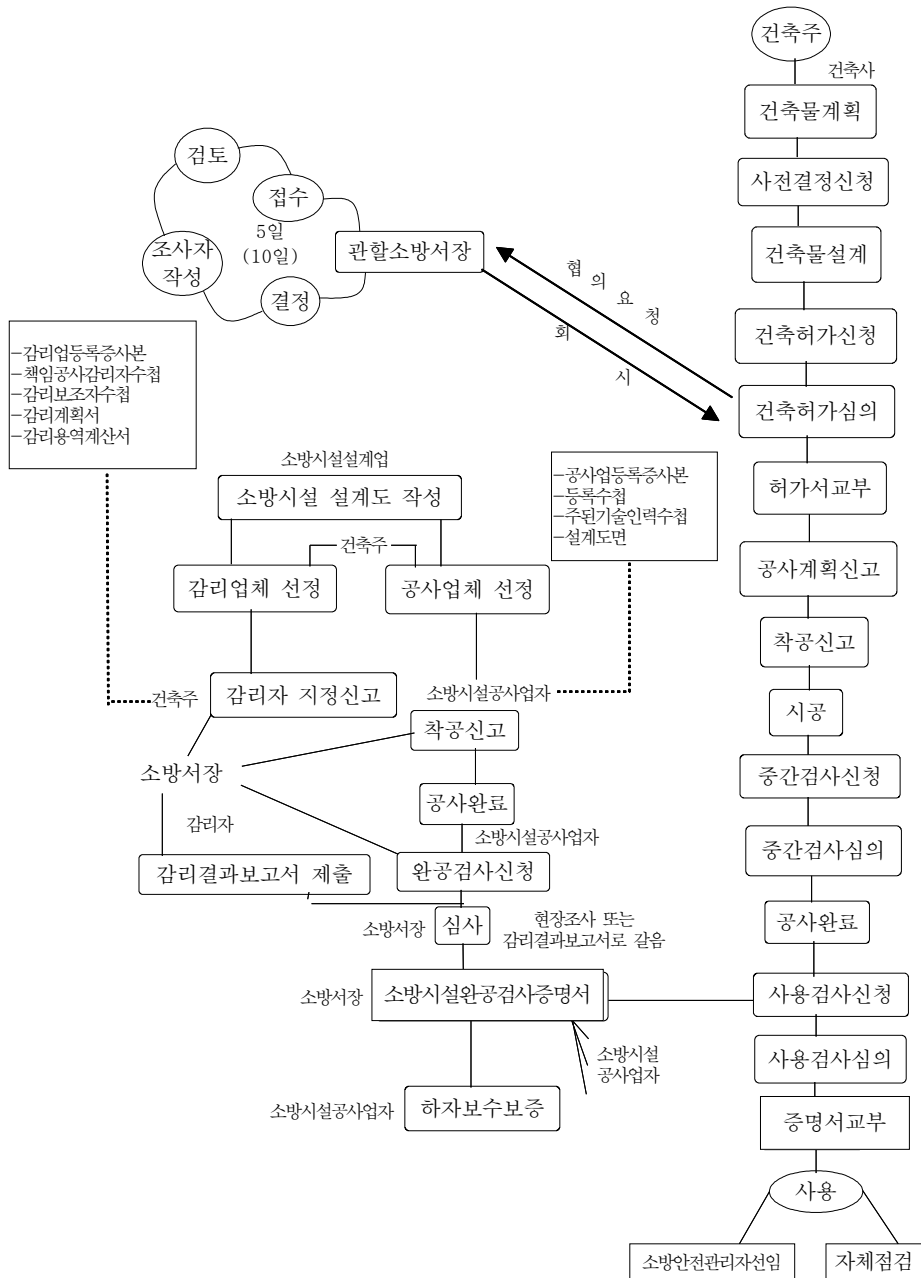
다.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시행령 제13조)

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16.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의 관계

[그림 3-4]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의 관계도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제1절이 특정소방대상물에 각종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규정이라면 본 절은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외에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방대상물에 있어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적정·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본 절은 이러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서 설치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이 법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임으로 관계인에게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이 쉽게 달성될 수 있으며 또한 준수될 수 있다.)하고 있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1. 의 의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립 때부터 적정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등의 소방대상물이 건립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방 관련사항을 관리토록 함으로서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고 있다.

본 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되며 이 법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결정하는 요인, 즉, 화재의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으로 하고 이의 기준에 의하여 화재 위험정도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 중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은 1972년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었다가 1992년 소방시설 적용기준이 지금의 용도분류 형식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가 1999년 화성씨랜드 사건⁷⁵⁾을 계기로 다시 수용인원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방법 개정 시(2001.1.12 법률 제6387호)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각각의 분류방법과 분류번호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코드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도록 신설하였다.

2.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시행령 제15조 별표 4)

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나.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1)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2)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

75) 화성씨랜드 화재사건

- 발생일시 : 1999. 6. 30 (01:30)
- 장 소 :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 청소년 수련의 집
- 피해 : 사망 : 23명, 부상 : 6명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 고

가.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시행령 제15조 별표 5)

■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3) 터널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다) 노유자시설
 -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갇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 2) 주차용 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 4)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측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측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다) 운수시설 중 지하철역사
 -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종교시설
 - 라) 운동시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숙박시설
-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6)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4. 소방시설 등의 종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하며 설치되는 소방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설 세부기준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토록 하고 있다.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9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⁷⁶⁾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나.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시행령 제15조의 2 제2항)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6. 성능위주설계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6)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15조의 3)
(* 신축하는 것만 해당)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 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최근 이법이 개정되면서(2016. 1.27. 기준)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이 고려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하던 내용을 본조로 이전하여 세분화하였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8.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시설에도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적용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3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의 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립 시부터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시 화재의 급속한 확산의 방지 및 내부에 상주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내

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지하층의 구조(건축법 제53조)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피난 및 방화시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여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고, 장애를 배제토록 함으로써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방화시설

건축물에 있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의 규정과 소방관계법의 규정에 있어서 그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의무와 그 피난계단의 기술적인 기준에 대한 많은 규정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소방관계법은 그 설치된 피난계단이 유사시 적정하게 피난에 이용될 수 있도록(상품적치 등의 제거 등) 그 용도상의 장애를 제거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유지에 대한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3. 피난·방화시설의 연혁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법의 영역이 확장된 대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건축물들의 복잡화·고층화로 인해 화재 시 피난장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소방법 개정 시 (2000.1.26. 법률 제6387호) 본 조항을 삽입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기능의 유지·관리의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이 제정된 이 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건축법의 피난·방화에 관한 규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
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생략 -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직통계단의 설치기준·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회전문의 설치기준·헬리포트의 설치기준·방화구획의 설치기준·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방화벽의 구조·건축물의 내장·지하층의 구조·방화문의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의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2. 화재위험작업(시행령 제15조의 4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등을 위한 시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가.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나.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다.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공사규모(시행령 제15조의 5 제2항 별표5의2)

- 가. 소화기 :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현장
- 나.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1) 연면적 3천㎡ 이상 공사작업 현장
 -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인 공사 작업현장
-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1) 연면적 400㎡ 이상 공사 작업현장

4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공사 작업현장
라.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
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1)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공사 작업현장

4. 유사기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제5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 의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본 조는 특정의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의 배제 또는 소급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항이다. 소급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급적용함으로써 관계인에게 주는 부담보다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특정한 조건하에서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된 소방시설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무의미하거나 불합리 할 때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배제토록 함으로서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소방시설 적용기준

헌법 제 13條 제2항은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도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법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을 행위시법주의에 의거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건립 당시(건축허가 당시)를 기준하여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그 시행이전의 관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법률은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며, 기득권 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 및 기존 법질서의 존중 또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한 원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의 적용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신법을 소급 적용시킬 공익적·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법 후단에 있어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득권자가 가지고 있는 법익의 과도한 침해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가. 변경(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⁷⁷⁾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소급적용은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2000.2.18)를 계기로 전력선·전화선·초고속통신망·케이블선·수도관 등 현대사회의 중추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시설물 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토록 하고 있다. 본조에 근거하여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동구의 통합감시체계구축 등이 있다.

- 3)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3. 유사기능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면제라 함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설치하여야 하나 기능의 중복, 불필요한 재산권의 침해 등을 하지 않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배제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제16조 관련) : 시행령 [별표 6]

[표 3-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물분무 등 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5.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6.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7.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8. 연결살수설비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9.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5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5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0.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1.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2.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3.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7. 옥외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8.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9.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증축과 용도변경에 있어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증축에 있어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령 제17조 제1항)

건축물의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의 산정 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는 바, 증축은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화재 등 소방상 위험의 정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이 법령은 원칙적으로는 신축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부분 및 증축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하나 증축되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 신축의 개념을 적용하여 증축되는 건물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 증축은 소방대상물의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바로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성이 전체적으로 변동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법령은 변경된 화재의 위험을 기준하여 전체에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 기존부분에 있어서의 증축 당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을 면제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있어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령 제17조 제2항)

기존의 특수장소가 용도변경 되는 경우 또한 변경된 용도의 성격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변화되었음은 당연하며 그러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은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법 제9조)라는 조항을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령은 이에 대하여도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되, 그 범위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기존부분과 용도변경 부분 전체에 대한 재용도의 분류를 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용도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특례에 대한 고찰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수장소가 용도변경 되는 경우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 전체에....”라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라는 규정을 함으로써 실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되어야 할 소방시설의 적용이 문제 된다 할 것이다.

예컨대, 4층의 근린생활 시설에 2층(300제곱미터) 전체를 교회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당해 층의 면적 즉, 300제곱미터를 기준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첫째 :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유도등이며 기준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2층에 있어서는 옥내소화전은 법적인 소방시설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 300제곱미터의 교회는 종교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건물 전체는 사실상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적용은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항은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여 됨으로서 화재위험이 현저하게 낮아 소방시설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조그만 화재 시 소방시설의 동작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상 또는 법정소방시설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이한 구조 또는 용도로 인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시행령 제18조)

가)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다)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및 소방시설(시행령 별표 7)

[표 3-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및 소방시설

구 분	특 정 소 방 대 상 물	소 방 시 설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 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하기가 어려운 특정 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 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구 분	특 정 소 방 대 상 물	소 방 시 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 소등에 부착된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 비

다.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특례⁷⁸⁾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의 실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의 적용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외에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정 시설설치의 불합리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8) 소화기 및 수계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의 특례 규정

제6절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원회란 일반행정과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판단·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다수의 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직능대표제의 하나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화, 전문지식의 도입, 공정성의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주로 설치되고 있다. 본 장에서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안전기준에 관한사항, 특수공법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여부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어 급변하는 소방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소방산업 기술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의

소방기술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소방상황 또한 환경변화 만큼이나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소방기술발달 또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소방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은 소방기술심의위원회라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



원회를 두어 관련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방기술도입의 길을 열어주고·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행정 기관이 분쟁의 조정 등을 통하여 소방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소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등 기술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기준화 함으로써 소방기술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가. 구성형태: 합의체 기구

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 위원의 임명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소방기술사
-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3) 소방시설관리사
-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

라. 위촉위원의 임기 : 2년(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업무

-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4) 소방시설공사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나)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가. 구성형태 : 합의체기구

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임명 :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소방기술사
-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3) 소방시설관리사
-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라. 위촉위원의 임기 : 2년(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마. 주요업무

-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다) 그 밖에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중앙·지방위원회 기타 운영사항

가. 위원장 및 위원직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위원의 제척
 - 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나)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다)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2) 위원의 기피 :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4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 위원의 회피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라. 확인 및 의견청취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마. 위원의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 수당을 지급

바. 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7절 방염(防炎) 등

방염(防炎)이라 함은 불꽃의 전파를 차단 또는 지연하는 것을 말하며 방염성능이라 하면 특정의 물품이 가지고 있는 방염의 능력을 말한다. 방염제도는 1942년 미국의 나이트클럽 대형화제가 발생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가연성 직물에 대한 규제로 1953년 Flammable Fabric Act가 제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1969년 소방법 개정으로 섬유제품·커튼 등에 대한 방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⁷⁹⁾ 사건을 계기로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로 개정되면서 호텔·고층 건축물에 사용하는 커튼·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규제가 시작되었다. 본 절은 특정소방 대상물의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의 방지를 통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방염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규정을 하고 그 대상에 있어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함으로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특정소방대상물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8절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 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로는 1백65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 화재 원인 : 지하 2층 커피숍에서 유출된 LP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상층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

4

1. 의 의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화재는 그 성질상 급격히 연소·확대하는 성향이 있으며 화재로부터의 인명의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화재의 급격한 연소·확대의 방지는 한편으로 피난시간의 확보 및 진압 또는 구조 가능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물질 또는 불꽃의 급격한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물품에 관한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관한 규정이며, 소방관련법의 경우는 방염에 관한 규정이다.

방염이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에 방염 가공하여 난염성화 하는 것을 말하며, 방염 성능이 있다는 것은 불꽃의 전파는 지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말한다. 이 법은 방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방염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당해 방염대상의 실내장식물·커튼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각종 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의 불연재료와 이 법의 방염

건축법상의 불연재료와 이 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염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하는 목적이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타지 아니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연성이라도 불꽃의 급격한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의 인명의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 하에 규정하고 있는 권원·범위·방식 등이 다름을 볼 수 있다.

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건축법령에 있어서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규정대상은 거실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내부마감에 대하여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서는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하여 방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나. 방 식

건축법에 있어서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구분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하며, 그 시험방식으로는 표면시험·가열시험·부가시험·가스유해시험 등의 시험에 의하여 난연1급의 경우 불연재료, 난연2급의 경우 준불연재료, 난연3급의 경우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령에 있어서의 방염의 규정은 탄화면적·탄화길이·잔염시간·잔신시간·용융시험·내세탁성 등을 거쳐 방염성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19조)

가.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1) 문화 및 집회시설
- (2) 종교시설
-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라.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바.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사. 별표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방염대상물품(시행령 제20조)

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2) 합판이나 목재
-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5. 방염성능 기준(시행령 제20조)

- 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 나.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 다.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 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일 것
- 마.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 밀도는 400 이하일 것

6. 방염제품의 권장(시행령 제20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가. 방염제품의 권장과 행정지도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지도는 현대 행정국가의 기능 확대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을 탄력성 있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상대방의 동의내지 협력에 의하여 임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찰이나 저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 법령은 소방서장에게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지도(화재예방 및 인명안전이라는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행위)형식을 통한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행위라는 점과, 타 관할소방서 및 지방소방기관과의 소방행정의 형평성, 행정책임의 불명확 및 민원발생시의 구제수단의 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의 실행에 있어서는 행정상대방의 설득과 자발적인 동의가 선행되도록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9절 방염성능의 검사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본 조는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되는 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정의 성능이 있는 방염제품이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능이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는 방염물품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실제 설치된 방염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2.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합격표시 등

가. 성능검사의 종류

1)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되는 목재 및 합판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1)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

가) 첨부서류

- (1)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 (2)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한한다) 1부
- (3) 방염제의 독성시험성적서(수입한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

종류	구 분	단 위
카펫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100m
	그 밖의 물품	100개
	합판·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100장
커튼 등 막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1,000m
	그 밖의 물품	100개
벽지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1,000m
	그 밖의 물품	100개
블라인드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500m
	그 밖의 물품	100개
소파·의자	60개(하나의 소파·의자가 여러 좌석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의 좌석을 1개로 보아 산정한다)	

※ 비교 :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수량 이하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신청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라) 검사방법 : 검사신청 수량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

마) 방염성능검사합격표시 부착

2)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

4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첨부서류 및 물품

(1)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 1부

(2) 시공내역서 1부

(3) 검사대상 물품(시료)

- 시료의 크기 :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 시료의 수 : 목재 및 합판 종류별로 1개 이상

*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나) 신청기관 : 시·도지사

다) 검사방법 : 신청 시 제출된 시료를 건조한 후 방염성능검사 실시

라)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시험(방염성능기준 적합여부) ⇒ 판정 ⇒ 통보



문제
01

1.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허가동의 기간은?

- ① 3일 ② 5일 ③ 7일 ④ 10일

답

정답 : ④

해설 : 건축허가 동의 동의기간

- 1) 건축허가 동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 10일

문제
02

2.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 ① 소화활동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답

정답 : ①

해설 :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문제
03

3. 다음 중 방염대상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 ①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② 무대막, 카펫
③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
④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섬유류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답

정답 : ③

해설 : 방염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5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학습
목표

- 0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이해
- 0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이해
- 03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이해
- 0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의 이해

핵심
내용

- 0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도
- 0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03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04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05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의 의

이 법은 제3장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및 제4장이 소방시설과 관련된 물(物)적인 사항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그에 대한 소방시설 등이 중점적인 규율사항이었다면, 이 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인(人)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사람에 의하여 적정·적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전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유사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의무 뿐 아니라 실제 소방대상물 내에 거주하고 관리하는 관계인에 대하여서도 각종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화재로부터의 자기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재예방이라는 소방의 목적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재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소방업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이라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속성상 민간자율에 의함은 전문성 부족 및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법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소방상 특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정의 소방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한편으로는 민간자율 소방역량의 강화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의 효과적인 대처를 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2.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자기 책임

방법·소방안전 등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보는 원리와,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자신의 건물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함유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점 외에 화재의 특성상 초기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됨으로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자율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는

가. 화재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나. 화재는 일 개인의 예방활동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다. 민간의 화재예방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어서 화재 예방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마.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한다는 속성이 있으며

자. 민간자율의 소방역량의 강화를 꾀하고, 관설 소방업무의 폭증 등 업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 등이 있기에

이 법은 화재예방의 일환인 각종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자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소방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제한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

3. 소방안전관리의 구분 기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화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바, 이때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이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⁸⁰⁾이라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인 이 3가지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서 각종 기준을 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규모(층 및 면적)와 용도의 개념이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소방안전관리등급의 구분을 보면 특

80) 법 제9조

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은 소방법령 전반에 걸쳐 화재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인자라 할 수 있다.

4. 소방안전관리의 구분

이 법령에서는 기타소방안전관리 대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특급, 1급, 2급, 3급 및 공동소방안전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소방안전관리의 대상을 특급, 1급, 2급, 3급 및 공동소방안전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급, 1급, 2급, 3급 및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 대상을 기타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구분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업무의 수행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화재예방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일정수준의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소방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바,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정도에 따라 위험정도가 커서 특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을 특급, 1급, 2급, 3급 및 공동소방안전관리로 규정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소방대상물인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되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 상(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2)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시행령 제2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삭제<2017.1.26.>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1)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령 제24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④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⑦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⑧ 법 제22조를 적용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⑨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⑩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 ⑫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⑬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



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나) 자위소방대의 조직
- 다) 이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 라)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상시근무 또는 거주인원이 10인 이하는 제외)
- 마)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바) 화기취급의 감독
- 사)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및 고층건축물⁸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대형화 및 각종 설비의 복잡화 등으로 설비기능의 관리 운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막대한 수용인원과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출입 등으로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상가, 개별업종의 특성과 음식점에서의 화기취급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위험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건물의 연소특성 및 피난 등 소방상의 제반 문제가 많은 관계로 이 법은 특히, 이러한 대상을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과 관리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의무를 두고 있다.

1) 대 상(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행령 제23조 제2항)

라)~바)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81) 건축법(제2조제1항제19호)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나) 법령에 따라 (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4)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동일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 상(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삭제<2017.1.26>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시행령 제23조 제3항) 다만, 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가)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다)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 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나) 법령에 따라 (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3)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0) 시행령 23조 제2항 제7호 바목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5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동일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상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 라목(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3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시행령 제23조 제4항)

가)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시행령 23조 제2항 제7호 바목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동일

마. 보조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 대상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나) 가)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 및 나)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최소 선임기준

가) 시행령 22조의2 1항1호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시행령 22조의2 1항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22조의2 1항3호의 경우 : 1명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7호 마목 및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

1) 대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안전관리 업무 내용

가)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유지 · 관리

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 · 관리

다) 화기취급의 감독

라)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3) 소방안전관리의 주체(자격자) : 관계인

4) 기타의 이 법령상의 의무

이 법령에 의한 소방훈련실시 및 소방안전교육 참석 등

5.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형태

가.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소방안전관리

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선임(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라.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감독자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제한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바. 건물관리 용역업체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이는 실무상 행하여지는 형태로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건물관리를 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였을 경우 용역업체의 직원이 이 법령상의 자격을 겸비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상주 근무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사.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소방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2) 기타 특례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5. 1. 28., 2017. 10. 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7. 1. 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이 설치된 지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7. 10. 31.>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1. 17.>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가. 대지경계선 및 인접한 대지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시행령 제22조 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되고 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1) 선임연기 신청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2) 선임연기 사유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3)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연기신청서 접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첨부

- 4)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5) 연기일의 통보(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사실의 확인

본 조 제5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시기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첨부 서류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5) 기업활동규제 완화와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7.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서 첨부서류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소방안전관리자 규정의 준용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기간(법20조 4항), 해임사실의 확인(법 20조 5항), 관계인의 지도감독규정(법20조 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준용한다.

8. 공동소방안전관리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의 의

하나의 소방대상물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권원 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권 및 소유권의 다양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책임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관계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명확성이 떨어지는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특히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소홀·혼란 및 책임전가 등을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공동소방안전관리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25조)

-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9.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 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는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본 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소방안전규정”이 있어 왔으나, 본 조가 신설되면서 소방안전규정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업무를 확보할 수 있게 되

었다. 본 조는 최근의 대구지하철역사⁸²⁾·천안초등학교합숙소⁸³⁾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005. 8. 19 대통령령 제 19009호)이 제정되었다.

가. 소방안전관리 대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 2) 국공립학교 : 전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5)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규정의 유치원을 말한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82) 대구지하철화재

- 발생일시 : 2003년 2월 18일
- 인명피해 : 사망 182, 부상 106

83) 천안초등학교합숙소 화재사건

- 발생일시 : 2003년 3월 20일
- 인명피해 : 사망 8, 부상 17



나. 기관장의 책임

-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4) 기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제외)

- 1) 임명권자 : 기관장
-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4)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5)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감독자적 직위에 있는 자(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6조)

- 1) 통보기간 : 선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2) 통보방법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및 교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8조)

- 1) 이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 2)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사. 자위소방대의 편성 등(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2조)

- 1) 주체 : 기관장
- 2) 조직 : 대장, 부대장 각1인,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 으로 구성



아. 소방교육 및 훈련

- 1) 교육주체 : 기관장
- 2) 교육대상 :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
- 3) 교육횟수 : 연2회 이상
- 4) 교육방법 : 연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실시(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 5) 기타 : 2년간 교육 및 훈련기록 보관
 - ※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교육 및 훈련제외)

10.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가. 소방안전특별관리 시설물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나.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 1)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 2) 특별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 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 나)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 다)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 라)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 마)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 1)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계획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특별관리 시행계획의 내용
 - 가) 특별관리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나)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재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나 의정부 아파트화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재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인에 의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의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명대피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법에서는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건물특성을 고려한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피난계획의 수립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피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 마.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제3절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

1. 의 의

화재는 그 성격상 발화 후 급격히 연소 확대되며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기 등은 화재의 급속한 확산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화재의 속성은 바로 화재의 예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피난 및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대규모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고, 건물 내에 상주하는 인원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화재와 관련하여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화재 등의 발생 시 건잡을 수 없는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바,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관계인이 일정한 소방훈련 또는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유사시 즉각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소방훈련 및 교육 횟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연 1회 이상(소방서장이 2회의 범위 내에서 요청 시 추가 실시)

다. 훈련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1)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 자체훈련 : 자체 계획 수립에 의거 실시
- 3)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유지 한 후 이를 2년간 보관(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제4절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교육 및 각종 소방훈련을 실시 할 수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기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화재예방 등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바, 본 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있는 바, 본 조는 이에 대한 법률적인 권원을 둠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교육의 합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교육

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고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나. 교육대상자 :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의 관계인

-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교육 통보(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代價)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의 의

화재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이 법은 특수 장소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의 의무 및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두고 있으며, 또한, 관계인에게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을 담보하고 있다.



설치된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등의 자체점검은 공공소방행정력의 개입 없이 관계인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소방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한편으로는 그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관계인에 의한 각종 소방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사회의 안전이라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은 관계인 스스로에 의한 소방안전점검을 강제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점검을 하도록 자체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본조 제1항),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점검제도는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은 당해 특수 장소의 관계인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원리와,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 주도의 소방행정의 한계의 극복과 동시에 민간 소방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국가 전체의 소방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2. 자체점검의 구분

“자체점검”이라 함은 특수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 책임 하에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인 경우 관계인)에 의한 점검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가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은 자체점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나,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자체점검자의 자격·절차·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점검의 방식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대상에는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한다.

- 1)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
- 2)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

3. 자체점검의 구분·대상·방법·자격 및 횟수(시행규칙 별표1)

[표 3-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사항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 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	1. 횟수: 연1회 이상 실시 2. 시기 가. 작동기능점검결과보고대상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 다. 가. 위험물제조소 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감지기 시험기, 연 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은 그 다음해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해부터 실시(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1)에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내 실시가능) 나.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다.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 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인것만 해당 한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 한다)·제6호(노래연습장)·제7호(산후조리업)·제7호의2(고시원업) 및 제7호의5(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 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자·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자·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 연 1회 이상(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기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굽미터 이상인 것이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라. 공공기관중 연면적(터널 · 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 1,000㎡ 이상 인것으로서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시하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 완공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할 수 있다. 다. 사용승인일 이후 대상중 나목에 해당되게 된 경우 그 다음해부터 실시 다. 하나의 대지경계선안에 2개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점검할수 있다.

4.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시행규칙 제19조)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작동기능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제외)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나. 종합정밀점검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 2)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 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 인력 1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다.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 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10,000㎡

2) 작동기능점검: 12,000㎡(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500㎡)

라.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3,000 ㎡,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3,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마.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 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는 그 길이와 폭 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 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표 3-5] 점검면적 별 가감계수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1.2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발전시설, 판매시설	1.1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1.0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0.8



2)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가) 영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5를 곱한 값

(다) 영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3)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나목에 따라 계산된 값(나목에 따라 계산된 값이 없을 때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을 말한다)에 0.02를 곱한 값을 더한다.

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1)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나)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

2)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70세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점검한 아파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1) 영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5를 곱한 값

(3) 영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검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 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1)에 따라 계산된 값(1)에 따라 계산된 값이 없을 때에는 실제 점검 세대수를 말한다)에 0.02를 곱한 값을 더한다.

사.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3.3,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4.3(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8.9)을 곱한 값을 점검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아.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정밀점검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로 본다.

자.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의 갈음(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규정)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를 받은 해당 연도부터 3년의 범위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간

나.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 물 : 그 대상의 공간안전인증기간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 열거한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제6절 우수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등을 일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으로 보고 이법에서는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일정기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하는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민간자율에 의한 소방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이 라는 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2. 시행계획의 수립

가. 시기 : 매년 3월 31일

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포상의 종류와 수량·
- 2) 신청자격·방법·
- 3) 심사기준·제출서류
- 4)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

3. 평가위원회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가.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종합정밀점검 면제(우수소방대상물선정 및 포상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합정밀점검 면제 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 나. 소방청장 표창 : 2년
- 다. 시·도지사 표창 : 1년



문제
01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 ① 3일 ② 7일 ③ 14일 ④ 30일

답

정답 : ③

해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02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 ①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② 재해약자의 현황
③ 각 거실에서 옥내로 이르는 피난경로
④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답

정답 : ③

해설 : 피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문제
03

3.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②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③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④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답

정답 : ④

해설 : 인증·수상 또는 평가를 받은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부터 3년의 범위에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간

나.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 그 대상의 공간안전인증기간

다.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학습 목표

- 01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이해
- 0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제도의 이해
- 03 소방시설관리업 운영의 이해

핵심 내용

- 01 소방시설관리사 제도
- 02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및 의무
- 03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 04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 05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0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07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 0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 09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의 정지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1. 의 의

본 장은 전체적으로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부여 규정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재산·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격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여 법의 감독 아래 두어 통제함으로써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장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방시설을 유지 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필요로 함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의 보유를 설정·공증하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항상 정상작동 하도록 보장하고자 함에

6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관련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완공 등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기능이 요구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있으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업무도 소방과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이 있어야 하는 바, 이 또한, 아무런 지식과 기능이 없는 일반인인 관계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질의 시설인 관계로 이 법에서는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서도 일정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자격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소방법령 전반에 걸쳐 인정되는 소방기술자로서 각종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과 자격과 그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기술을 관계인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기하여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 등이 그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함에 있다.

2.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등

1) 응시자격(시행령 27조)

- 가)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차)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시험방법·과목·합격자결정

가) 시험의 시행방법(시행령 제28조)

- (1)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 (2)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3)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4)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나) 시험과목

(1) 제1차시험

-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 ①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④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 (2) 제2차 시험
 -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다) 시험위원 등(시행령 제30조)
 - (1)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하여야 한다.
 - (가)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다)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라) 소방시설관리사
 - (마) 소방기술사
 - (2)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 위원 수
 - (가) 응시자격 심사위원 : 3명
 - (나)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 과목별 3명
 - (다)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시행령 제31조)
 - (1) 제1차시험 과목 면제
 -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나) 소방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공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 (1) 제2차시험 과목 면제
 - (가)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나)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

6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마) 시험실시 및 공고(시행령 제32조)

(1) 시험실시 : 1년마다 1회 시행 원칙(필요시 증감)

(2) 시험공고 : 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바)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시행령 제34조)

(1)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3) 합격자공고 :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

사)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나.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및 의무

1)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소방법령규정 및 업무 범위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의 기술인력자로 될 수 있다.

다) 이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라) 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마) 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

2) 소방시설관리사의 의무

가) 자격증 대여금지

나) 이중취업금지

다)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을 의무

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준수 의무



3.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란 자격부여 규정에 있어 특정 신분·자격 등을 얻는 데 있어서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한다. 이 법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규정한 것은 관리사가 행하는 업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전업무에 있어서 전문기술과 기능을 가진 자격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방기술을 관계인에게 제공토록 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자격을 주고 있는 바, 이 법의 목적상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소방시설관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적법한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⁸⁴⁾를 제한하는 것임으로 그 내용과 사유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대부분의 법률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조항이다.

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본인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피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84) 대한민국헌법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가)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 또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전과사실이 있는 자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에 배제토록 하는 것은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소방관련 법령을 적정 준수토록 하고자 함에 있다.

3) 이 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의 배제 또한 등록된 관리사의 성실한 법령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4.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할 행정청인 소방청장이 관리사에 대하여 이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자격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제조치는 다른 제제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제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제제의 수단과 동시에 평상시에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간접적인 기능



도 가지고 있다.

가.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청장의 본조에 의한 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임으로 그 요건은 명확하게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무분별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 제44조에서는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제도화하고 있다.

나. 자격취소·정지

1) 취소 및 정지 사유

가)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나)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다) 제26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의 정지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다. 필요적 취소사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26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3) 제26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4)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이 절은 어떤 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필요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소방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자격부여에 관한 규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그 이행의 의무를 두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인 관계로 그러한 업무를 적정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정의 기술적, 자격적 요건이 필요한 바, 이 절에서는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요건과 각종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설치된 소방시설이 적정·적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본 절은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사항의 변경, 지위승계, 운영,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은 화재등 유사시 항상 정상·적정동작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평상시에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유지·점검 등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업”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 인하여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적정한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함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필요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업을 하기 위한 “업”을 말하며, 본 조는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이란 절차를 둠으로 인하여 이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편으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좀더 향상되고 양질의 업무수행을 담보하여 소방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가. 등록절차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기술인력의 연명부·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점검기구 명세서) → 시·도지사에 등록 → 심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시·도 공보에 고시

나.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9)

1) 인력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2) 부터 4)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2) 장비기준 : 소방시설 점검기구(시행령 별표 9의 장비)

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제출, 각 호의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1)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2)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6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시행규칙 제22조)

- 1)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 임을 기록하여 내 주어야 한다.
- 2) 서류심사 결과 다음에 해당 시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가)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때
 - 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을 교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시·도의 공보에 공고

마.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시행규칙 제23조)

- 1) 재교부 신청사유 : 분실시 및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3) 재교부 기간 :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재교부.
- 4) 반납사유
 - 가) 등록이 취소된 때
 - 나)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 다)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을 때에 한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결격사유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등록자에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한다. 본 조가 이러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적정·적법한 소방시설 관리 업무의 수행을 담보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이 언제 어느 때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본인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이 법 또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전과사실이 있는 자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격에서 배제토록 하는 것은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소방관련 법령을 적정 준수토록 하고자 함에 있다.

3) 이 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의 배제 또한 등록된 관리사의 성실한 법령 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대한 배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정·적법업무의 이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6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시행규칙 제24조)

-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 2) 대표자 3) 기술인력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시행규칙 제25조)

- 1) 신고기한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제출 시 변경사항별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을 확인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시 확인
- 4) 변경신고처리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접수 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 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4. 지위승계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을 등록을 한 자가 해외이주·직업변경 등 개인적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됨이 일반적이며, 본 조는 위와 같은 사안(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하여 양수 또는 상속 등)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가. 지위승계 요건 및 승계자

-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
-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영업을 양수한 자
- 3) 법인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나. 지위승계신고 등

- 1) 신고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6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 2) 신고일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3) 신고서식 :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 4) 신고서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나)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삭제 <2006. 9. 7.>
 - 라) 삭제 <2006. 9. 7.>
 - 마)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바)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 5)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가) 법인등기부등본 (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6) 신고사항 처리(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시·도지사는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 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제33조(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③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5.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업무수행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운영 및 업무 중 수행하여야 할 의무 등을 구체화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할 행정청의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가 당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처분사실 및 지위승계사실 등을 통보토록 함으로서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의무

-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금지
- 2) 관계인에게 통지
 - 가) 지위승계를 한 때
 - 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 다) 휴업 또는 폐업한 때

나. 자체점검 시 기술인력 참여기준

-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 2)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1호 나목의 보조기술인력
- 3)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14.1.7.>
6. 삭제 <2014.1.7.>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8. 삭제 <2014.1.7.>
9. 삭제 <2014.1.7.>
10. 삭제 <2014.1.7.>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할 행정청인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일정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



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바, 관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담을 고려하여 본 조의 처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조의 처분은 관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그 처분의 요건을 명확하게 법정하고 있으며, 처분 시에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필요적 처분사항으로 달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44조에서는 본 조와 관련하여 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시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처분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한 번 더 확보하고 있다.

가. 시정명령·영업의 정지 및 취소 요건

1)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취소 사유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필요적 취소사유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나)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재금을 의미한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6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행정청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가 중지되어 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을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처분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1) 과징금 부과대상 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 중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과액 : 3천만원 이하

3) 부과기준(시행규칙 별표 4)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4)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개별기준) : (시행규칙 별표4)

5) 과징금징수절차(시행규칙 제28조)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문제 01

1. 소방시설관리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 ① 자격증 대여금지 ② 이중취업금지
- ③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을 의무
- ④ 이 법 또는 이 법외에 따른 명령준수 의무

告

정답 : ④

해설 : 소방시설관리사의 의무(자격증 대여금지, 이중취업 금지,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을 의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준수 의무)

문제
02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 ① 피성년후견인
- ② 이 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④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七

정답 : ④

해설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문제
03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3.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액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은?

- ① 1억원 이하 ② 7천만원 이하 ③ 5천만원 이하 ④ 3천만원 이하

답

정답 : ④

해설 :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액 : 3천만원 이하(영업정지처분 중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학습 목표

- 0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도의 이해
- 02 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의 이해
- 03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이해

핵심 내용

- 0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 0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 03 형식승인의 취소
- 04 소방용품의 성능시험
- 05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06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1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소방용품은 평상시 작동 대기 상태로 있지만 유사 시 적정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완벽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보면 일반 공산품인 개인 사유물의 성격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과 사회전체의 안전이라는 소방의 목적에 제공되는 공공적인 성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령은 이러한 소방용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재용 기계·기구라는 특성이 있기에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가공인 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법 적정의 검정을 받지 않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무 검정 소방용품이라 하여 전시·판매·시공·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검정제도는 그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 법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필요성

이 법령에서 이러한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서

첫째 : 유사시 항상 적정 적합하게 동작될 수 있도록 완벽한 성능의 보장

둘째 : 소방용품은 그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성능상의 결함·불량품 등을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운 바, 검정이라는 절차를 거친 소방용품만을 판매 설치토록 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

셋째 : 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일정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생산토록 함으로서 설치되었을 시 적정·적합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넷째 : 검증의 절차를 둠으로 인하여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가 확보됨으로 동시에 소방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정한 기능과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 인하여 그 기준과 성능에 적합하게 제작·설계토록 유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소방산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1)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 2)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 3)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管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

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1)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에 한한다)

다.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1)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 2)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3)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1)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 2)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삭제 <2014.1.7.>
 6. 삭제 <2014.1.7.>
 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8. 삭제 <2014.1.7.>
 9. 삭제 <2014.1.7.>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2절 소방용품의 성능시험

-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3절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0조의 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피난구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① 피난밧줄 ② 간이완강기 ③ 공기호흡기 충전기
 ④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답

정답 : ①

해설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 1)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3)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2. 다음 중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④ 불량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답

정답 : ④

해설 :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은?
 ① 중앙행정기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공동아파트 ④ 지방자치단체



답

정답 : ③

해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보칙

보칙

학습 목표	0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의 이해 0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이해 03 신고포상금의 지급제도의 이해
핵심 내용	0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0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03 청 문 04 권한의 위임·위탁 05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06 감 독 07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08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1. 의 의

총칙이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 규정의 전제로서 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총칙으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법제상 보칙 규정이라 한다.

이 장은 보칙 규정에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또는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제6장과 관련하여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과 처분의 사전절차인 청문에 관한 사항,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감독권에 대한 사항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칙 규정은 여타의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칙 규정과 유사하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민간 소방 관련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화하는 소방 환경과 그 위험, 화재예방, 소방관련 새로운 기술의 보급, 소방관계인의 교양 함양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둠으로서 민간 소방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종전 소방법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원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실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법은 위와 관련한 제반 교육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원에 그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시행규칙 제29조)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4.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시행규칙 제30조)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안전원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강습교육의 강사(시행규칙 제31조)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6.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시행규칙 제32조)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표 3-6]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 및 시간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 시간
가. 특급 소방안전 관리자	직업윤리 및 리더십	80시간
	소방관계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보칙

구분	교육과목	교육 시간
나. 1급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라.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32시간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작동기능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방법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마. 3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2. 교육운영방법 등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표 3-7]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운영방법

구분	이론 (30%)	실무(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24시간	32시간
1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2시간	12시간	16시간
2급 소방안전관리자	9시간	10시간	13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8시간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마.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마. 구조 및 응급처치요령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시행규칙 제34조)

-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 나.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다.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마.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 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사.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8.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시행규칙 제35조)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은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9.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시행규칙 제36조)

- 가.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



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칙

10. 교육시간 및 과목(시행규칙 제37조 별표5의 2)

[표 3-8]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 피난구조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가목의 소방관계법규, 아목의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표 3-9]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화재의 예방·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4시간 이내

11. 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시행규칙 제38조)

안전원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 실무교육의 강사(시행규칙 제39조)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13.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시행규칙 제40조)

-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제2절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

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절 청문

제44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5.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 의 의

법률상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⁸⁵⁾ 일반적으로 청문절차를 두는 처분은 등록·허가·자격 등의 취소 등 그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권익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처분이다. 이 법은 이 법에 근거한 처분 중 상대방에게 중대한 권익의 침해 (등록·자격·지정 기관의 취소 등)가 있는 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관할 처분청의 일방적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처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함에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대상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해당 처분 전에 청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할 경우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되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2. 청문대상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대상의 처분은 그 처분이 있을 시 자격이 취소, 관리업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함,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작을 못함 등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과 달리 사안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이러한 이유로 처분 시 그 상황의 적정·적법 여부를 한 번 더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과 민주성

85) 행정절차법 제2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문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나.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보칙

다.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라.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마.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바.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3. 청문의 절차

본 조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문을 필요한 절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문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⁸⁶⁾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는 청문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그 세부사항은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5절 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3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86) 행정절차법 제27조~제37조



4. 제39조제1항·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6.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 ③ 소방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⑦ 소방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委讓)하는 것으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受任機關)은 당해 행정관청의 보조기관·하급기관임이 통례이다. 이 때 위임기관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며, 이는 법이 정하는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일종의 사무재 배분이므로 법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본 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을 하고 있다.



2. 위탁

보칙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는 신탁관계가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경제적 능률성이 중시되는 분야 중 민간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을 주로 한다. 이러한 위탁도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분배의 실질적인 변경을 의미함으로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바 본 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3. 권한의 위임사항

가. 소방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소방청장의 업무의 위탁

가. 기술원에 위탁

-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나.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다.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



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5. 위탁보조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공사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 중 각종 소방용 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업무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깊은 연관이 있다. 본 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정경비의 보전 또는 기술개발·연구 등을 통한 사업의 장려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6.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에 대하여 금품의 수수(收受)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라 한다. 본 조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위탁받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제46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자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일반적으로 출입검사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은 행정기관이 그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종으로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의 적정·적법한 운영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 및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서, 사업자 또는 관계인의 적정·적법한 사업 및 영업을 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본 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관리사, 관리업자)·기관(지정기관)·대상물(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소방대상물) 및 이 법과 관련한 특정인에 대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성실한 업무 이행 등의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이나 영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 명령을 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사업소·사업장·사무실 및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점유하고 있는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 가. 소방시설관리업자
- 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 다. 소방시설관리사
- 라.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 마.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자
- 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 사. 성능시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 아.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3. 감독권 행사의 종류

-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 나.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출입 검사권 및 질문권

4. 감독권 행사의 범위

본 조에서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시간적인 제한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입 장소와 시간·검사대상의 장부류나 시설 등에 대한 검사 시에도 그 정도는 이 법률의 목적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⁸⁷⁾ 부당하게 사인(私人)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의무

- (1) 증표제시의 의무
- (2)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보칙

제7절 수수료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는 자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3.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5.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7.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8.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87)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

-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 한다.
-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9

1. 의 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행정주체가 행정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정행위 (이 법에서의 각종검사·응시·등록 등)를 함에 있어 그 역무에 대한 보상 또는 비용충당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요금”을 수수료라 하며, 교육비라 함은 소방기술자가 이 법령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 시에 그 교육에 상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사항은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이 국가에 대한 공권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은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특정의 역무를 함으로서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비용충당의 개념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요금의 개념이자 교육 등에 대한 대가의 개념이다.

2. 수수료 및 교육비

가. 수수료 납부대상

-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3)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는 자
-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5)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6)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7)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 8)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 9)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 10)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 11)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 12)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 13)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5)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6)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나. 교육비 납부대상

－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제8절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대상 및 사유

가. 연기대상

-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조치명령

나. 연기사유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절차

가. 신청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결정 및 통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절 신고포상금의 지급

보칙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신고포상금 지급자 :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나.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문제
01

1. 청문을 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정지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시정명령
-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④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답

정답 : ②

해설 : 청문을 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 1. 제28조에 따른 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 4.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 5.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 6.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문제
02

2.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② 피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③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④ 소방안전관리자 해임명령

답

정답 : ④

해설 : 조치명령 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문제
03

보칙

3. 다음 중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 ①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관리한 자 ②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방화시설을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

답

정답 : ①

해설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나.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벌칙

학습 목표

- 01 소방시설법의 벌칙에 대한 이해
- 02 행정질서벌(과태료)에 대한 이해
- 03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이해
- 04 양벌규정에 대한 이해
- 05 행정벌과 행정처분 병과에 대한 이해

핵심 내용

- 01 소방시설법의 위반사항 내용에 따른 벌칙
- 02 과태료의 부과 절차
- 03 과태료의 부과 기준
- 04 양벌규정
- 05 행정벌과 행정처분 병과

1. 행정벌의 의의

벌칙이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 외에 의무의 불이행, 또는,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본 장 규정 중 제48조 내지 제49조는 징역과 벌금형을 제50조는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에는 양벌규정, 제53조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심리강제)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범, 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 자체는 본래 반

9

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된다.

벌칙

2. 행정벌의 종류

가. 행정형벌

행정벌의 하나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상 형법 총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나 예외 적으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처분 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 27.>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2. 26.>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 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17. 12. 26.>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7. 12. 26.>
- 9의2.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나. 행정질서벌(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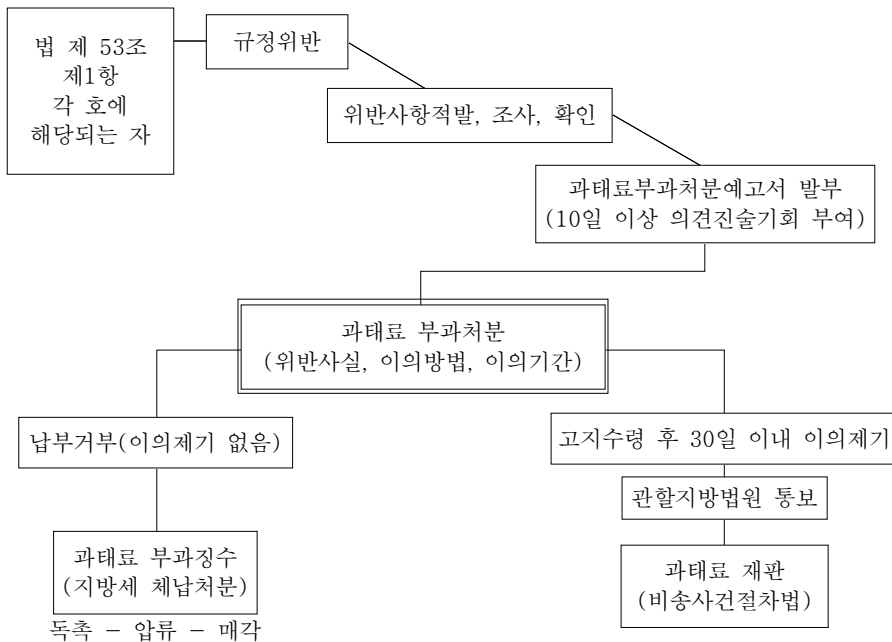
1) 의 의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과하여져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벌칙과의 사이에 누범(累犯) 관계도 생길 수 없다. 이 법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제53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권자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과태료부과 절차

[그림 3-5] 과태료부과 절차도



3)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10)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벌칙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4) 개별기준(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호	200		
라. 법 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3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마. 삭제 <2015.6.30.>				
바. 삭제 <2015.6.30.>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5호	50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6호	50	100	200
자.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7호	200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	50	100	200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8호	50	100	200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9호	50	100	200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0호	30 50 100 200		
하.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1호	200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2호	200		
너.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	200		
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3항	100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3호	50	100	200

3.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법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 재산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직접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이 양벌규정은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의 자연인만 처벌하여서는 법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 양벌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양벌규정을 둠으로서 관리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관계인,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이 법의 준수를 강제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영업주(법인 및 개인)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4. 행정벌과 행정처분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징서벌이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과 행정징서벌은 행정벌이라는 동일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병과 할 수 없으나,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행정징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행정벌의 적용은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일반통치권에 기한 벌이며, 행정벌은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인 관계로 위반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해당여부·과태료처분 해당여부 및 벌칙규정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9

별책

가.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8)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위반한 사항이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법 제28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



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③ 유도등(誘導燈)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는 경우
- ④ 유도표지(誘導標識)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법 제28조제1호·제4호·제5

호·제7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誘導燈)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誘導標識)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삭제 <2015.7.16.>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2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3)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3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4)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호	자격취소		
(5) 법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5호	자격취소		
(6) 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6호	경고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7호	자격취소		
(8) 삭제 <2014.7.8>				
(9) 삭제 <2012.2.3>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 지 3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4조제1항 제3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 지 3개월	등록 취소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7호	등록취소		

9

문제
01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몇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 ① 1년간 ② 2년간 ③ 3년간 ④ 5년간

답

정답 : ①

해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문제
02

2.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5년 이하의 징역 ② 4년 이하의 징역
③ 3년 이하의 징역 ④ 1년 이하의 징역

답

정답 : ①

해설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03

3.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은?

- 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관리한 자
② 피난시설의 폐쇄 행위를 한 자
③ 방화구획의 변경행위를 한 자
④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답

정답 : ④

해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자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부록 부칙

부 칙 <법률 제6895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661호, 2005. 8.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903호, 2006. 3.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906호, 2006. 3.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7983호, 200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9093호, 2008. 6.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094호, 2008. 6. 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199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207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4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제20조제2항·제6항, 제41조, 제50조제5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062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13439호, 2015. 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의 결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호 및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호 또는 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본부장이 구성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호 및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917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533호, 2018.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의 의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부칙은 본칙의 규정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본칙의 규정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의 내용으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2. 시행일

법률의 시행일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시행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을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기간을 두어야 하며, 또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시행일, 즉, 효력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를 6개월로 두어 하위법령의 정비에 따른 시간과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경과조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효력은 종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도 미치며, 종전의 상태와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던 행위가 새로이 규제대상이 되거나, 또는, 종전의 조직이 폐지됨으로써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에도 변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 이행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구상태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경과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 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법률사이에서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 법은 종전에 구성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와 민법 일부개정법에 따른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고 있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과 같이 제명을 달리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전문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상당히 많이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입법 실무의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이 많을 경우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입법 낭비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방식을 부칙에서 사용하면 다른 법률을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부칙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1.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시행 2017. 7. 26.]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경계를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계절별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2.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부록

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 <삭 제>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소방특별조사반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예방업무 교육과정(사이버 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료한 사람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신분증을 말한다)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로 한다.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안전관리사항 확인을 위하여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6.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7.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8. 그 밖에 소방청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반장은 소방청의 국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고, 조사단원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소방청 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소방관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확충하고 소방특별조사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항의 적합성(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자격의 유효성,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
 - 나.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2.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가.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보고서 보존관리사항 확인
 - 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등
3.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 가.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표 및 배치확인서 보관여부 확인
 - 나. 자체점검의 적정성(시설확인 누락여부, 허위점검 여부)
5.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 사용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안전관리 사항의 적

부록

합성

8.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적합성 여부

나. 그 밖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조사의 사유 및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1. 피트층, 파이프닥터 등 건축물의 피난보조공간의 안전유지관리 사항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제 관리사항

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③ <삭 제>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소방특별조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특별조사결과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

3. 조치명령 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③ 소방특별조사결과 별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소방특별조사 결과 건축·전기·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14조(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라 편성된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근무경력·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소방특별조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특별조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호, 2017. 7.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보유기준(제9조 관련)

소방시설 구분	장비	규격
공동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룩스 이하인 것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 관리자	

2. 기본 조사사항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피난시설 등	실시()	

부록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 위 통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 위 통보내용 중 「조치할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 부터 .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 . 까지 ○○소방서(주소: , 담당자: , 이메일: , 전화번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 소		
	성 명	직 위	전 화 번 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併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결과서 부분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분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호의2 서식]

소 방 특 별 조 사 자 지 정 서

제 호
200 . . .

소속(업체명) :

계급(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아래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로 지정합니다.

1. 조 사 기 간 :

1. 조사지역(대상) :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발급기관의 장 (인)

2.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천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이하 ‘특별조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간 및 범위) 이 지침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방특별조사 규정 등과의 관계)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시설법령상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특별조사 대상물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소방대상물 55만4천동을 우선 선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별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물 중 17만2천동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38만2천동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물 중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대상은 2019년에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2018년 및 2019년 특별조사 실시 대상 중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요원의 책무)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잠재 화재위험요소를 발굴·제거 하는 등 화재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청탁도 배척한다.
5.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조사요원은 조사를 실시하는 일과 중에는 복장 및 외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반의 편성·운영 등

제6조(조사반의 편성·운영) ① 조사반은 조사대상물의 면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한다.

1. A반 :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
2. B반 : 연면적이 3천5백㎡ ~ 5천㎡ 미만인 건축물
3. C반 : 연면적이 3천5백㎡ 미만인 건축물

② 조사반은 각 반별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을 3명 ~ 6명으로 구성한다.

1. A반 : 5~6명[건축공무원 등(건축토목직, 방재안전직렬, 재난업무 담당 행정직공무원 및 건축사 등을 말함. 이하 같음) 1명, 소방공무원 1~2명, 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경력직 1명, 가스·소방 경력직 1명, 청년보조 1명]
2. B반 : 4~5명(건축공무원 등 1명, 소방공무원 1~2명, 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경력직 1명, 청년보조 1명)
3. C반 : 3~4명(건축공무원 등 1명, 소방공무원 1~2명, 청년보조 1명)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조사인력과 조사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반별 소방공무원 등 조사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각 반에는 최소 소방공무원 1인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 이상을 각 반에 편성·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당 시·도 또는 소방서에서 부담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공무원 중에서 1인을 조사반장으로 지명하여 각 반의 조사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업무의 전문성이 지속되도록 조사인력 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반의 업무 범위 등) ① 조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화재안전특별조사서에 따라 화재안전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제반항목

부록

에 대한 조사 실시

2.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화재안전 관련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건축물 관계인 등에 대한 컨설팅
3. 특별조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법령 등 위반사항을 건축물 관계인 등이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하도록 적극 유도
4.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② 조사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무원 등 :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문, 방화셔터, 마감재 등 건축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2. 소방공무원 : 관계인의 자체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등의 관리상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이용자 특성 및 화재대응활동 여건 등에 관한 사항 조사
3.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경력직 : 전기설비 현황, 전기 차단장치 적정성, 접지, 절연저항, 전기설비의 안전성, 비상발전설비의 적정성 등 전기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4. 가스소방 경력직 : 가스 저장설비 등의 배치기준 및 사고예방설비 기준의 적정성 등 가스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5. 조사보조 : 조사일정 확인·조정, 건축물 현황 파악 등의 공통 업무 수행 및 조사반장의 지시에 따른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A반 : 소방분야 조사 보조

나. B반 : 가스분야 조사

다. C반 : 전기 또는 가스분야 조사

6. 행정보조 : 조사일정 조정, 특별조사 결과 입력 및 관리, 시민조사참여단 체크리스트 결과 입력 및 정리,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사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에게 다른 조사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반장은 B반 및 C반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에게 전기 및 가스분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반장은 조사반의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조사반의 조사대상물에 대한 책임관리 등 총괄 운영
2. 조사반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평가
3. 조사반원의 임무 분담 확인 및 조정
4. 대상별 조사 착안사항 및 청렴의무 등에 대한 교육
5. 조사 추진일정 및 실적 보고 총괄



6. 특별조사 결과서 현장 교부

7.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업무 처리 등

제8조(조사요원의 자격) ①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단, 연령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 1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근무 경력자. 단, (지방)소방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근무 경력자 중 소방교 이상의 계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공무원 등 : 건축도목방재안전직렬 및 재난업무담당 행정직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건축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3. 경력직 : 70세 이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전기·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소방·전기·가스분야 관련학과(고등학교 이상)를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소방·전기·가스관련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조사보조 : 40세 이하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이상)

5. 행정보조 : 40세 이하로 전산프로그램(Office 등), 한글프로그램 등 활용이 능숙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3)란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의 국가기술자격 및 관련학과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9조(조사요원의 교육 등) ①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기간 동안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별조사와 관련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등, 전기안전공사 직원 : 특별조사 리더(조사 전문인력)로서의 기본소양, 지식 및 중점 추진방향 등(2일 비합숙)

2. 경력직 : 소방전기가스 등 조사관련 법령, 기준, 장비 사용법 등 실무점검 교육(1주 합숙)

3. 조사보조 : 조사 보조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 및 소양 습득(4주 합숙)

4. 행정보조 : 조사일정 조정 및 데이터 관리 요령, 조사결과 정리 방법 등 행정보조 실무(1주 합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방법 등) ① 조사요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화재안전특별조사서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부록

- ② 조사요원은 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내용 및 일정 등을 조사대상 건물 관계인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 실시 전이나 실시 중에 필요한 경우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고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재안전 특별조사관 신분증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조사반 및 상황관리반) : 소방근무복 또는 기동복(필요시 조끼 착용)
 2. 경력직 및 조사보조인력 : 단정한 개인복장에 지급된 조끼 착용(슬리퍼, 반바지 착용 금지)
 3. 상황관리반 및 행정보조인력 : 단정한 개인 복장(슬리퍼 및 반바지 착용 금지)
- ④ 조사요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 동(棟)별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비실 등 부속건물은 조사반장이 판단하여 인접한 건물 조사 시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⑤ 조사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비실 등 독립된 부속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특별조사는 조사반별 조사요원이 함께 참여하여 시작하고 종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반장은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副本)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조사결과를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이하 '시도 특별조사 상황반'이라 한다)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조사반장은 조사반원과 협의하여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등급을 정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시도 특별조사 상황관리반에서는 매월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다음달 5일 까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 소방서장은 특별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4.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 위반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개선·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적 개선 또는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를 활용하여 관계인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조사반장은 제1항 및 제2항 위반사항의 개선 또는 보완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을 방문·확인하거나 관계인이 제출한 서류(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 3) 또는 사진을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차량 및 점검장비 활용 등) ① 조사반은 각 반별로 전담 조사차량과 별표 3에서 정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조사차량은 조사기간 동안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서의 자체 조사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점검장비는 소방청장이 구매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무상양여하고, 유지관리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한다.
- ④ 조사반장은 조사차량 또는 점검장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장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특별조사업무 수행 중 조사요원의 소방시설 작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해당 시·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한다.
- 제14조(비상키트 보급) 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에 대한 건물 관계인 및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긴급조치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대상물 관계인에게 보급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상키트 물품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 반영하여 2개월 단위로 물품을 재구성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비상키트를 일괄 구매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배부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각 조사반별로 배부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제 3 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등 운영

- 제15조(추진단 구성·운영) ①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전준비를 위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청은 조사 개시 3개월 전부터 10명 이상으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 개시 1개월 전부터 3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6조에 의한 상

부록

상황관리반이 구성·운영되면 추진단은 업무를 상황관리반에 인계하고 종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단장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 이상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소방청 이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소방청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계별 특별조사 대상물 선정 기준 마련 및 일정 총괄 관리
2. 경력직 및 청년보조인력 신규 채용, 배치
3.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전기공사 조사인력 지원 협조 및 관리
4. 조사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5. 화재안전특별조사 매뉴얼 및 교육교재 편찬·발간
6. 특별조사 모바일 앱 개발 및 탑재
7. 마이크로페이지(미니홈피) 구축·운영
8.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구매 및 시·도 배부, 무상 양여
9. 시민조사참여단 운영지침 마련 및 모집, 교육
10.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작성 및 보완
11. 비상키트 물품 선정·구매·배부 및 조사차량 임차 기준 마련
12.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운영기준 마련 및 인력풀 구성
13. 건물위험도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단 인력풀 구성
14. 화재안전특별조사 소요예산 확보 및 배정
15. 모바일점검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등
16. 화재안전특별조사 홍보 관련사항 총괄

⑤ 시·도 소방본부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계별 특별조사 대상물 선정 및 조사일정 수립·관리
2. 신규채용인력 시·도별 합격자 등록 및 관리
3. 조사반별 소방공무원 파견 지원 및 건축공무원 파견 지원 협조
4. 인건비, 4대 보험, 컨설팅 자문료, 시민참여 수당, 출장여비 등 회계에 관한 업무
5. 점검장비 시·도별 검수 및 관리
6. 비상키트 수령(2개월 단위)·보관 및 소방서별 배부
7. 시·도별 조사차량 임차 및 소방서별 자체 운영차량 선정
8. 시·도별 상황실 마련 및 PC 임차,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인쇄
9.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및 건물위험도 평가단 인력풀 구성 지원
10.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권역별 교육운영 협조
11. 시민조사참여단 인력모집 홍보, 시·도 본부별 교육 및 위촉식 협조
12. 기타 소방청 추진단 협력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상황관리반 편성운영) ①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는 화



재난안전특별조사 기간 중에는 상황관리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상황관리반의 경우에는 소방정 이상을 책임관으로 하여 7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운영한다.
- ③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상황관리반의 경우에는 소방정 이상 책임관 1명과 소방공무원 1명, 건축공무원 1명, 조사보조 1명을 두어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기, 가스 등의 인력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시도 상황관리반에는 조사대상 수량에 비례하여 시도별로 배정된 행정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수량이 많은 시도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상황관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은 시도의 자체 인력 및 비용으로 충당한다.

제17조(상황관리반의 업무)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 상황관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조사 추진상황 및 실적 관리
- 2. 신규 채용인력 퇴직 시 추가 인력 선발 및 교육
- 3. 화재특별조사 관련 홍보 총괄 운영 및 언론보도 대응
- 4. 마이크로페이지(미니홈피) 운영 및 질의사항 답변 관리
- 5.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운영현황 확인
- 6.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리, 참여결과(체크리스트) 정리
- 7. 비상키트 물품 추가 구매·배부
- 8.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운영실태 확인 및 실적 관리
- 9. 건물위험도 평가 추진상황 및 실적 관리
- 10. 모바일점검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추진 등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 상황관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도 조사반의 특별조사 추진상황 관리 및 보고
- 2. 화재특별조사 관련 언론보도 응대 및 홍보 관리
- 3.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및 실적 관리
- 4. 마이크로페이지 질의사항 컨설팅 상황관리
- 5. 점검장비 운영물품 조달 및 관리
- 6. 비상키트 관리 및 조사반별 배부
- 7. 특별조사 운영인력 근태 등 상황관리
- 8. 화재안전특별조사서 결과 입력 및 점검실적 관리
- 9. 조사차량 임차 및 유류비 총괄 운영
- 10. 특별조사반 조사일정 조정 및 관리

부록

제18조(마이크로페이지 운영) ① 소방청장은 화재특별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용 마이크로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이크로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의의, 추진배경, 목적 등에 대한 안내
2.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관리 관련 질의답변(FAQ) 모음 란
3. 조사대상 건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질의응답 란
4.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보도 및 설명자료 게재 란
5. 화재안전상식 및 점검요령 등 게재 란

제 4 장 조사요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 등

제19조(복무관리 담당부서) ① 특별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공사 직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는 시도 소방본부 상황관리반에서 총괄 관장 한다. 필요한 경우 소방서별로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조사반별 복무관리 담당자는 조사반장으로 한다.

③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의 연가, 지참, 무단결근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황관리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관리 기준) ①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이 연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등에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등 조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휴가는 조사반별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사반별로 조사반원 모두가 동시에 실시하여 조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급여의 지급 등) ①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출장여비 등 회계경리 업무는 시도 소방본부 회계경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시도 특별조사 상황관리반에 배치된 행정보조인력 등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조사반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관외출장의 경우 3만원, 관내출장의 경우 1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기간제 근로자의 복무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 등 세부운영사항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5 장 시민조사참여단 구성·운영 등

제23조(시민조사참여단의 구성) ① 특별조사반과 함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방서별로 시민조사참여단 인력풀을 구성·운영한다.



- ② 시민조사참여단은 일반참여단과 피난약자참여단으로 구분하여 인력풀을 구성하며, 소방서별 각 3명 이상 4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고, 6개월 마다 인력풀을 새로이 구성한다. 단, 5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력풀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피난약자참여단은 조사대상 특성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시민조사참여단은 소방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명단을 통보하며 일정 조정 등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관리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모집은 일반참여단과 피난약자참여단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선발방법은 참가지원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서류전형으로 한다.
 - ⑥ 시민조사참여단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⑦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시민조사참여단에게 수여한다.
- 제24조(시민조사참여단의 업무) 시민조사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화재안전특별조사가 화재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2. 시민의 눈높이에서 화재안전관련 개선의견 및 아이디어 제안
 - 3.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관련 개선의견 제안
 - 4. 특별조사반의 건물 관계인과의 소통 및 친절성 여부 확인
 - 5. 특별조사활동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화재안전 전반을 조사하는지 여부
 - 6.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
 - 7. 피난약자의 눈높이에 맞게 특별조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8. 지역 화재안전 홍보활동 등 민·관 안전소통의 창구 역할
- 제25조(시민조사참여단의 운영) ① 시민조사참여단은 소방서별 월 2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특별조사반이 편성되지 않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민조사참여단 1회 활동 시에는 1개 대상 이상의 특별조사에 조사반과 함께 특별조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시도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대상(A·B반)은 소방서별로 1회 이상 시민조사참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④ 시민조사참여단 활동 시에는 일반참여단과 피난약자참여단을 포함하여 2~3명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피난약자참여단은 대상물 특성에 따라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26조(시민조사참여단의 수당 지급 등) ① 시민조사참여단이 특별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1회에 6만원 이내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는 해당 소방서 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 ③ 성실하게 시민조사참여단 임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안전보안관 및 의용소방대 선발 시에

우대한다.

- ④ 우수 참여자 및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방청장 등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시민조사참여단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6 장 컨설팅자문단 구성·운영 등

제27조(컨설팅자문단의 구성) 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에 관한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자문단을 각 분야별 10명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② 컨설팅자문단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류 중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경력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컨설팅자문단은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별 분산배치를 고려하여 관련기관이나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한다.

④ 컨설팅자문단은 소방청장이 임명하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컨설팅자문단의 운영) ① 컨설팅자문단은 재택근무를 하고 마이크로페이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답변을 한다.

② 소방청장은 상황관리반으로 하여금 마이크로페이지 질의응답에 대해 자문단 인력풀 중에서 답변이 가능한 자문단원을 지정하고 답변 진행상황을 관리하게 한다.

③ 시도 소방본부장은 컨설팅자문단이 실시한 인터넷컨설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건당으로 계산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건물 화재안전도 평가 등

제29조(평가방법) ① 건물 화재안전도는 특별조사반이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서를 토대로 전산시스템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결과 우수대상(A~B등급)으로 선정된 대상은 전문평가팀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한다.

제30조(전문평가팀 구성) ① 전문평가팀은 대학교수, 소방방재 관련 기술사 등 화재안전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1개팀은 3명으로 구성하고, 조사대상물을 고려하여 시도별 평균 1개팀씩 총 20개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평가팀의 평가인력은 시도 소방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평가인력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운영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워크숍



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1조(전문평가팀 운영) ① 전문평가팀에 의한 평가는 특별조사가 개시된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 1회씩 평가대상 수량에 따라 3 ~ 5일간 실시한다.

② 소방청장은 특별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조사반이 작성한 화재안전특별조사서를 토대로 평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와 전문가의 주관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32조(평가결과 공개) ① 공개대상 건물은 1차 및 2차 평가 결과 우수대상(A~B등급)으로 선정된 대상으로 하고, 점차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② 안전도가 미흡한 건물은 행정처분 이력 등 주요사실만 공개한 후 일정기간을 유예하여 안전도가 개선되면 평가등급을 공개한다. 단, 안전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물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은 전문가 자문 후 유예기간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는 소방시설법 제5조를 개정하여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소방안전정보 DB 및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 이후에 실시한다.

제 8 장 건물 소방안전정보 통합 DB 구축 등

제33조(데이터웨어하우스) ① 소방청장은 건물의 안전관리정보, 화재이력정보, 유관기관 관련정보, 소방점검정보 등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DB화 하거나 연계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② 제1항의 통합데이터웨어하우스에는 기상, 교통, 가스, 전기, 위험물, 에너지, 승강기, 시설물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통합플랫폼) ① 소방청장은 제33조 데이터웨어하우스에 구축된 화재안전관련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별표 1] (단계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소방대응정보조사 대상 (제4조 관련)

구 분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대응정보조사
	1단계 조사 (약172,000개동)	2단계 조사 (약 382,000개동)	3단계 조사 (약 1,465,000개동)
기 간	‘18. 7 ~ 12월 (6개월)	‘19. 1 ~ 12월 (12개월)	‘20. 1 ~ ‘21. 12월 (24개월)
조 사 대 상	① 기숙사 1,907 ② 근린생활 (i) 98,443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일반목욕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극장, 영화관, PC방,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연예장, 음악당,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계일제공업, 학원 ③ 문화집회 (i) 1,159 * 복합멀티영화관*, 극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연예장, 음악당, 예식장, 회의장 ④ 판매시설 6,585 ⑤ 의료시설 4,284 ⑥ 노유자시설 35,221 ⑦ 숙박시설 30,586 ⑧ 위탁시설 7,041 ⑨ 수련시설 1,458 ⑩ 종교시설 (i) 1,076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⑪ 지하가 (i) 96 * 지하상가	① 근린생활 (ii) 193,862 * 일반음식점, 독서실, 도서관, 기타 (학원관련) ② 운수시설 4,026 ③ 교육연구시설 (i) 34,473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 ④ 위험물시설 42,731 ⑤ 지하가 (ii) 1,889(터널) ⑥ 일반복합건축물 (i) 92,701 * ‘19년 근무일 : 249일 - 점검조 : 798개조 - 1일점검 : 조별 2개동 - 연간가능수량 : 363,888개동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동일부지내 위치하여 3개동 점검 가능 / 학교, 체육관, 합숙소 등)	① 아파트 156,576 ② 근린생활(iii) 461,332 * 휴게음식점, 세탁소, 의원, 기타(의료관련), 실내골프장 ③ 문화집회(ii) 6,809 * 마권장의발매소, 집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및 운동장, 기타(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전시 및 박람회장, 전시장 등 ④ 교육연구시설(ii) 16,301 * 대학, 대학교, 기타(학교관련),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⑤ 업무시설 63,671 * 국가청사, 지방청사, 외국공관,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기타(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공회당 등 ⑥ 공장 272,359 ⑦ 창고시설 118,545 * 냉동·냉장창고, 물류창고, 집배송시설, 물류터미널 등 ⑧ 분노 및 쓰레기처리 9,963 ⑨ 교정 및 군사 9,928 ⑩ 방송통신시설 2,135 ⑪ 발전시설 2,584 ⑫ 관광휴게시설 2,950 ⑬ 문화재 7,105 ⑭ 주상복합건축물 99,509 ⑮ 종교시설(ii) 23,487 * 교회, 성당, 사찰, 제실, 사당, 기타(종교관련), 불안당 ⑯ 운동시설 5,204 ⑰ 항공기 및 자동차 18,155 ⑱ 동·식물관련 156,132 ⑲ 묘지관련시설 520 ⑳ 장례식장 639 ㉑ 지하구 1,343 ㉒기타



[별표 2] 특별조사 인력의 자격기준 (제8조제2항 관련)

1) 경력직 (소방, 전기, 가스)

구 분		자격 및 학과
국 가 기 술 자 격	소 방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전 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전기철도기술사·철도신호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철도기사·철도신호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철도산업기사·철도신호산업기사·철도전기신호기능사
	가 스	■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화공기사·화공기술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학분석기능사·화학분석기사
관 련 학 과	소 방	■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전 기	■ 전기과, 전기공학과 등
	가 스	■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의 범위는 해당 학교 교장,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부록

2) 조사보조

구 분	자 격 및 학과
국 가 기 술 자 격	소 방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 축 ■ 건축구조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축목재시공기능장·건축일반시공기능장·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실내건축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전 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전기철도기술사·철도신호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철도기사·철도신호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철도산업기사·철도신호산업기사·철도전기신호기능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가 스 ■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화공기사·화공기술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학분석기능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관 련 학 과	소 방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건 축 건축과, 건축공학과 등
	전 기 전기과, 전기공학과 등
	가 스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 범위는 해당 학교 교장,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 등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3) 행정보조

구 분	국가기술자격
전산	■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3급), 워드프로세서(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ITQ, DIAT, E-test, 문서실무사 등



[별표 3] 조사반별 운영 점검장비 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연 번	품 명	총 수량	점검장비 수량		
			A반 (5명)	B반 (4명)	C반 (3명)
1	휴대용 랜턴	1,653	3	2	2
2	무선송수신기	1,653	3	2	2
3	태블릿PC	798	1	1	1
4	휴대용 공구가방	798	1	1	1
5	헤드걸합랜치	798	1	1	1
6	줄자	798	1	1	1
7	공구세트	798	1	1	1
8	기동관누설시험기	57	1	0	0
9	열연기감지기시험기	798	1	1	1
10	방수압력측정기	798	1	1	1
11	레이저 거리측정기	798	1	1	1
12	풍속풍압계	57	1	0	0
13	폐쇄력측정기	57	1	0	0
14	조도계	798	1	1	1
15	음량계	798	1	1	1
16	누설전류계	798	1	1	1
17	디지털다기능계측기	798	1	1	1
18	가스누설검지기	798	1	1	1
19	적외선열화상카메라	798	1	1	1
20	안전복(조끼)	2,643	5	4	3

(앞쪽)

화재안전특별조사관 신 분 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기관명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쪽)

화재안전특별조사관 신 분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위의 사람은 화재안전 특별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제1기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원 위촉장

참가지역: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

생년월일: 0000. 00. 00

성명: 홍길동

위 사람을 대한민국 제1기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민조사참여단원에 위촉함.

2018. 07.

소방청장

직인

210mg×297mm[백상지150g/m2]

부록

[별지 제3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체크리스트(안)

□ 점검개요

건 물 명		관할 소방서		
점 검 일	20 년 월 일	시 민 참여자	일 반 () 피난약자 ()	(서명)

□ 점검사항

체크항목	예	아니오
1. 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물적 요인 과, 이용자 특성 등 인적 요인 ,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 환경적 요인 을 포함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2.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건물의 화재안전관리가 개선되어 국민안전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이 건물의 건물주 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이 화재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의식 을 갖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
4.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 건물은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 되어 있고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5. 만약,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민간의 초기대응시스템 및 인접한 소방서의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할 때 골든타임 내에 화재 를 진압하고 상주인력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6. 이 건물에 피난약자(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가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만약, 피난약자가 상주하는 건물이라면 피난약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만 응답)	☐ ☐	☐ ☐
7. 이 건물에서 화재발생 및 대형인명피해 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 결여 ② 건물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 결여 ③ 소화재안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부족 ④ 소방관서의 대응역량 등 환경적 요인 미흡 ⑤ 피난약자 다수 거주 등 이용자 특성 ⑥ 기타 ()		
8. 화재안전특별조사 가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술형 기재) ()		
9. 화재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술형 기재) ()		

※ 지면이 부족하면 뒷면에 기재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의견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 마이크로페이지(www.119census.go.kr)에 게재해 드립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사전처분 통지안내)						
점 검 일				점검 소요시간	시간 분	
점 검 자	총 관	(서명)		건 측	(서명)	
	소 방	(서명)		건 측	(서명)	
	소 방	(서명)		전 기	(서명)	
	가 스	(서명)		전 기	(서명)	
관계인	대상명					
	주 소					
	성 명		직 위		전화 번호	
의견진술						
자진개선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① (첨부1)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② (첨부1)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며 ③ 조사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제출처를 참고하여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첨부2) 양식(의견제출서)을 활용하여 20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과,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④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첨부1)을 자진개선기간내에 완료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첨부3)으로 ③의 제출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인)						
(첨부 1)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부록

【첨부 1】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

조사분야	조사결과(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권고사항 (현지시정 등 화재안 전건설팅)		

※ 조사결과 조치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서식 활용 가능



【첨부 2】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록

【첨부 3】 조치명령 전 관계인 개선 사항

조치명령 前 관계인 개선 사항

분야	조사결과 불량내역	조치결과 (증빙서류 또는 사진)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타 (권고사항)		

※ (작성방법) 지적사항 건별로 증빙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서

화재안전특별조사서

I. 건축물 개요

1. 건 물 명					2. 주 용 도					
3. 주 소	도 로									
	명 지 번									
4. 건물구조	주 구 조		지 붕		높 이					
5. 건물규모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층 수					
6. 건축허가	허 가 일		사용승인일		증 개 축 일					
7. 관 할	본 부		소 방 서		안 전 센 터					
8. 다중이용업소 입주현황	☐ 휴게음식점(층, 개소) ☐ 제과점(층, 개소) ☐ 일반음식점(층, 개소) ☐ 단란주점(층, 개소) ☐ 유흥주점(층, 개소) ☐ 영화상영관(층, 개소) ☐ 비디오물감상실(층, 개소) ☐ 비디오물소극장(층, 개소) ☐ 복합영상물제공업(층, 개소) ☐ 학원(층, 개소) ☐ 목욕장업(층, 개소) ☐ 게임제공업(층, 개소) ☐ PC방(층, 개소) ☐ 복합유통게임제공(층, 개소) ☐ 노래연습장(층, 개소) ☐ 산후조리원(층, 개소) ☐ 고시원(층, 개소) ☐ 권총사격장(층, 개소) ☐ 스크린골프(층, 개소) ☐ 안마(층, 개소) ☐ 전화·화상대화방(층, 개소) ☐ 수면방(층, 개소) ☐ 콜라텍(층, 개소)									
9. 건물전체 화재보험	보 험 기 간				회 사 명					
	가 입 금 액	대인(천만원) 대물(천만원)								
10. 화재이력(최근 5년 이내)	☐ 있음	발생일시	인명피해		소실정도		화재원인			
	☐ 없음		사망() 부상()		☐ 전소 ☐ 반소 ☐ 부분소		☐ 실화 ☐ 방화 ☐ 기타			
11. 특별조사(최근 3년 이내)	☐ 있음	일자()	주요지적부분		☐ 소방시설 ☐ 건축방화 ☐ 위험물 ☐ 기타					
	☐ 없음	일자()	주요지적부분		☐ 소방시설 ☐ 건축방화 ☐ 위험물 ☐ 기타					
12. 행정처분(최근 3년 이내)	☐ 있음	일자()	주요지적부분		☐ 소방시설 ☐ 건축방화 ☐ 위험물 ☐ 기타					
	☐ 없음	일자()	주요지적부분		☐ 소방시설 ☐ 건축방화 ☐ 위험물 ☐ 기타					
13. 불법건축물	층수(층) 면적(m ²) 구조() 용도()									
14. 주요시설(해당란 모두 체크)	☐ 소화기구 ☐ 옥내·옥외소화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비상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 ☐ 자동화재속보설비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피난기구 ☐ ☐ 소화용수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연결샬수) ☐ 비상콘센트 ☐ 피난계단 ☐ 방염 ☐ 위험물저장취급									
15. 안전관리등급	A	90점 이상	B	80~89점	C	70~79점	D	60~69점	E	60점 미만

부록

※ 층별현황 (해당란에 모두 체크 / 소방분야에서 체크)

층	층별 용도 특성	특기사항
50 이상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30 이상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9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8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7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6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5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4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3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2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1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0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9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8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7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6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5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4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3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2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1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0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9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8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7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6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5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4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3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2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재난약자시설 ☐ 숙박용도	
-1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2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3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4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5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6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7 이하	☐ 단일용도 ☐ 복합용도 ☐ 다중이용업소 ☐ 주차시설 ☐ 기계/전기 등 설비실	



II. 건축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1.방화 구획	□대상(연면적 1천㎡ 이상)		□미대상(연면적 1천㎡ 미만)			
	층별 방화구획 상태					☐ 3층 이상 층별 구획위반 ☐ 지하층 구획위반
	면적별 방화구획 상태					☐ 10층 이하 1천㎡(SP 3천㎡) 이내 구획 위반 ☐ 11층 이상 2백㎡이내(내장재가 불연재 경우 5백㎡) 구획 위반 * SP설치 상기면적의 3배 ☐ 기타
	용도별 방화구획 상태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 문화 및 집회시설(2백㎡, 전시장 동식물원 5백㎡) 구획위반 ☐ 의료시설(4백㎡)구획위반 ☐ 공동주택(4백㎡) 구획위반 ☐ 기타 구획위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 틈새 상태(내화충전구조 등 FIRE STOP 적정 시 공여부)					☐ 전체 구획 불량 ☐ 틈새발생 등 일부 구획 불량 ☐ 부실충전에 의한 성능 불량 ☐ 기타
	방화구획 관통 덕트에 방화담퍼 설치여부					☐ 방화담퍼 미설치 ☐ 방화담퍼 고장 ☐ 기타
	필 로 티 구 조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				☐ 방화문 미설치 ☐ 기타 방화문 유지관리 미흡
필로티 주차장 방향 건물 개구부 (출입구, 창문 등) 설치 여부					☐ 출입구 설치 ☐ 창문 등 기타 개구부 설치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옥상광장 □헬리포트						
2.피난 시설	공동	복도 유효너비 확보 여부(적치물 등)				☐ 복도 유효너비 미달 ☐ 복도 내 적치물 방치 ☐ 기타
		계단 내 가연물 보관 여부				☐ 시설물 설치 또는 보관 ☐ 기타 쓰레기 등 방치
		직통계단 상호간 통로(복도)로 연결 여부 (1999. 5. 9. 이후 허가 받은 대상에 한함)				☐ 상호간 통로 미연결 ☐ 통로상에 장애물 설치, 방치
		자동문, 출입통제시설 등 화재 시 자동개방 여부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 및 다중이용업소 출입구에 한함)				☐ 자동화제압지설비와 연동 불량 ☐ 정전 시 수동개방 불가능 ☐ 기타
		옥상 자동문 개방장치가 KFI 인증품 여부 (2016.2.29. 이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에 한함)				☐ 타사 인증품 사용 ☐ 기타 미인증 등
		주출입구에서 도로로 통하는 통로 확보 여부				☐ 통로 미확보 ☐ 통로 상 장애물 방치
		옥상으로 피난 가능 여부				☐ 옥상 출입문 시건 등 ☐ 기타 옥상 내 장애물 방치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 불법주차 등 진입 장애

부록

II. 건축분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 내역
2. 피난 시설	특별 피난 계단	계단실, 부속실 방화구획 및 방화문 설치 상태(1층 포함)				☐ 1층 방화문 미설치 ☐ 1층 부속실 미설치 ☐ 방화문 제거 또는 훼손 ☐ 방화문 설치장소에 방화셔터 설치 ☐ 부속실 타용도로 사용 ☐ 기타
		계단실, 부속실의 실내마감 불연재 여부				☐ 가연성 시트지 부착 ☐ 아크릴, 목재 광고판 등 부착 ☐ 기타
	피난 계단	계단실 방화구획 및 방화문 설치 상태(1층 포함)				☐ 1층 방화문 미설치 ☐ 방화문 제거 또는 훼손 ☐ 방화문 설치장소에 방화셔터 설치 ☐ 기타
		계단실의 실내마감 불연재 여부				☐ 가연성 시트지 부착 ☐ 아크릴, 목재 광고판 등 부착 ☐ 기타
	옥외 피난 계단	옥외피난계단 유지관리 상태				☐ 출입구 폐쇄 등 사용불가 ☐ 부식 또는 노후 ☐ 기타(부식 등)
	옥상 광장	옥상광장 유지관리 상태				☐ 출입문 폐쇄(잠금) ☐ 물건적치 ☐ 기타
	헬리 포트	헬리포트 유지관리 상태				☐ 출입문 폐쇄(잠금) ☐ 난간 미설치 ☐ 계단 부식(노후) 등 사용곤란 ☐ 기타
	☐ 방화문 설치[방화구획용 및 (특별)피난계단실 출입구] ☐ 미설치					
	방화문 성능인증 여부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지					☐ 피난반대방향으로 열림 ☐ 피난방향이나 장애물 존재 ☐ 기타
3. 방화문	도어클로저 등 자동폐쇄장치 작동 여부					☐ 미설치 또는 탈락 ☐ 미결합, 미작동, 락장치 설치 ☐ 기타
	자동폐쇄가 되지 않는 방화문 개폐 상태					☐ 항상 열림상태로 관리 ☐ 기타 고정장치로 고정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 설치 여부					☐ 유리문 등 덧문 설치 ☐ 말발굽, 고임목, 고정근 설치 ☐ 시건, 비품방치 등 사용장애 ☐ 자물쇠, 번호키 등 잠금장치 설치 ☐ 기타
	방화문이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노후, 변형 등)					☐ 방화문 노후, 변형 ☐ 방화문 틈새발생 ☐ 기타
	방화문을 시트지 등으로 완전히 감싸는 등 과도 한 장식 여부					☐ 가연성 시트지 부착 ☐ 아크릴 광고판 등 부착 ☐ 기타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지 여부 (불꽃, 온도, 연기 등을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에 한함)					☐ 자동화제탐지설비 연동 불량 ☐ 완전단협 장애발생 ☐ 기타



II. 건축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4.방화 셔터	☐ 방화셔터 설치 ☐ 미설치				
	방화셔터 성능인증 여부	☐ 인증 ☐ 미인증 ☐ 확인불가			
	셔터로부터 3M 이내 갑종방화문 설치 여부(일체형제외)				☐ 방화문 미설치 ☐ 3M 거리 초과 ☐ 기타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여부 (2005.7.27. 이후 설치대상에 한함)				☐ 1단 강하방식 부적합/미작동 ☐ 2단 강하방식 부적합/미작동 ☐ 레일 훼손, 전동기 불량 등으로 인한 폐쇄 불량 ☐ 기타
	일체형 방화셔터 출입문 개폐 상태				☐ 틈새 등 개폐상태 불량 ☐ 피난 반대방향으로 설치 ☐ 피난구유도등·유도표지 미설치 ☐ 셔터 부분과 출입구 미구분 ☐ 기타
	셔터 하부 물품 적재 등으로 인한 작동에 장애 여부				☐ 하단 장애물품 방치 ☐ 기타 제어반 등 유지관리 미흡
5.마감재	외벽에 설치되는 외부마감재료 성능 (허가년도 서류확인)	☐ 불연 ☐ 준불연 ☐ 난연 ☐ 확인불가			
	외단열재 노출(파손 등)	☐ 노출 ☐ 비노출 ☐ 파손 ☐ 기타			
	스티로폼 등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드라이비 트 공법 적용 유무	☐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 미적용 ☐ 확인불가			
	거실 벽, 천정(반자)의 마감재료 성능 (허가년도 서류확인)	☐ 불연 ☐ 준불연 ☐ 난연 ☐ 확인불가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 성능(허가년도 서류확인)	☐ 불연 ☐ 준불연 ☐ 난연 ☐ 확인불가			
6.내화 구조	주요구조부가 철골구조인 경우 내화피복의 관리 상태 (지하주차장 등 노출된 부분만 실시)	☐ 양호 ☐ 불량 ☐ 확인불가			
7.내진 설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 내진설계 ☐ 비설계 ☐ 확인불가			
8.주차장	☐ 필로티주차장 ☐ 지하주차장	☐ 옥상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대)	주차대수(대)	주차대수(대)	주차대수(대)	
9.불법 건축물	☐ 없음 ☐ 있음(위치: 층, 용도: , 구조: 면적 m ²)				
10.특수 물질취급	실험실 등 폭발위험물질 취급	☐ 없음 ☐ 있음(위치 층, 취급물질 :)			
	방사성 물질 취급	☐ 없음 ☐ 있음(위치 층, 용도 :)			

부록

IV. 전기분야

■ 시설개요

시 설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비개요	수전설비 : V/ kW, 발전설비 : V / kW		
안전관리자	상 주	업체명 :	/ 성명 :
	대 행	업체명 :	/ 성명 :

III.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 내역
1. 자체 안전관리 분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적정성(선임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미선임 ☐ 미신고 ☐ 실무교육 미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 기사 ☐ 기타) ☐ 소방안전관리자수첩 ☐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선임 ☐ 타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검직) ☐ 기타			
	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여부					☐ 소방계획서 미작성(미보관) ☐ 소방계획서 내용 미흡 ☐ 기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여부	작동 기능 점검				☐ 미실시 ☐ 거짓 또는 부실점검 ☐ 작동기능점검표 미보관 ☐ 점검기록표 미부착 ☐ 기타
		종합 정밀 점검				☐ 미실시 ☐ 거짓 또는 부실점검 ☐ 종합정밀점검표 미보관 ☐ 점검기록표 미부착 ☐ 기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여부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여부					☐ 미실시(세부점검표 미보관) ☐ 세부점검표 내용 미흡 ☐ 기타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 미실시 ☐ 실시결과기록부 미보관 ☐ 참석자현황 미작성 ☐ 기타
2. 소화기구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여부		☐ 실시(☐ 특급 ☐ 1급 ☐ 공공기관 ☐ 노유자시설 ☐ 요양병원, ☐ 기타), ☐ 미실시			
	설치 장소·거리 적정성					☐ 은폐장소에 비치 ☐ 구획된 실(33㎡ 이상) 마다 미비치 ☐ 화재등급에 부적절한 소화기배치



III.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3. 자동 소화 장치						☐ 보행거리 미충족	
	소화기 유지·관리 여부					☐ 안전핀 고정 상태 부적정 ☐ 지시압력계(충압) 부적정 ☐ 내용연수 10년 초과 ☐ 기타	
	수신반 전원 이상 유무					☐ 수신반 상용전원 공급 불량 ☐ 수신반 자체 고장 ☐ 기타	
	감지기(탐지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 천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 수신반과 배선 단선 ☐ 기타	
3. 자동 소화 장치	음향장치의 음량 적정 여부					☐ 음향장치 출력 불량 ☐ 기타	
	열원(가스, 전기) 자동차단장치 작동 여부					☐ 수동기동 시 작동 불량 ☐ 기타	
	가압송수장치 종 류	주펌프	☐ 전 동 기	보조(충압)	☐ 전 동 기	에비 펌프	☐ 전 동 기
			☐ 내연기관		☐ 면 제		☐ 내연기관
4. 수계 소화 설비 (공통)	수원 및 약제량(포소화설비) 적정 여부					☐ 수원 저수량 미확보 ☐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 배관의 흡수구 설치위치 불량 ☐ 플루팅 스위치 고장에 따른 급수불량 ☐ 불탐고장에 따른 자동급수 이상 ☐ 기타	
	소화수 공급배관 차단(폐쇄) 여부 확인					☐ 급수배관 차단(폐쇄) ☐ 급수배관 T/S 미설치 ☐ 기타	
	가압송수장치 정상 작동여부					☐ 자동기동 불량 ☐ 수동기동 불량 ☐ 설비별 펌프 표기 미표시 ☐ 전동기펌프 전원공급 불량 ☐ 전동기펌프 모터 고장 ☐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고장 ☐ 엔진펌프내 점화스위치 고장 ☐ 엔진펌프 냉각장치 고장에 따른 과열발생 ☐ 기타	
	동력 및 감시 제어반 관리 상태 (자동, 수동, 정지 상태 여부 등)					☐ 각 펌프 자·수동 기동 불량 ☐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 동력제어반 표지 미표시 ☐ 감시제어반 회로이상(단락, 단선 등) ☐ 기타	

부록

III.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 내역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설치장소 방화구획 여부 (비상조명등, 급배기시설 설치 여부 포함)					☐ 방화구획 미비 (방화문 관리상태, 벽 관통부 등) ☐ 비상조명등 미설치 ☐ 기타
	송수구 관리상태 및 소방차 접근 여부					☐ 송수구 접근에 어려움 ☐ 송수구 설치위치 불량(높이) ☐ 송수구 마개 미설치 ☐ 송수압력범위 미표시 ☐ 송수구 내 쓰레기 삼입 ☐ 기타
	비상전원 관리상태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기타 (비상전원수전설비 등)				☐ 비상전원 연료 부족 ☐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불량 ☐ 축전지 불량 ☐ 기타
5. 옥내/옥외 소화전	소화전합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 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 위치표시등 캡 탈락 ☐ 펌프 기동표시등 미점등 ☐ 기타
	소화전합내 호스, 노즐 등 관리상태					☐ 호스 및 노즐 결합상태 불량 ☐ 호스 고착 ☐ 소화전 사용방법 미부착 (외국어병기 포함) ☐ 호스 및 노즐 미비치(수량부족) ☐ 기타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없는지 여부					☐ 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 소화전 문개방 불가 ☐ 기타
6. 포소화설비	포 혼합장치 정상 작동여부					☐ 포 혼합장치 작동불량 ☐ 포 약제량 부족 ☐ 기타
7. (간이) 스프링클러 / 미분무 / 포소화전설비	설치장소	☐ 전층 ☐ 주차장 ☐ 일부층()				
		☐ 습식 ☐ 준비작동식 ☐ 건식 ☐ 일제개방밸브 ☐ 캐비넷형(간이)				
	유수검지장치	접근 및 점검의 용이성				☐ 접근불량 및 공간 미확보 ☐ 유수검지장치실 표기 미표시 ☐ 보호용 철망 등으로 미구획 ☐ 기타
		개폐밸브 관리 상태				☐ 개폐밸브 폐쇄 ☐ 밸브 폐쇄 시 T/S 동작 불량 ☐ 개폐밸브 부식 ☐ 기타
		배수밸브, 시험배관, 감지기 또는 기동장치 작동시 작동여부				☐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불량 ☐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불량 ☐ 화재감지회로 이상(단선, 단락) ☐ 기타



III.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음향장치 정상 작동여부				☐ 방호구역 내 음향장치 출력 불량 ☐ 감시제어반 부지 출력 불량 ☐ 기타
	헤드	설치장소별 헤드 적정성 여부(공동주택, 노유자, 침실, 입원실 등)				☐ 헤드 적정성 불량(조기반응형) ☐ 헤드의 누락(미설치) ☐ 기타
		헤드감열 및 살수 분포의 방해를 설치여부				☐ 페인트 등에 의한 헤드 도색 ☐ 헤드 살수반경 미확보 ☐ 헤드 천정 등 매립 ☐ 차폐판 미설치 ☐ 헤드 설치위치 부착면으로부터 30cm 초과 ☐ 기타
	동결 또는 부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					☐ 방호조치 불량 ☐ 배관 및 밸브 등 부식 ☐ 기타
	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되었는지 여부					☐ 배관 및 밸브 등 변형·손상·부식 ☐ 기타
8. 가스계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기동용기 조작장치(솔레노이드)직결 여부					☐ 솔레노이드에 안전핀 체결 ☐ 솔레노이드와 기동용기 분리 ☐ 기타
	기동관의 가스체크밸브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가스체크밸브 설치위치 불량 ☐ 가스체크밸브 방향 부적정 ☐ 기타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의 정상작동여부					☐ 감지기 동작 불량(단선포함) ☐ 감지기 교차회로 미구성 ☐ 수동조작함 수동스위치 동작불량 ☐ 기타
	방출표시등 작동 이상 유무					☐ 방출표시등 미설치 ☐ 압력스위치 동작 시 방출표시등 미점등 ☐ 기타
	음향경보장치(사이렌) 정상작동여부					☐ 감지기 동작시 음향경보장치 미출력 ☐ 수동조작함 개방시 음향출력 불량 ☐ 음향경보장치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 기타
	소화약제량 이상 유무					☐ 소화약제량 손실량 5% 초과 ☐ 약제저장용기 액위량 미표시 ☐ 기타
	비 상 전 원 관 리 상 태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기타 (비상전원수전설비 등)				☐ 비상전원 연료 부족 ☐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불량 ☐ 축전지 불량 ☐ 기타

부록

Ⅲ.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9. 경보 설비	비상 경보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P형 수신기 □P형 수신기(기록장치 내장) □R형 수신기			
		수신기 고정·외형상태 및 조작 용이성 여부			□수신기 주변 장애물 적치 □수신기 고정 불량 □수신기 설치높이 불량 □스위치 파손 변경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기타
		수신기 방화구획 장소 설치여부 (근무자 상시 근무여부 포함)			□방화구획 장소에 미설치 □상시 근무장소에 미설치 □기타
		수신기 자동설정 여부 (주경종, 지구경종, 부저 등)			□수신기 화재신호 입력상태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발신기, 경종, 표시등 이상 유무			□발신기 위치표시등 점등불량 □발신기 위치표시등 캡 탈락(파손) □발신기 누름스위치 동작불량 □발신기 응답표시등 미점등 □지구경종 출력 불량 □지구경종 음량크기 부족 □기타
		음향장치의 적정성 여부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감지기 설치 및 적응성 적정여부 (감지기 누락포함)			□감지기 미설치 □감지기 탈락 □감지기 적응성 불량 □감지기 동작 불량 □감지기 송배전방식 미적용 □감지기 회로 단선 □기타
		예비전원(충전지설비) 상태			□예비전원 충전 불량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불량 □예비전원 용량부족 □기타
	비상 방송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여부 (타 방송차단 및 연동관리 상태 포함)			□비상방송설비 전원공급 차단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불량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화재시 자동으로 화재안내 방송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 불량 □화재신호 입력 시 10초 이내 방송출력 불량 □기타
	속보 설비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로 통보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관리 상태 포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공급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불량 □기타



III.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0. 피 난 비 설	유도등	출입구 및 비상구, 계단참 등에 유도등 설치 여부(크기 적정성 여부 포함)				☐ 유도등 미설치 ☐ 유도등 적응성 불량(피난구,통로) ☐ 유도등 크기 부적정 ☐ 기타
		유도등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여부(피난방향이 인지 되는지 여부)				☐ 유도등 인식불가(장애물 등) ☐ 유도등 적응성 불량(방향 포함) ☐ 기타
		유도등 상시 점등 여부(3선식의 경우 화재시 점등 여부)				☐ 전원 미인가(차단기 고장 등) ☐ 유도등 기구불량 ☐ 유도등 점등불량 ☐ 기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변형·탈락·누락 여부				☐ 유도등(표지) 미설치 ☐ 유도등(표지)의 불량(파손 등) ☐ 기타
		비상전원 적정성 여부				☐ 비상전원 없음 ☐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 기타
	비 조 명 등	설비위치의 적정여부				☐ 피난통로상 미설치(복도, 계단 등) ☐ 기타
		점검스위치 등 관리상태				☐ 점등불량(조도 1lx 미만 포함) ☐ 점검스위치 작동불량 ☐ 기타
		예비전원 적정여부(내장형에 한함)				☐ 예비전원 불량(방전 등) ☐ 기타
	피 난 기 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대 ☐ 승강식피난기 ☐ 기타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 유무				☐ 표지 미부착 ☐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 기타
		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파손·변형 유무				☐ 피난기구 불량(작동, 길이 등) ☐ 고정장치 불량(부식 등) ☐ 기타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충광식 표시 부착여부 포함)				☐ 피난기구의 부적응성 ☐ 개구부 사용 장애(미확보 등) ☐ 착지면의 확보 ☐ 밀폐창 파괴장치 미비치 ☐ 기타
11. 소 화 수 설	소화용수의 규정수량 확보 여부					☐ 규정수량 미확보 ☐ 규정수량 부족(확인불가 포함) ☐ 기타
	소방차 접근가능 상태는?					☐ 진입도로 없음 ☐ 불법 주·정차로 접근곤란 ☐ 기타
	흡수관 투입구의 뚜껑 등 개폐 용이성 여부					☐ 투입구 위치과악 불가 ☐ 투입구 개폐불가(부식 등) ☐ 기타

부록

III.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펌프기동장치 정상 작동유무					☐ 펌프기동장치 작동불량 ☐ 펌프고장 ☐ 기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위치표시 적정성 여부					☐ 위치표시 미표시 ☐ 위치표시 설치위치 부적정 ☐ 기타
12. 제 연 비	☐ 거실제연 ☐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승강기					
	거실제연	제연경계벽(고정, 가동벽) 상태				☐ 제연경계벽 미설치 ☐ 제연경계벽 작동불량 ☐ 기타
		공조겸용인 경우 화재시 공조설비가 제연설비로 자동변환 여부				☐ 제연설비로 자동전환 불량 ☐ 기타
		각 제연구역의 공기 유입구 파손, 변형, 장애물 유무(내부구조 변경 등)				☐ 공기유입구 파손(변형) ☐ 공기유입구 앞 장애물 적치 ☐ 제연구역 임의변경 ☐ 기타
	부 속 실 제 연	출입문(방화문, 창문) 자동폐쇄 여부				☐ 출입문 작동불량(훼손 등) ☐ 출입문 완전폐쇄 불량 ☐ 자동폐쇄장치 불량 ☐ 기타
		차압계(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댐퍼 포함)의 정상작동 여부				☐ 차압계 작동불량(미표시) ☐ 차압계 오작동(수치 상이 등) ☐ 기타
		제연설비 작동시 출입문 개방 가능여부(110N 이하)				☐ 출입문 개방불가 ☐ 기타
	공동사항	비상 전원 관리 상태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없음 ☐ 연료부족 ☐ 비상전원 불량(축전지 방전 등) ☐ 기타
13. 연 결 송수관 / 연 결 설 비	소방차의 접근 용이성 여부					☐ 도로폭 4m 이하 ☐ 불법 주·정차로 접근 곤란 ☐ 기타
	송수구 표지 및 송수구역 등을 명시한 계통도의 적정여부					☐ 송수구역 계통도 미부착 또는 부적정 ☐ 이물질 및 호스 결합부 손상 ☐ 기타
	가압송수장치 이상 유무 상태					☐ 가압송수장치 작동불량 ☐ 가압송수장치 성능미달 ☐ 기타
	방수용기구함내 호스, 노즐 등 보관 상태 (축광식표지 부착여부 포함)					☐ 호스(2본) 및 노즐 미보관 ☐ 함 축광식표지 미표시 ☐ 기타



III.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헤드 파손, 탈락 및 살수장애 여부				☐ 헤드 파손(탈락 등) ☐ 헤드 살수장애 ☐ 헤드 누락 ☐ 기타
14. 비 상 콘센트 설 비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 함 문개방 불가 ☐ 함 전원 미인가 ☐ 기타
	보호함 표면의 “비상콘센트” 표지 상태				☐ 표지 미부착 ☐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 기타
	보호함 표시등 점등 상태				☐ 표시등 없음 ☐ 표시등 점등불량 ☐ 기타
	비상전원 이상 유무				☐ 비상전원 없음 ☐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 기타
15.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유지관리 상태				☐ 위치파악 불가 ☐ 접근장애(장애물, 개폐불가 등) ☐ 기타
16. 피난 방화 시설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 방화문(셔터)의 폐쇄 ☐ 방화문(셔터)의 훼손 ☐ 기타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 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 기타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 타 용도로 이용 ☐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구조적 임의변경 ☐ 기타
17. 방염 물품	☐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 비대상				
	커튼, 실내장식물 등 방염처리 여부				☐ 전체 방염 미처리 ☐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 기타
	가연성 소파, 침대, 매트리스 방염처리 여부				☐ 전체 방염 미처리 ☐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 기타
18. 화기 취급 시설	건축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질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 상태				☐ 이격거리 부적정(1m 이내) ☐ 기타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채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여부				☐ 가연성 가스(증기)의 누설 ☐ 가연성가스(증기)의 채류 ☐ 기타

부록

Ⅲ.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연료탱크가 연소기로부터 2m이상의 수평 거리 확보 상태					☐ 이격거리 부적정(2m 이내) ☐ 기타
19.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미선임 ☐ 실무교육 미이수 ☐ 기타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 가연성 물질의 방치 ☐ 경고표시 미표시 ☐ 기타
	차광 및 환기 설비 관리상태					☐ 설비 미설치(차광, 환기등) ☐ 설비 작동 불량 ☐ 기타
	보호액속에 보존되어야 할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 위험물의 외부보관 ☐ 보호액의 부족 ☐ 기타
	기름찌꺼기나 폐액 방지 여부					☐ 기름찌꺼기 등 임의방치 ☐ 기타
	1류	위험물과 가연물과의 접촉 또는 혼합, 분해 촉진에 대한 방지조치 여부				☐ 접촉방지 미조치 ☐ 접촉방지 유효성 불량 ☐ 기타
	2류	산화제와의 접촉 방지조치 여부				☐ 접촉방지 미조치 ☐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 기타
	3류	물과의 접촉방지에 대한 조치 여부				☐ 접촉방지 미조치 ☐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 기타
	4류	인화 위험성 방지조치 여부				☐ 접촉방지 미조치 ☐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 기타
	5류	점화원, 가열, 충격, 마찰 등 방지조치 여부				☐ 접촉방지 미조치 ☐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 기타
	6류	가연물 접촉 방지 조치 여부				☐ 접촉방지 미조치 ☐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 기타
20. 소 방 활동에 관 한 사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설비 활용시 장애 여부					☐ 설비 작동불량 ☐ 접근 장애(장애물 적치 등) ☐ 기타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여부					☐ 불법 주·정차 다수 ☐ 이면도로 미확보 ☐ 기타
	연소 확대요인 여부 (인접건물 현황 등)					☐ 대지경계선 안에 둘이상의 건축물 ☐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하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에 향함 ☐ 기타



III.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여부				☐ 다중이용업소 3개소 이상 ☐ 수용인원 100인 이상 ☐ 기타
	인명구조 및 피난활동 장애 여부				☐ 건축물 진입로 2개소 미만 ☐ 기타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 자위소방대 미조직 ☐ 형식적인 자위소방대 조직 ☐ 기타
	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접근 여건				☐ 도로폭 4m 이하 ☐ 불법 주·정차 다수 ☐ 기타
21. 이용자 특 성	1일 수용인원(☐ 10명미만 ☐ 10명이상 ☐ 50명이상 ☐ 100명이상 ☐ 500명이상 ☐ 1,000명이상)				
	연령별 비율 (100%)	☐ 어린이 (취약전)	☐ 청소년	☐ 성인	☐ 노인
	성별 비율 (100%)	☐ 남성		☐ 여성	
22. 관리자 특 성 (관리자)	연령별	☐ 성인(65세 미만)		☐ 노인(65세 이상)	
	성별	☐ 남성		☐ 여성	
23. 관 할 소방서 거 리	119안전센터	☐ 2km 이하	☐ 2~5km 이하	☐ 5~10km 이하	☐ 10km 초과
	소방서(구조대)	☐ 2km 이하	☐ 2~5km 이하	☐ 5~10km 이하	☐ 10km 초과
24. 관할119센터 출동로 상 상습정체구간 존재 여부 (러시아워 포함)				☐ 많음 ☐ 보통 ☐ 낮음 ☐ 없음	
25.주변 공설소화전과의 거리		☐ 50m 이하	☐ 100m 이하	☐ 150m 이하	☐ 200m 이하 ☐ 200m 초과
26. 주 변 도 로 여 건	건물진입 도로폭	☐ 4m 이하 ☐ 4 ~ 6m 이하 ☐ 6m 이상			
	8t이상 대형소방차 건물 인접 부서 가능 여부	☐ 다수차량 부서 가능 ☐ 소수차량 부서 가능 ☐ 불가			
	건물 진입로 평시 불법주차 등	☐ 많음(중대 장애) ☐ 적음(일부 장애) ☐ 없음			
	건물 4개면 작전 전개 가능성	☐ 1면 가능 ☐ 2면 가능 ☐ 3면 가능 ☐ 4면 가능			
27.숙박여부(이용자)		☐ 숙박 ☐ 비숙박		28.숙박여부(관리자)	
				☐ 숙박 ☐ 비숙박	

부록

Ⅲ.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 내역
29.화재 시 인접건물 연소확대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없음
30.화재 시 인접입야 연소확대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없음
31. 중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애요인	☐ 필로티주차장 ☐ 통유리 등 살수·파괴·진입 장애 ☐ 가연성 외장재 ☐ 내부 가연물 다량 ☐ 배연 곤란 ☐ 단일 피난구 ☐ 내부구조 복잡 ☐ 중증환자 ☐ 영유아 이용자 ☐ 고령노인 ☐ 낮음(없음)				
32. 외상환자 있는 병원·요양원 등의 경우 침대로 피난할 수 있는 적정 경사로 존재 여부		☐ 적정	☐ 통로 폭 협소	☐ 없음	
33. 야간 근무자	☐ 노인 (65세이상) 명 ☐ 청장년 명 ☐ 여성 명 ☐ 남성 명				



■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내역
1.인입선	가공인입선 규격전선(단면적 4㎟이상) 사용 여부 -절연전선(DV, OW), 다심형 전선, 케이블				☐ 단면적 4㎟미만 전선사용 ☐ 계약전력 대비 전선용량 부족 ☐ 규격전선 미사용 ☐ 기타
	지중인입선 케이블 사용 여부				☐ 케이블 미사용 ☐ 계약전력 대비 전선용량 부족 ☐ 기타
	인입구 접속점 열화 및 피복손상 여부				☐ 접속점 열화 ☐ 피복손상 ☐ 기타
	인입선, 연접인입선 공사방법 적정여부				☐ 공사방법 부적정 ☐ 기타
2. 인입구 배 선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장치까지의 중간 접속점(전선연결) 여부				☐ 중도 접속점 시공 ☐ 충전부 노출 ☐ 기타
	전선 접속상태 및 피복손상 여부				☐ 접속 상태 불량 ☐ 피복손상 ☐ 기타
3. 인입구 개폐기	인입선 입구에서 가깝고, 쉽게 개폐 가능한 곳에 설치 여부				☐ 개폐기 미설치 ☐ 기타
	다선식 전로의 각 극에 설치 여부				☐ 각 극 개폐장치 미설치 ☐ 기타
	개폐기 용량 적정 및 이상(과열, 손상 등) 여부				☐ 개폐기 용량 부적정 ☐ 접촉불량(과열, 손상) ☐ 기타
	옥외(건물외부)에 시설할 경우 방수형 또는 방수함 내에 시설 여부				☐ 방수형, 방수함 미사용 ☐ 기타
	접지시설 적정 여부				☐ 금속제 외함 미접지 ☐ 접지 기준치 초과 ☐ 규격전선 미사용 ☐ 접지선 탈락 ☐ 기타
4. 간 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적정 여부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				☐ 정격전류 과대 ☐ 기타
	과전류차단기 차단용량 적정 여부				☐ 차단용량 부족 ☐ 기타
	과전류차단기 설치상태 등 적정 여부				☐ 설치상태 부적정 ☐ 과전류차단기 파손 ☐ KC인증 제품 미사용 ☐ 기타

부록

IV. 전기분야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내역
5. 배전반 / 분전반	옥내 배분전반 불연성 또는 난연성 사용 여부				☐ 난연성 · 불연성 제품 미사용 ☐ 기타
	옥측·옥외 배분전반의 방수형 여부				☐ 방수형 제품 미사용 ☐ 기타
	노출 충전부 배·분전반의 취급자 이외의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 여부				☐ 외부인 출입가능 ☐ 기타
	한 개의 분전반에 두 가지 전원을 공급할 경우 격벽 설치 및 사용전압 표시 여부				☐ 격벽 미설치 ☐ 사용전압 미표시 ☐ 기타
	설치위치 적정 여부(은폐장소, 고위치, 적치물 등)				☐ 은폐장소 시설 ☐ 고위치 설치 ☐ 배분전반 적치물 등으로 점검불가 ☐ 기타
	접지시설 적정 여부				☐ 금속제 외함 미접지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접지선 용량 부족 ☐ 규격전선 미사용 ☐ 접지선 탈락 ☐ 기타
	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부스바 등 접속상태				☐ 접속상태 불량 ☐ 기타
	배·분전반 분진·부식·누수 여부				☐ 부식·누수 심각 ☐ 기타
6. 절연저항	절연저항 측정 결과 이상 여부 (측정가능 개소)				☐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기계기구) ☐ 기타
7. 개폐기 / 차단기	주개폐기 설치 여부(분기 개폐기수 6개 초과)				☐ 주 개폐기 미설치 ☐ 기타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옥실 등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 누전차단기 손상 ☐ 누전차단기 오결선 ☐ 기타
	누전차단기 동작이상 여부(가능개소)				☐ 동작상태 불량 ☐ 기타
	정격소비전력 3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개폐기 설치 여부				☐ 전용개폐기 미설치 ☐ 기타
	개폐기·차단기 용량 적정 여부				☐ 정격전류 과대 ☐ 정격용량 부족 ☐ 역부작 ☐ 오결선 ☐ 기타
	차단기·개폐기 이상 여부 (과열, 손상 등)				☐ 과열·접속상태 불량 ☐ 기타



IV. 전기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내역
8. 옥내외 배선 (간선 포함)	옥내배선 최소 굵기 2.5㎟이상 여부 (부하전류 이상 허용가능 여부)				☐ 단면적 2.5㎟미만 사용 ☐ 규격전선 미사용 ☐ 비닐코드배선 사용 ☐ 기타
	공사방법 적정 여부 (난연성, 불연성, CD관 사용, 배선시설방법 등)				☐ 일반 CD관 사용 ☐ 난연성, 불연성 미사용 ☐ 공사방법 부적정 ☐ 기타
	전선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손상 여부				☐ 전선 접속상태 불량 ☐ 전선 열화 ☐ 전선 피복 손상 ☐ 기타
9. 조명 시설	조명시설의 충전부 노출이 없도록 시설 여부				☐ 충전부 노출 ☐ 기타
	전선구 또는 이동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고무코 드 또는 캡다이어케이블 사용 여부				☐ 규격전선 미사용 ☐ 전선 접속상태 불량 ☐ 전선 열화 ☐ 전선 피복 손상 ☐ 기타
	옥외에 시설하는 조명기구, 방전용안정기, 콘센트의 방수형 여부				☐ 방수형 제품 미사용 ☐ 콘센트 파손 ☐ 기타
10. 간판등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누전차단기 동작 불량 ☐ 누전차단기 용량 부적정 ☐ 기타
	간판등 인출선은 이동전선에 준하여 시설(방 습, 캡다이어코드, 케이블) 여부				☐ 규격전선 미사용 ☐ 전선 접속상태 불량 ☐ 전선 열화 ☐ 전선 피복 손상 ☐ 기타
11. 배선 기구 및 이동 전선	충전부 노출 배선기구 사용여부				☐ 충전부 노출 ☐ 기타
	습기, 물기 있는 장소의 방습형 시설여부				☐ 방습형 제품 미사용 ☐ 기타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시설 여부				☐ 접지극 콘센트 미사용 ☐ 콘센트 손상·파손 ☐ 기타
	배선기구 파손 및 빗물이나 물에 젖을 우려가 없는지 여부				☐ 배선기구 파손 ☐ 빗물 등 물기 투입 우려 높음 ☐ 기타
	이동전선 사용 적정 여부				☐ 규격전선 미사용 ☐ 전선 접속상태 불량 ☐ 전선 열화 ☐ 전선 피복 손상 ☐ 기타

부록

IV. 전기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내역
12. 전열기 등 기계기구	KC 표시품 또는 KS품 사용여부				☐ KC 표시품 및 KS품 미사용 ☐ 기타
	전기기계기구 접지시설 여부				☐ 금속제 외함 미접지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접지선 용량 부족 ☐ 규격전선 미사용 ☐ 접지선 탈락 ☐ 기타
13. 비상용 발전설비	발전기 무부하 운전 상태				☐ 기동불가 ☐ 출력전압 불량(±2%초과) ☐ 주파수 불량(+5%초과) ☐ 비상정지장치 불량 ☐ 기타
	절연저항(발전기코일-대지) 측정 결과 이상 여부				☐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 기타
	자동절체스위치(ATS) 설치 상태				☐ 각극 개폐 불가 ☐ 기타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 축전지 상태 불량 ☐ 축전지 출력 단자전압 불량 ☐ 충전기 작동상태 불량 ☐ 기타
	차단기 및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 차단기 미설치 ☐ 차단기 정격전류 과대 ☐ 차단기 정격용량 부족 ☐ 보호장치(계전기) 설치 상태 및 동작 상태 불량
	접지시설 적정 여부				☐ 미접지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접지선 탈락 ☐ 규격전선(접지선굵기) 미사용 ☐ 기타
	기타 발전기 상태				☐ 지시계기 및 램프 시설상태 불량 ☐ 연료유 계통 불량(누유 등) ☐ 윤활유 계통 불량(유온, 유압 등) ☐ 냉각수 계통 불량(누수, 수온 등) ☐ 발전기 각 부위 누유 및 누수 ☐ 배연설비 불량 ☐ 기타
14. 종합의견					



V. 가스분야

■ 시설개요

업 소 명		대 표 자	
주 소		공 급 자	
사용가스	☐ LPG ☐ 도시가스 ☐ 고압가스 ☐ 기타(휴·폐업, 가스미사용)	연 락 처	
저 장 량 (월사용예정량)		안전관리자	

■ 점검내용

※ 고/L/도 :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해당 시설만 체크할 것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배치기준>					
1 (공 통)	○ 저장설비 등 화기와의거리 유지여부 확인 - LPG (저장설비, 감압설비 및 배관은 화기 취급 장소까지 1톤 미만 2m,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이상의 우회 거리 유지(단, 주거용은 2m) 또는 유동방지사설 등 설치) - 고압가스 :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우회거리 8m(산소 저장설비는 5m)) - 도시가스 : (가스계량기 또는 입상관과 화가와 2m 이상 유지)				☐ (LPG) 화기와의 거리 미유지 ☐ (고압가스) 화기와의 거리 미유지 ☐ (도시가스) 화기와의 거리 미유지 ☐ 기타
2 (L/ 도)	○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 이격거리 유지 여부 확인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cm 이상, 비단열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cm 이상, 비절연전선 15cm 이상 거리유지)				☐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거리 미유지 ☐ 비단열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와 거리 미유지 ☐ 비절연전선와 거리 미유지 ☐ 기타
<저장설비 기준> * LPG만 해당					
3 (L)	○ 용기 옥외설치 및 용기보관실 설치 적정성 확인 (용기집합설비 및 용기 옥외설치, 용기보관실 설치(저장능력 100kg 이하는 미설치))				☐ 용기 옥내 설치 ☐ 용기보관실 미설치 ☐ 용기보관실 불연재료 미설치 ☐ 가스누출시 건물내 유입 구조 ☐ 기타

부록

V. 가스분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 량 내 역
4 (L)	○ 소형저장탱크 설치방법 적정성 확인 (옥외의 지상에 설치. 습기가 적고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 기초의 침하, 산사태, 부등침하 등이 없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소형탱크 옥내 설치 ☐ 통풍 불량장소 설치 ☐ 기초의 침하, 산사태, 홍수 등에 피해 우려장소 설치 ☐ 수평한 장소 미설치 ☐ 기타
<가스설비 기준> * LPG, 도시가스 공통					
5 (L/도)	○ 중간밸브(퓨즈콕) 설치의 적정성 확인 (연소기 각각에 퓨즈콕 설치. 다만, 가스소비량 19,400 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 연결 배관에 호스콕 또는 배관용밸브 설치 확인)				☐ 퓨즈콕 미설치 ☐ 배관용밸브 미설치 ☐ 기타
6 (L/도)	○ 호스 3m 이내 및 "T"형 연결 금지 확인 (호스의 길이는 3 m이내 사용, 호스 "T" 연결 금지, 호스의 접속부는 호스밴드 등 견고히 조임 확인)				☐ 호스 3m 초과 사용 ☐ 호스 "T"형 연결 ☐ 호스밴드 등 견고하게 미조임 ☐ 기타
<배관설비 기준> * LPG, 도시가스 공통					
7 (L/도)	○ 배관설치의 적정성 확인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중간밸브~연소기는 호스로 할 수 있음)				☐ 저장설비~중간밸브 배관 설치 부적정 ☐ 중간밸브~연소기 배관 설치 부적정 ☐ 외부 금속플렉시블호스 설치 ☐ 기타
8 (L/도)	○ 배관의 고정 상태 확인 (호칭지름 13 mm미만 : 1 m, 13 mm이상 33 mm미만 : 2 m, 33 mm이상 : 3 m마다 고정,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것에는 KGS FU 551 2.5.4.3.4에 따라 3m 초과하여 설치 확인)				☐ 배관 고정 미조치 ☐ 고정 간격 부적정 ☐ 기타
9 (L/도)	○ 배관의 방호조치(차량) 확인 (차량의 통행 그 밖의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의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 KGS FU551 2.5.4.3.3의 기준에 따라 방호조치 확인)				☐ 외부배관 방호조치 미설치 ☐ 부적절한 방호조치 설치 ☐ 외부배관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미설치 ☐ 기타
10 (L/도)	○ 가스누출 여부 확인 (가스누출검지기 등 사용하여 사용압력이상으로 누출검사 실시)				☐ 가스누출 ☐ 기타



V. 가스분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불 량 내 역
		양 호	불 량	해 당 없 음	
11 (L/ 도)	○ 막음조치 실시 여부 확인 (배관의 말단에는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막음조치 미설치 ☐ 안전캡 성능인증 미사용 ☐ 안전캡 3개월 초과 사용 ☐ 안전캡 미 봉인조치 ☐ 기타
<연소기 기준> * LPG, 도시가스 공통					
12 (L/ 도)	○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적정성 확인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KGS FU433 2.7.1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				☐ 가스보일러설 미설치 ☐ 개방형온수기 경과조치 이후 제품 설치 ☐ 기타
13 (L/ 도)	○ 개방형연소기 설치실 환풍기나 환기구 설치 여부 확인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 환풍기(환기구) 미설치 ☐ 기타
14 (L/ 도)	○ 반밀폐형연소기 급·배기구 설치 상태확인 (급기구와 배기통을 설치할 것)				☐ 급기구 미설치 ☐ 배기통 미설치 ☐ 배기통 이탈 ☐ 배기통 틈에 방조망 미설치 ☐ 배기통 틈 개구부로부터 60cm 이내 배기가스가 실내 유입 가능 구조 ☐ 기타
15 (L/ 도)	○ 배기통의 재료의 적정성 확인 (금속·석면이나 그 밖의 불연성 재료로 할 것)				☐ 배기통 내열·내식성 재료 미사용 ☐ 기타
<사고예방설비 기준>					
16 (L)	○ 역화방지장치 설치 및 검사품 사용여부 확인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은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부착할 것)				☐ 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장치 미설치 ☐ 분기배관 각각에 미설치 ☐ 검사품 또는 안전인증 제품 미설치 ☐ 기타
17 (L)	○ 소형저장탱크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소형저장탱크(충전질량 1,000 kg 이상에 한함), 가스설비실의 주위에 누출된 가스가 채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검지부는 바닥으로 부터 30cm 이내의 높이에 설치)				☐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누출경보기 미설치 ☐ 가스설비실에 가스누출경보기 미설치 ☐ 경보기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 기타

부록

V. 가스분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8 (L/ 도)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상태 확인 - LPG : (주거용시설 제외. 지하공간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의 설치위치 및 수량이 적정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도시가스 : (2천m ³ /월 미만으로 퓨즈콕(상자콕)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설치 ☐ 검지부 수량 부족 ☐ 작동 불량 ☐ 바닥(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 미설치 ☐ 기타
19 (L)	○ 경계표시 여부 확인 (소형저장탱크 경계책 출입구 등에 경계표지(‘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를 붉은 글씨로 표시) 설치 할 것)				☐ 경계표시 미설치 ☐ 설치위치 부적정 ☐ 기타
20 (L)	○ 경계책 설치 여부 확인 (소형저장탱크 충전질량 1,00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경계책 설치)				☐ 경계책 미설치 ☐ 경계책 높이 1m 이내 ☐ 경계책 안에 인화물질 방치 ☐ 기타
<사고예방설비 기준> * 고압가스만 해당					
21 (교)	○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확인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저장설비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가스누출검지 경보장치는 설치 수량, 기능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가스누출경보장치 미설치 ☐ 설치수량 부족 ☐ 작동 불량 ☐ 기타
22 (교)	○ 역화방지 장치 설치 확인 (수소화염, 산소·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배관에는 역화방지장치 설치)				☐ 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장치 미설치 ☐ 분기배관 각각에 미설치 ☐ 검사품 또는 안전인증 제품 미설치 ☐ 기타
23 (교)	○ 환기설비 설치 여부 확인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설에는 환기설비(자연 또는 강제) 설치)				☐ 환기설비 미설치 ☐ 자연환기설비(환기구) 면적 부적정 ☐ 자연환기설비(환기구) 2방향 이상 미설치 ☐ 환기구를 바닥면 접하여 미설치 ☐ 기타



V. 가스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 호	불 량	해당 없음
<정압기 설비 기준> * 도시가스만 해당				
24 (도)	○ 가스누출 여부 확인 (사용압력 이상으로 누출검사 실시)			☐ 가스누출 ☐ 기타
25 (도)	○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및 이상압력통보장치 설치 여부 확인 (검지부는 바닥면 둘레 20 m 당 1개 이상의 수량,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			☐ 검지부 수량 부적정 ☐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미설치 ☐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작동량 ☐ 이상압력통보설비 미설치 ☐ 이상압력통보설비 작동불량 ☐ 기타
26 (도)	○ 과압안전장치 설치상태 확인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 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 한 위치로서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확 인)			☐ 가스방출관 미설치 ☐ 방출구 주위 화기 사용 ☐ 방출구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미유지 ☐ 기타
<기 타>				
27 (교/ L/ 도)	○ 종 합 의 건 (기타 부적합 등)			

부록

VI.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관할소방서에 허가받은 대상만 적용)

■ 시설개요

제조소 등 구분	제조소	☐ 제조소			
	저장소	☐ 옥내저장소(☐ 단층 ☐ 다층 ☐ 복합*) *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안에 별도의 위험물 저장실(室)을 둔 경우 ☐ 옥외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이중벽 ☐ 전용실 설치) ☐ 옥내탱크저장소(☐ 단층 ☐ 단층건물 외*) *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안에 별도의 전용실(室)을 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			
	취급소	☐ 일반취급소 ☐ 특례 일반취급소 (☐ 분무도장작업 등 ☐ 세정작업 ☐ 열처리작업 등 ☐ 보일러 등 ☐ 유압장치 ☐ 절삭장치 등 ☐ 열매체유 순환장치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판매취급소(☐ 제1종 ☐ 제2종) ☐ 주유취급소(☐ 일반 ☐ 항공기 ☐ 철도 ☐ 선박 ☐ 고객이 직접주유(셀프) ☐ 자가용)			
설치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위험물 품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허가수량 (kg 또는 L)		지정수량 배수	
안전관리자	상주	업체명 : _____ / 성명 : _____			
	대행	업체명 : _____ / 성명 : _____			

■ 점검내용(★ 표시는 일부대상을 제외함. 제외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복합용도 옥내저장소 판매취급소, 특례일반취급소)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내역
1. 안전 거리 ★	보호대상물과의 이격거리 적합여부				☐ 주거용 건축물 10m 미만 ☐ 학교, 병원, 극장 30m 미만 ☐ 문화재 50m 미만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20m 미만(공정시설 제외) ☐ 특고압가공전선 7천V이상 3만5천V미만는 3m미만, 3만5천V 이상 5m 미만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여부				☐ 담의 균열 ☐ 담 일부 및 전체 손상 ☐ 기타
2. 보유 공지 ★	보유공지 안에 허가 이외의 물건 존치 여부				☐ 물건 적치 ☐ 건축물, 공작물 설치 ☐ 기타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 유무				☐ 균열·손상 ☐ 기타
3. 건축 물	벽·기둥·보·지붕				☐ 균열·손상
	방화문				☐ 변형 및 손상 ☐ 폐쇄기능 불량 ☐ 기타

부록

VI.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불량내역
		양 호	불 량	해당 없음	
3. 건축물	바닥				☐ 체유(滯油)·체수(滯水) ☐ 균열·손상·폐입
	계단				☐ 변형·손상 ☐ 고정 상태 불량
4. 환기·배출 설비 등	외관검사				☐ 변형·손상 ☐ 고정 상태 불량
	인화방지망				☐ 손상 ☐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
	방화담퍼				☐ 손상 ☐ 작동 불량
	가연성증기경보장치				☐ 손상 ☐ 작동 불량
5. 유출방지	옥외설비의 방유턱·유출방지조차지반면 ★				☐ 균열·손상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유무
	집유설비·배수구·유분리장치				☐ 균열·손상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유무
6. 위험물 비산방지 장치 등 ★	유출방지설비(이중배관 등), 역류방지 설비 (되돌림관 등), 비산방지설비				☐ 체유 유무 ☐ 변형·균열·손상 ☐ 도장 불량·부식 발생 ☐ 고정 상태 불량 ☐ 기타
7. 가열·냉각 ·건조설비	기초·지주				☐ 부등침하 발생 ☐ 볼트 등 풀림 여부 ☐ 도장 불량·부식 발생 ☐ 변형·균열·손상
	본체부				☐ 위험물 누설 ☐ 볼트 등 풀림 여부 ☐ 보냉재 손상 및 탈락 여부 ☐ 변형·균열·손상
	접지				☐ 단선 유무 ☐ 부착부분 탈락 유무 ☐ 접지저항치 적부
	안전장치				☐ 부식·손상 여부 ☐ 고정 상태 불량
	계측장치				☐ 손상 여부 ☐ 부착부 풀림 여부
	송풍장치				☐ 손상 유무 ☐ 부착부 풀림 여부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유무
	살수장치				☐ 부식·변형·손상 유무 ☐ 살수 상황 부적합 여부 ☐ 고정상태 부적합 여부
	교반장치				☐ 손상 유무 ☐ 고정 상태 부적합 여부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유무 ☐ 누유 유무 ☐ 안전장치 비정상 작동



부록

VI.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내역
8. 위험물취급설 비	기초·지주				☐ 침하 여부 ☐ 볼트 등 풀림 여부 ☐ 도장 불량 ☐ 부식 여부 ☐ 변형·균열·손상 ☐ 기타
	본체부				☐ 누설 여부 ☐ 볼트 등 풀림 여부 ☐ 도장 불량 ☐ 보냉재 손상 및 탈락 여부 ☐ 변형·균열·손상 ☐ 기타
	접지				☐ 접지 도선의 단선 ☐ 부착부분 탈락 유무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안전장치				☐ 부식·손상·여부 ☐ 고장 상태 불량 ☐ 기타
	계측장치				☐ 장치 손상 ☐ 부착부 풀림 ☐ 기타
	송풍장치				☐ 장치의 손상 ☐ 부착부 풀림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발생 ☐ 기타
	구동장치				☐ 부식·변형·손상 유무 ☐ 고정상태 불량 ☐ 기타
	교반장치				☐ 손상 유무 ☐ 고정 상태 부적합 여부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유무 ☐ 누유 유무 ☐ 안전장치 비정상 작동 ☐ 기타
9. 위험물 탱크	기초·지주·전용실 등				☐ 변형·균열·손상 유무 ☐ 부등 침하 ☐ 고정 상태 비정상 여부 ☐ 기타
	본체부				☐ 변형·균열·손상 유무 ☐ 누설 유무 ☐ 도장 불량 ☐ 부식 여부 ☐ 보냉재 손상 및 탈락 유무 ☐ 기타
	노즐·맨홀 등				☐ 누설 유무 ☐ 변형·균열·손상 유무 ☐ 부착부 손상 유무 ☐ 도장 불량 ☐ 부식 유무 ☐ 기타

부록

VI.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내역
9. 위험물탱크	방유제·방유턱				☐ 변형·균열·손상 유무 ☐ 배수관 손상 유무 ☐ 배수관 개폐 적합 여부 ☐ 배구수의 균열·손상 여부 ☐ 배수구 내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여부 ☐ 수용량 적합 여부
	접지				☐ 접지도선의 단선 유무 ☐ 부착부분 탈락 유무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누유검사관				☐ 변형·균열·손상 유무 ☐ 기타
	교반장치				☐ 장치 외부로 누유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유무 ☐ 고정 상태 불량 ☐ 기타
	통기관				☐ 인화방지방 손상·막힘 ☐ 밸브 작동 불량 ☐ 통기관 내부 장애물 ☐ 도장 불량 또는 부식 발생 ☐ 기타
	안전장치				☐ 비정상 작동 ☐ 부식·손상 발생 ☐ 기타
	계량장치				☐ 장치 손상 ☐ 부착부 고정 상태 불량 ☐ 기타
	주입구				☐ 폐쇄시 주입구 외부로 누설 ☐ 변형·손상 여부 ☐ 접지전극 손상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주입구 비트				☐ 균열·손상 유무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유무 ☐ 기타
10. 위험물 배관·밸브 등	배관 (플랜지·밸브 포함)				☐ 배관 외부로 누설 (지하매설배관은 누설점검 실시) ☐ 배관의 변형·손상 ☐ 배관 외부 도장 불량 및 부식 발생 ☐ 지상 설치시 지반면과 이격 여부 ☐ 기타
	배관 비트				☐ 비트의 균열·손상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 유무 ☐ 기타
	전기방식 설비				☐ 단자함 손상·토사 등 퇴적 유무 ☐ 단자의 탈락 유무 ☐ 방식 전류(전위)의 적합 여부 ☐ 기타



VI.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 체크)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불량내역
11. 위험물 펌프설비등	전동기				☐ 변형·균열·손상 ☐ 고정 상태 불량 ☐ 회전부의 급유상태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 기타
	펌프				☐ 펌프 외부로 위험물 누설 ☐ 변형·균열·손상 ☐ 도장 불량 및 부식 발생 ☐ 고정 상태 불량 ☐ 회전부의 급유상태 불량 ☐ 유량 및 유압 정상 작동 불량 ☐ 이상진동·이상소음·이상발열 ☐ 기타
	접지				☐ 접지 도선의 단선 ☐ 부착부분 탈락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12. 제어장치등					☐ 제어계기 손상 여부 ☐ 제어반의 고정상태 불량 ☐ 제어계(온도압력유량 등) 기능 불량 ☐ 감시설비 기능 불량 ☐ 경보설비 기능 불량 ☐ 기타
13. 피뢰설비					☐ 돌침부의 경사손상 ☐ 피뢰도선 단선 ☐ 피뢰도선과 벽체와의 접촉 불량 ☐ 접지저항치 불량 ☐ 기타
14. 표지·게시판					☐ 게시판 등 손상 ☐ 기재사항 불량 ☐ 기타
15. 종합의견					

VII. 점검결과 평가 - 잘된 점, 잘못된 점, 제도개선, 종합평가(안전등급)

1차 평가 (점검자)	(잘된 점) (잘못된 점) (종합평가) (제도개선)
2차 평가 (전문가)	
관 련 사 진	별도붙임 (정면, 측면, 후면 사진, 분야별 위험요인 및 주요 지적사항)



【붙임】 관련사진

건물 정면	건물 좌측면	건물 우측면
건물 후면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위험 또는 주요 지적사항

부록

【별첨1】 안전관리 수범사례 및 긴급 중대조치 필요사항 등

1. 안전관리 수범사례

2. 긴급 중대조치 필요 사항

3. 비상키트 조치결과

종류	수량	조치결과
1.		☐ 배부 ☐ 직접 부착/시공 ☐ 배부대상 아님
2.		☐ 배부 ☐ 직접 부착/시공 ☐ 배부대상 아님
3.		☐ 배부 ☐ 직접 부착/시공 ☐ 배부대상 아님
4.		☐ 배부 ☐ 직접 부착/시공 ☐ 배부대상 아님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17. 7. 26.]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 공사업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공사·소방 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2조(소방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본법」 제12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경계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에 따른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 계획과 다중이용업소의 인적·물적 피해감소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기간) ① 삭제

②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 물: 그 대상의 공간안전 인증기간

부록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 열거한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③ < 삭 제 >

- ④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①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관계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항목 및 작성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를 작성·발부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의 절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다.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과태료 처분 대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자 중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3-2호 서식(모바일기기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분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부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3장 건축허가등의·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10조(건축허가 동의요구서의 처리)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청에 동의의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①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동의(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록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유
-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 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하며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측사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삭제

제14조의2(상주공사감리 지정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 대상 중 나 항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튼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채광용 커튼류(브라인드)라 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 ②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7조(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임 관리 등) ①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원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등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등 선·해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등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국민학교, 중학교·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가목1)부터 3)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록

1 ~ 5 호 <삭 제>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직위·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의 관리

제20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제출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해당 종합정밀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는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한 대상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2.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3.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대상
-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

제1절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제22조(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방염처리업에 한함)를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4조(서면심사)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부록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른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1. 대상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2. 방법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 조회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지침 2014. 04. 17. 시행)의 규정을 준용. 제25조(현장조사)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염처리업: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실험실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

2. 소방시설관리업: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사실이 확인가능한 날

나.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

2. 기술인력의 변경일: 기술인력의 실제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사실이 확인가능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나. 변경 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도지사는 사본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변경 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 변경 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4. 삭제

제26조의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부록

제26조의3(소방관련업의 반납) 소방관련업자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소방관련업 반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능력의 검직허용)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검임·검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과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2. 변동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3. 확인란: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제30조의2(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보기)

제 서울(서초)-2015-0001호

제 경기(구리)-2015-0007호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업종·연번을 표시하는 10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업종은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보기)

제 2015-01-0001호

제 2015-03-0007호

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 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

제31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등이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6호의 "개설"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제3절 지도 및 감독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소방관련업에 대한

부록

등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관련업체의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 미달여부
2. 등록증 대여행위
3.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4. 등록사항 변경여부
5.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여부
6. 그 밖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과태료 부과 대상여부와 벌칙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른다. ① ~ ⑤ 항 <삭 제>

제7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제35조의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소방본부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36조(훈령의 운용) ① 이 규정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중 일선소방관서의 실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내부의 규정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②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7조(법령의 질의)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법령(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관련 자치법규 등)·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

2. 법령 조문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②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

부록

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호, 2017. 7.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 반 자	주 소	(가)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연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법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증빙자료				
비 고	※ 소방시설관련업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시 준용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계급

성명 (인)

182mm×257mm 보존용지(2종)54g/m²

※ 작성요령

- 위반업소란 중 사업자등록 연월일은 법인설립일·사업자등록일·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을 기재
- 위반업소란 중 업종란은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된 영업의 종류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기재
 - 예시 : 노래연습장영업(근린생활시설)

부록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의1서식] 과태료전용서식(내부보고용)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태료)									
일련 NO. 200 - ○○○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만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과 (1)~(3)			
위 반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 화	
	상호 (명칭)							업 종 (허가연월일)	
	소재지							전 화	
위 반 행 위	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 증명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보고자 : 계급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 태 료 부 과	처분예 고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자의 주소,성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 연락처 ☎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 방 서 장 귀 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전화)

성 명 : (나이) 만 세

생년월일 :

[위반내용]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소방서장 귀하

182mm×257mm 보존용지(2종)54g/m²

부록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의1 서식]

과태료전용서식(자인확보용) 앞면(1면), 뒷면(복사지)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확인서(과태료)									
일련 NO. 200 - 000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만 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표3]				가~과 (1)~(3)			
위반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전 화				
	상 호 (명 칭)				업 종 (허가연월일)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 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명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자의 주소,성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 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 연락처 ☎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 방 서 장 귀 하							



“대상자발부용”

앞면 (3면)

소방관련법령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일련 NO. 200 - 000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금 (만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과 (1)~(3)			
위반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전 화			
	상 호 (명칭)					업 종 (허가연월일)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 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명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처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주소: 00 00 소방서 00과 ■ 연락처 ☎ 000-0000				
200 년 월 일 000 시 · 도 0 0 소 방 서 장 (관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종별				자격(등록)번호			
조사자	소속		계급		성명		의견조회기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 제출의견 (요약)								
조사자 의견								
행정처분			행정처분 기간					
증빙 및 참고자료								



[참고문헌]

1. 중앙소방학교, 2018년도 공통교재, 소방법령 2.(pp. 237~386).
2. 박성준(2018), 소방학개론, 미디어정훈. (pp. 455~570).
3.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 참여한 사람들 ■

집필위원

외래교수 박창순
외래교수 박성준

검토위원

외래교수 최규출
외래교수 손원배
외래교수 천성수
외래교수 황인환
부산소방학교 전임교수 최찬호
강원소방학교 전임교수 이주한

소방법령 II

발행일 2018년 12월

발 행 중앙소방학교

인쇄처 (주)프리비(Tel. 061-332-1492)

※ 본 교재는 2018년도 교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저자와 협의 없이 無斷再製 또는 轉載를 금합니다.

